

www.goe.go.kr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

제1장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1
제2장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23
제3장 학교법인의 정관	63
제4장 학교법인의 기관	87
제5장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151
제6장 학교법인의 재산	183
제7장 학교법인의 세무관리	265
제8장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301
※ 집필진 명단	360

제1장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사립학교법의 이해	3
1. 사립학교법의 이해	3
2. 사립학교법의 내용	4
3. 사립학교법의 연혁	5
II. 학교법인의 이해	11
1. 학교법인의 의의	11
2. 사법상 재단법인에 속하는 학교법인	11
3.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제도	11
4.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2
III. 관할청의 지도·감독	16
1. 관할청의 감독권	16
2.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	16
3. 관할청의 권한 관련 조항(사립학교법상)	17
IV. 판례	17
V. 질의회신	19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I

사립학교법의 이해



1 > 사립학교법의 이해

◇ 사립학교법

제1조(자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개 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학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를 국가 법규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법률을 의미함
- 사학교육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원, 통제 등의 규율을 행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함

나. 목 적

- **사립학교의 특수성**
 - 국·공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예산으로 유지되는 데 비하여 사립학교는 사인의 기부재산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립학교 설립자의 건학정신과 독특한 학풍이 존중되고, 「교육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 사립학교는 교육에 뜻을 가진 설립자가 사적 재산의 출연행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정립하여 창의적인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
 -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적 영역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감독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수반됨

2 > 사립학교법의 내용

○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목 차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 - 관할청의 범위 등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 ~ 제9조	- 학교법인의 자산, 사업, 주소, 등기, 재산 이전의 보고, 권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설립	제10조 ~ 제13조	- 설립허가, 출연자의 정관기재, 정관의 보충, 설립의 시기 등
제3절 기관	제14조 ~ 제27조	- 임원의 선임·임기·직무, 개방이사 등 -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 등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 ~ 제33조	-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 법인 및 학교 회계에 관한 사항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 ~ 제42조	-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 ~ 제48조의2	- 사학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해산명령과 청문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3장 사립학교 경영자	제50조 ~ 제51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 학교법인 관련조항 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 자격·임용·복무	제52조 ~ 제55조의4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위원회 - 기간제교원 - 연수에 관한 사항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 ~ 제60조의3	- 휴직·면직·당연퇴직·직위해제·명예퇴직·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제3절 징계	제61조 ~ 제67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70조 ~ 제72조의5	-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 - 사무기구와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 -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 청렴의무 및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	제73조 ~ 제74조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3 > 사립학교법의 연혁

●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과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 정	법률 제1362호	'63.06.26	-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 교원, 보칙 및 벌칙 등 총 6장11절 74개 조항 및 부칙
제2차 개정	법률 제1664호	'64.11.10	-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절차 신설
제6차 개정	법률 제2587호	'73.03.10	- 학교장 및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결격사유 신설
제7차 개정	법률 제2649호	'73.12.30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제8차 개정	법률 제2775호	'75.07.23	- 사학교원의 직위 해임 제도 신설, 학교법인 정관변경 절차의 간소화
제12차 개정	법률 제3114호	'78.12.05	- 출연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허용
제16차 개정	법률 제4226호	'90.04.07	- 학교장 임명 관할청 승인제도 폐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증고 설치, 학교장 임명승인 취소권 폐지, 임시교원제도와 교원의 명예퇴직 제도 도입 등 전면재정비
제21차 개정	법률 제5274호	'97.01.31	- 이사수 제한의 완화, 이사의 교육경험 요건 연장, 사학교원 휴직 요건 확대 등
제22차 개정	법률 제5345호	'97.08.31	- 외국인 이사 확대 특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 마련
제26차 개정	법률 제5638호	'99.01.21	- 수업료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제28차 개정	법률 제6004호	'99.08.31	- 수익사업신고의무 폐지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이사 또는 감사 선임제한 조건 변경, 임시이사의 재임기간 명시 및 정이사 선임 금지 등
제33차 개정	법률 제7118호	'04.01.29	- 고등학교 이하 설치·경영 영세사학의 해산 유도
제37차 개정	법률 제7802호	'05.12.29	- 개방이사감사제 도입, 이사취임 승인취소 사유 확대, 임원 직무 집행정지권 신설,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규정 신설, 문제임원의 복귀 기간 연장 및 절차 엄격화, 학교장 임기 제한,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학교장 임명 제한, 각급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의무화 등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38차 개정	법률 제8529호	'07.07.19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유 확대
제39차 개정	법률 제8545호	'07.07.27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원의 겸직금지 완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완화
제42차 개정	법률 제8888호	'08.03.14	- 교원의 재직 중 파면·해임사유를 강화하여 재임용 금지요건 강화, 사립교원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휴직 사유 확대
제45차 개정	법률 제10637호	'11.5.19	- 임명제한 대상 교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유치원강사, 산학겸임교사 포함)
제46차 개정	법률 제10871호	'11.7.21	- 교원의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47차 개정	법률 제10906호	'11.7.25	- 교비회계의 수입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별도 계좌 관리 - 대학교육기관에서 적용하는 적립금 운용 세부사항 규정
제48차 개정	법률 제11216호	'12.1.26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 - 정관변경을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제49차 개정	법률 제11622호	'13.1.23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경리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 - 교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시 등록금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 대학운영 법인 결산서 제출시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 첨부
제51차 개정	법률 제12125호	'13.12.30	-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무상 귀속시 교비회계를 다른회계로 전출가능
제52차 개정	법률 제13224호	'15.3.27	-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53차 개정	법률 제13573호	'15.12.22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
제54차 개정	법률 제13936호	'16.02.03	- 타법개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55차 개정	법률 제13938호	'16.02.03	-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 -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사·조사 중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 입양휴직제도 도입
제56차 개정	법률 제14154호	'16.05.29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제57차 개정	법률 제14468호	'16.12.27	-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 - 학교법인 적립금 적립목적 구체화 -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 기회 부여 -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
제58차 개정	법률 제15022호	'17.10.31	- 타법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제59차 개정	법률 제15040호	'17.11.28	-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제60차 개정	법률 제15555호	'18.04.17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의 기회균등, 연수기관,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연수 실적 등 규정 -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61차 개정	법률 제15954호	'18.12.18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부정임용을 면직사유로 추가함
제62차 개정	법률 제16219호	'19.01.15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사립학교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제63차 개정	법률 제16310호	'19.04.16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함
제64차 개정	법률 제16439호	'19.8.20	-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등의 확인을 거치도록하고, 정직처분 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함
제65차 개정	법률 제16672호	'19.12.3	- 타법개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6차 개정	법률 제16674호	'19.12.3	- 특수학교의 장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중임가능
제67차 개정	법률 제16679호	'19.12.3	- 타법개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8차 개정	법률 제16874호	'20.1.29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제69차 개정	법률 제17078호	'20.3.24	-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학생 수 감소,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정책적 원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70차 개정	법률 제17493호	'20.10.20	-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71차 개정	법률 제17659호	'20.12.22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범죄·성범죄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
제72차 개정	법률 제18372호	'21.8.10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비함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외부감사인의 선임제한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제·개정순	연월일	주요 내용
제73차 개정	법률 제18460호 '21.9.24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 -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함 -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 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제74차 개정	법률 제18990호 '22.10.18	- 타법개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 추가
제75차 개정	법률 제19066호 '22.12.13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II

학교법인의 이해



1 ▶ 학교법인의 이해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가. 법 제2조제2호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립·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 나. 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동조에서 열거하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가 대안학교 등은 설립할 수 있음

2 ▶ 사법상 재단법인에 속하는 학교법인

- 가. 학교법인은 사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출연된 재산 그 자체에 재단법인으로서 특수한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법인의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과 동시에 학교법인에 소속되고 학교법인은 그 설립자와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유지·경영활동을 수행함.
- 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출연행위
 - 출연한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관작성행위
 - 법인의 이익을 지켜줄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진 구성

3 ▶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제도

- 가. 이사는 학교법인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집행하며 재단법인의 재산관리와 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함.

- 나. 이사는 학교법인의 목적과 정관의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시 설립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에게 학교법인의 사무처리를 위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함.

4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가.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 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9조 및 민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나. 학교법인의 행위능력

- 학교법인이 그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현실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관리·처분 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학교법인의 행위자

- 학교법인의 대외적인 의사표시 등 행위는 법인 자체가 아닌 자연인인 대표자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으나, 대표자의 행위는 대표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함
-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임시이사, 청산인 등을 들 수 있음

● 행위의 방식

-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대표행위에서도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홍길동 등으로 표시

● 행위의 범위

- 법인은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짐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한 법인의 행위가 되며,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권의 남용 등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음



다.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35조(사업)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책임 〉

-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표자의 행위

-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학교법인의 대표자에는 이사장 이외에 임시이사, 청산인 등이 있음
- 대표자가 아닌 임원인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이사는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들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음

● 직무에 관한 행위

- 학교법인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하므로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이 법인의 불법행위로 간주됨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설사 그것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즉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행위로 됨을 주의하여야 함
- 또한, 「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부에서는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책임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요건(①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③ 가해행위가 **위법**이어야 하고, ④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함)이 성립하면 학교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그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학교법인과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과 대표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할 수 있음

〈 판례 〉

-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판결)

〈 부진정연대책임 〉

-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상의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 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 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립학교의 설치
자 산	◦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 규정 없음	◦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 주무관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 설립등기 시	◦ 설립등기 시
이사의 수	◦ 제한 없음	◦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 제한 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관련 경험자	◦ 제한 없음	◦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임원의 겸직 금지	◦ 제한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임원의 보충	◦ 제한 없음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이사장	◦ 규정 없음	◦ 이사 중 1인은 이사장이 됨
잔여재산의 귀속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귀속 권리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가능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 분	공익법인	학교법인		
관련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등		
임원선임	공익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 임원의 정수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단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2) 임원 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사립학교법」 제14조 1) 임원의 정수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단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사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2) 임원 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임시이사 선임	「민법」 제63조 준용: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정관변경	공익법 시행령 제1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립학교법」 제45조 관할청 보고 사항,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재산의 구분	공익법 제11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		
재산 처분 허가	공익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청 허가 사항 ※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 조항이 부존재 하므로, 관할청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 (현재: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기준 (2017.1.)” 수립 통보)	「사립학교법」 제28조 관할청 허가 사항 ※ 일반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이 처분허가 대상이 되고,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		
	현금	허가	현금	허가(정기예금, 금전신탁)
	주식	불허가 (기부 받을 경우 제한적 허용)	주식	허가(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주식)
	부동산	허가	부동산	허가(토지, 건물)
	채권	장기사채: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채권	국·공채(회사채 관련 조항 X)
		단기사채: A3-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보험, 펀드, 기타상품	타당성 검토 후 허가	보험, 펀드, 기타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한함	
회계의 구분	공익법 시행령 제23조 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회계, 법인회계(단,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하여 경리)		
수익사업 허가여부	공익법 시행령 제11조 관할청 승인 사항	「사립학교법」 제6조 법인 공고사항		

Ⅲ

관할청의 지도·감독



1 ▶ 관할청의 감독권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가. 관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법률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폭넓은 감독권을 부여받아 학교법인의 설립부터 해산·합병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도·감독함

나. 학교 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 발전의 자양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청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크므로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며, 교육을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맡겨 놓을 수는 없음

다. 다만,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과 통제는 그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계를 지켜야 하며, 규제와 감독이 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의 방편이 될 때에는 사학의 자주성 및 자율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

2 ▶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

가. 보충성의 원칙

- 학교법인이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과 현행법령을 준수하여 설립목적을 이행하는 한 관할청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나, 그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경미한 위반이 발생하여 법인이 이를 제거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보충적·보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함

나. 비례성의 원칙

- 관할청의 지도·감독 조치는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의 실현은 적합하고 타당하여야 하며, 그 조치와 효과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3 > 관할청의 권한 관련 조항(사립학교법 상)

- 학교법인 설립허가(법 제10조)
- 정관의 보충(법 제11조)
- 이사회의 소집승인(법 제17조제4항)
- 임원의 취임 승인(법 제20조제2항)
- 임시이사의 선임(법 제25조)
-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허가(법 제28조제1항)
- 예산 및 결산의 시정지도(법 제31조제2항)
- 학교법인 합병인가(제36조제2항)
- 학교법인 해산명령(법 제47조)
- 감독상 필요한 경우의 보고서 제출요구 및 검사(법 제48조)
-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징계 요구(법 제54조)
- 학교장의 해임 요구(법 제54조의2)
- 교육에 관한 조사,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등(법 제70조)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벌칙(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법 제74조)

IV

판례



판례 1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 특수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이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라는 법적 성격과 독자적인 건학 정신, 전통 및 학풍을 가지고 있음
- 자주성 :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 공공성 :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교육기관의 하나이며,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음.

(출처 :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판례 2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함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판례 3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 여부

- ○○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5.12.9. 선고, 75다1048 판결 참조),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청구인 ○○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헌법재판소 1993.7.29. 89헌마123 전원재판부)

판례 4

학교법인의 책임

-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판결)

판례 5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의미와 범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담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판례 6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임. 원심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되어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립중학교 재학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V

질의회신



질의회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제처 06-0318, 2006.12.1, 행정자치부]**

질 의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대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질의회신 2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8-0793, 2019.9.6.]

질 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해야 하는 책무(「교육기본법」 제16조 제1항)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각주: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례 참조)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고,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무자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민사소송법」 제52조)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각주: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사인”에 포함될 수 없음.



질의회신 3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4-0871, 2015.2.6.]

질 의

「초·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 신

사립학교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교육용에 쓰이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는지,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법인 등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과 그 취득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질의회신 4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7-0399, 2017.9.22.]

질 의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 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 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 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제2장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학교법인의 설립	25
1.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25
2. 학교법인의 설립절차	26
II. 학교법인의 합병	28
1. 학교법인 합병의 의의	28
2. 학교법인의 합병 절차	28
3. 학교법인의 합병 인가 후 추진 업무	29
III. 학교법인의 조직변경	30
1.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의의	30
2. 조직변경 절차	30
IV.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	32
1. 학교법인의 해산	32
2. 학교법인의 청산	33
3. 해산명령	34
4. 잔여재산의 귀속(사립학교법 제35조)	35
5.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35
V. 관련서식	38
VI. 판례	58
VII. 질의회신 및 감사사례	60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I

학교법인의 설립



1 >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중략>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학교법인 형태가 필수요건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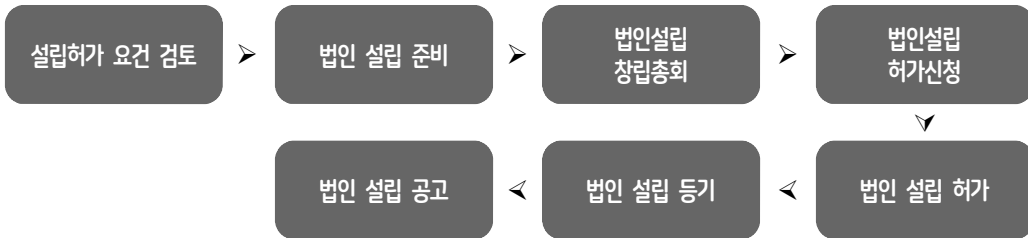
- 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학교법인 형태가 필수요건이 아닌 경우

-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및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에 따라,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각급학교 제외)의 설립자는 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이라도 설립할 수 있음

2 > 사립학교의 설립절차

가. 학교법인 설립 절차도



나. 학교법인 설립 세부 절차

1)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 학교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음
- 설립자는 재산 등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 연고권을 가지나 학교법인과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2) 학교법인 설립 사전 준비

- 임원취임 대상자 확정
- 법인명칭 확정
- 설립취지 채택
- 설치·경영학교 설립계획(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규모, 교직원 등) 확정
- 학교법인 정관의 작성
- 재산에 관한 사항 확정
- 기타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준비

3) 학교법인 창립총회

- 창립총회 주요 안건
 - 설립대표 : 이사장 선임
 - 설립취지와 학교설립계획(법인의 명칭·위치, 학교의 종별·명칭·위치 등) 채택
 - 학교법인 정관 심의 의결
 - 학교현장 심의 의결
 - 출연재산(소요자금 조달계획)
 - 임원(이사, 감사) 선임
 - 기타 중요사항 의결

4)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 첨부 서류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 재산출연증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 재산의 소유권 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이력서
- 임원의 신원증명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첨부서류 작성 요령

- **설립취지서** :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등의 내용이 검토된 후에 설립취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학교법인의 정관** : 학교법인의 정관의 성질, 규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 예시에 관하여는 제3장 “법인의 정관” 참조
- **재산목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첨부 서류인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해야 함.
- **재산의 평가조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첨부
- **재산의 수익조서**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학교법인의 임원** : 임원으로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4장 “학교법인의 기관” 참조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 학교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장 “학교법인의 재산”을 참조

5) 학교법인 설립허가 (학교법인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

- 학교법인 설립취지서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적합한가?
- 정관의 기재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가?
- 교육용기본재산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적합한가?
- 수익용기본재산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확보기준이 적합하며, 연간 그 재산 가액의 100분의 3.5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가?
- 임원
 - 임원의 정수는 적합한가?
 - 개방이사 선임이 적합한가?(현행법상 법인 설립 시 개방이사 규정 없음)
 -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서를 받았는가?
 - 기타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 해당 여부

6) 학교법인 설립 등기

-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등기 기간(민법 제49조 준용): 법인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 설립등기 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명기

II

학교법인의 합병



1 > 학교법인 합병의 의미

◆ 사립학교법

- 제36조(합병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학교법인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 후 그 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함

2 > 학교법인의 합병 절차

가. 학교법인의 합병 절차도



나. 세부 업무 절차

1) 합병절차 준비(합병 합의)

- 합병을 위하여 법인의 채권·채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합병 후 교직원·학생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합병 후 법인에 관한 제반 사항(정관의 작성, 임원의 구성, 재산목록의 작성 등) 준비

2) 이사회 심의·의결

- 합병절차에 관한 준비가 끝나면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합병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3) 합병인가 신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합병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합병이유서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합병 약정서
-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합병 전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에 기재된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는 생략 가능)

4) 합병 인가

- 합병인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청에서는 합병사유,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설치·경영학교의 교직원·학생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병인가를 함
-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합병 등기

- 기존의 학교법인이 합병 후 계속 존속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합병 후 신설 법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등기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

3 > 학교법인의 합병 인가 후 추진 업무

가. 재산 목록의 작성

- 사립학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은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공고와 최고(催告)

- 학교법인은 합병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함.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 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라. 합병의 시기

-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III

학교법인의 조직변경



1 > 학교법인으로서의 조직변경 의의

◆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 이유서
2. 정관(신·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가. 학교법인으로서의 조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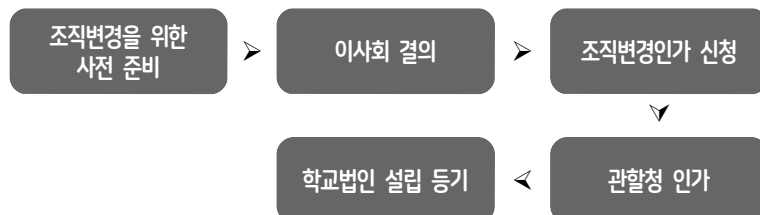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 법인이 될 수 있음
- 「민법」 상의 재단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민법」 상의 재단법인이 법 제3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자(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나. 조직변경의 효과

-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되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을 위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함은 물론 구 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 조직변경 절차

가. 조직변경 절차도





나. 세부업무 절차

1) 재산목록 작성

● 교육용기본재산의 기준 충족 확인

- 「민법」상의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될 경우 설치·경영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인 경우에는 설립인가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지 등의 확보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 충족 확인

- 학교법인이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본재산의 가격 산정 등

- 기본재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이 됨

● 수익용기본재산상의 수익확인서 등

- 학교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확보를 위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현재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수익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로도 가능할 수 있음

2) 임원의 선임 제한 및 결격사유 검토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선임 제한
- 임원의 겸직 금지 등

3) 이사회 의결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함

4) 조직변경 인가 신청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조직변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조직변경 이유서
 - 정관(신·구)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

5)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 설립 등기

- 사립학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8조 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함

IV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



1 > 학교법인의 해산

◆ 사립학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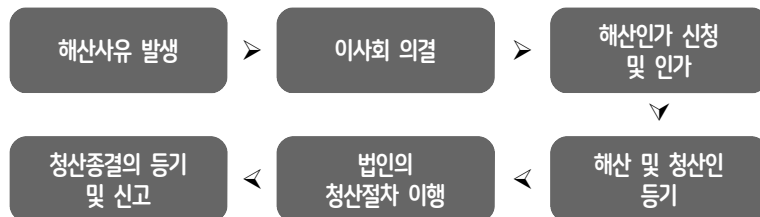
제34조(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 ②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학교법인의 해산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해산사유의 발생, 관할청의 해산명령에 따라 학교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나. 해산 및 청산 절차도



다. 학교법인의 해산 세부 절차

1) 해산사유 발생 등

- 학교법인의 해산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산사유 발생 및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 가능함

2) 이사회 의결

-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3) 해산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 해산인가 신청서(해산사유, 재학생과 교직원 처리계획 등 포함)
- 해산인가 신청사유서
-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 잔여재산 처분계획
 -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 재산감정평가 내역
 -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 공익법인의 정관(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함)

4) 해산인가

- 해산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청에서는 해산사유, 재학생과 교직원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산을 인가함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 학교법인의 청산

가. 청산인 선정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에 다르게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
-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나. 해산등기 및 신고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 청산절차 이행

-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 청산인은 「민법」 제88조에 따라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하여야 하며,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 채권변제
 - 청산인은 「민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으며, 변제 시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함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라.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마.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함

3 > 해산명령

◆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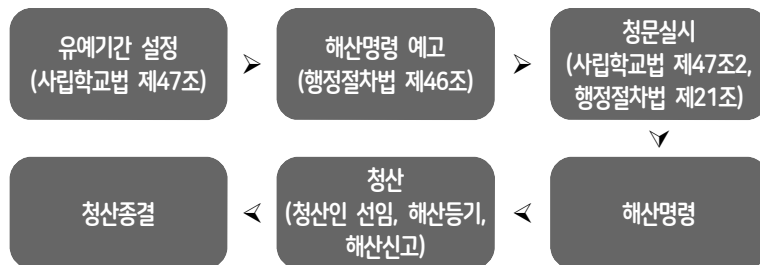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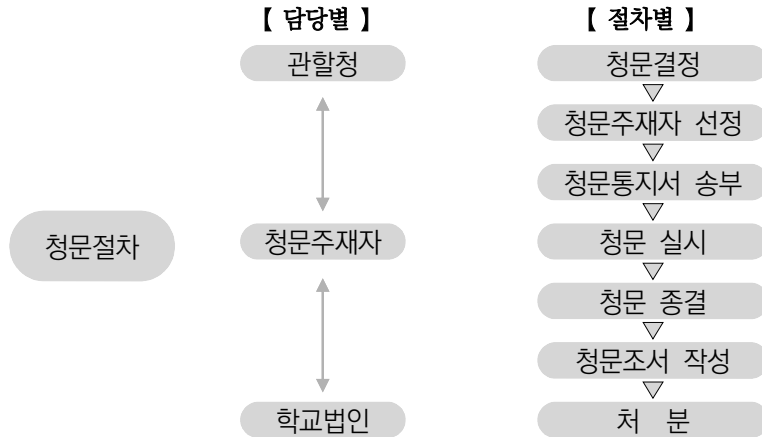
-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해산명령 절차





○ 청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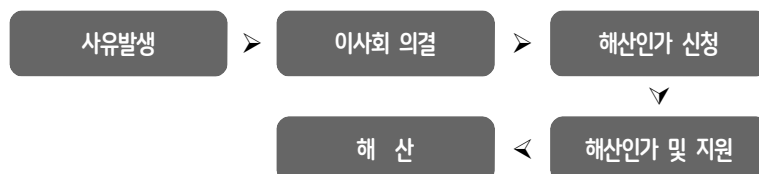
※ 기타 청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 해당조항을 참고할 것

4 ▶ 잔여재산의 귀속(사립학교법 제35조)

-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해야 함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됨
-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사학 진흥기금의 청산 지원계정에,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 사업에 사용함
-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5 ▶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사립학교법 제35조의2)

- 적용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고자 하는 때
- 절 차



가. 세부 절차

- 특례규정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 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례규정에 의한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한시적 적용(현재는 적용 불가)

부칙 <법률 제5345호, 1997. 8. 22.>

-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참고] 권한의 위임 사항(교육부장관 →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71조에 따라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

[별첨 1] 민법 발췌(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V

관련 서식



서식 1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서식 1-가】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설립 대표자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신청 내용	법인	⑤ 명칭	학교법인 ○○학원 (한자:)					
		⑥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임원수	이사: ○○명, 감사: ○명					
	설치 학교	⑨ 학교종별						
		⑩ 학교명칭	(가칭)					
		⑪ 학교위치						
		⑫ 전화번호						
		⑬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비고	
					입학정원	총정원		
	계 ()	계 ()	명	명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서류: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③ 재산목록 ④ 재산출연증서 ⑤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재산의 소유권 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⑦ 재산의 평가조서 ⑧ 재산의 수익조서				⑨ 임원의 이력서 ⑩ 임원의 신원진술서 ⑪ 임원의 취임승낙서 ⑫ 임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⑬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⑭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⑮ 창립총회 회의록				



【서식 1-나】

학교법인 설립취지서

※ 학교법인 설립의 취지, 목적 및 발전계획과 학교 설립개요 등을 명시
(가능하면 본 서식 1쪽으로 요약)

…
V
…
관련
서식

【서식 1-다】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목록

1. 총 괄 (단위: m², 천원)

구 분	재산명	수 량	평 가 액	소 유 자	비 고
교육용 기본재산	토 지				
	건 물				
소 계					
수익용 기본재산	토 지				
	건 물				
	예 금				
	주 식				
소 계					
합 계					

2. 교육용기본재산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평가액	용도	비고
토 지							
건 물							
계							

3. 수익용기본재산

가. 부동산 (단위: m², 천원)

구 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평가액	용도	비고
토 지							
건 물							
계							

나. 현금, 주식, 채권 등 (단위: m², 천원)

구 분	예금기관/발행기관	계좌번호/발행번호	예금액/평가액	비고
계				



【서식 1-라】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학원에 무상출연(기부)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인) 인감

○ 기부재산 표시

(단위:천원)

재 산 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 비고: 기부자 인감증명서, 기부자가 기부할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재산가액 증명 서류(감정평가서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조서 등을 첨부할 것

【서식 1-마】

학교법인 임원 이력서					
1. 성 명	(한자)				사 진 (여권용, 3.5cm×4.5cm)
2. 주민등록번호					
3. 현 주 소					
4. 전 화	(사무실)	(주택)			
5. 학 력					
구 분	학 교 명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비 고
중					
고					
대					
대학원					
6. 주요경력					
소 속		재 직 기 간	직 책	비 고	
※ 학교법인 경력사항은 필히 기재					
7. 자격면허					
년 월 일	종 별	자격, 면허 발급기관			비 고
8. 지역사회활동 현황					
9. 포상실적					
년 월 일	훈 격	내 용	시 행 청	비 고	
10. 처벌내용					
년 월 일	처벌내용	사 유	시 행 청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 1-바】

 V
 ...
 관련
 서식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금번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감사)
 (임기○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귀하

【서식 1-사】

각 서

다음 사람이 금번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에 취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사/ 감 사			

년 월 일

이사(감사) ○ ○ ○ (서명) 자필 서명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아】

V
...
관련
서식

겸직허가(동의)서

☐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겸직허가사항

- 겸 직 기 관:
- 직 위:
- 겸 직 기 간:

위와 같이 겸직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겸직허가(동의)기관의 장(직인)

【서식 1-자】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 연월일: 2. 회 의 장 소: 3. 회 의 안 건: 4. 참 석 인 원: 참석이사(성명 기재) 참석감사(성명 기재) 5. 결 석 임 원: 결석이사(성명 기재) 결석감사(성명 기재) 6. 회 의 내 용			
년	월	일	
설립당초의	임 원		
설립대표자	이 사장		(인)
(출석임원)	이 사		(인)
	이 사		(인)
	:		
	:		
※ 출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			

〈참고사항〉

※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대표, 이사장 선임
- 설립취지와 학교설립계획(법인의 명칭·위치, 학교의 종별·명칭·위치 등) 채택
- 학교법인 정관 심의 의결
- 학교현장 심의 의결
- 출연재산(소요자금 조달계획) 내용
- 임원(이사, 감사)선임
- 기타 중요사항 의결



【서식 1-차】

V
...
관련서식

설립당초의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연 령 (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현 직	이사상호간 또는 감사 와의 관계	교 육 경 력
1	이 사 장							
2	이 사							
3	이 사							
4	이 사							
5	이 사							
6	이 사							
7	이 사							
1	감 사							
2	감 사							

【서식 1-카】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가. 소요자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자금	비 고		
(1) 교 육 용 기본재산	(가) 교지구입비 또는 출연금(평가액)		※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 출연 시 붙임서류: 감정평가업 자의 감정평가서		
	(나) 교사건축비				
(2) 수익용기본재산					
(3) 학교교구·설비 확보					
(4) 기 타 (실험·실습 시설·설비 포함)					
합 계					
나. 자금조달계획					(단위: 천원)
재산의 구분	출연재산	재 산 목 록 의 표 시			
		종별	수량	금액(평가액)	비 고
(1) 교 육 용 기본재산 (교지구입비, 교사건축비)	(가) 현금, 예금				
	(나) 유가증권				
	(다) 부동산				
	(라) 기타				
	계				
(2) 수 익 용 기본재산	(가) 현금, 예금				
	(나) 유가증권				
	(다) 부동산				
	(라) 기타				
	계				
(3) 교구·설비					
(4) 기타					
합 계					

- ※ 비고 : ① 재산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2부를 첨부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예 :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현소유자 등)
② 자금조달계획의 합계금액은 상기「가. 소요자금 내역」의 소요자금 합계액 이상이어야 함.



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 산출					
(1) 기준 산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9조 (단위: 천원)					
연도별	운영수익총액(A)	공 제 액(B)	잔 액(A-B)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기준해당액	편제완성년도 (A-B)/2 :				
(2)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가) 정기예금등 유동자산					
(나) 부동산					
(다) 기 타					
총 액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3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입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세입표 제1장 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 세입표 제2장 제1관 제1항 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 세입표 제2장 제1관 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 수익용기본재산의 소득실적은 법인설립 허가사항 이행보고 시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 확보기준 미달로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됨 ㉣ 학교법인설립 허가 시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시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종류·수량·단가 등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 있으나(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은 필히 사전 이행), 확보계획총액은 그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에는 ㉠항과 같음					

- ※ 비고: ①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까지 학교법인의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설립허가조건),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을 유념하여야 함
- ②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설학교의 경우: 최근 3년 간 세입·세출 결산서
 - 신설학교의 경우: 편제완성년도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서

【서식 1-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1) 기준산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단위: 천원)					
연도별	운영수익총액(A)	공제액(B)	잔 액(A-B)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기준해당액	편제완성년도 (A-B)/2:				
(2) 확보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소득예정액	학교운영경비 총 당 액
가. 정기예금 등					
나. 부동산					
다. 기타					
총 액					
※ 소득예정액과 학교운영경비충당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출할 것 ⑦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㉞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세 부 내 용 및 범 위
1. 제세공과금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 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3. 법정부담경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3) 확보재산과 소득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예금종류	예금주	예치기관		잔고일자	금 액	소 득 예정액	비 고
가. 정기 예금 등								
	계							
나. 상장 주식 및 국·공채	상장주식 및 국·공채 명칭	소유주	액면가	수량	잔고일자	금 액	소 득 예정액	
	계							
다. 토지 건물	소재지	소유주	면적(m ²)	취득일자	평가금액	소 득 예정액	근저당 등 설정금액	
	계							
합 계 (가 + 나 + 다)								
* 붙임서류: 1.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은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2.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 발생 산출근거와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소득실적) 3. 부동산(토지, 건물)의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4. 재산목록을 별지로 작성하되, 확보기준을 초과한 재산은 비교란에 별도 표기할 것								

학교법인 재산 청산조서

(단위: 천원)

[illegible]



【서식 1-다】

재 산 총 괄 표

(단위 : 천원)

재 산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 익 액	취 득 원 인	비 고
기 본 재 산	현금(예치액)					
	주 식					
	사 채					
	건 물					
	대 지(건물)					
	전					
	답					
	대					
	임 야					
	기 업 체					
	기 타					
	계					
보 통 재 산						
	계					
합 계						



【서식 1-라】

기본재산목록

(단위 : 천원)

[illegible]

※ 기업체, 주식, 사채, 수익용토지, 건물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비고란에 연도별로 기재

VI

판례



판례 1

학교법인 설립자와 학교법인과 관계

-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다1171)
-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일단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사실상으로 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현재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4710)
- 사립학교법령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중의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당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036 판결「학교법인설립자 명의정정 신청거부 처분취소」)

판례 2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성격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는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재 하계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판례 3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에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판례 4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판례 5

**■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한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잔여재산이 지정된 자에게 귀속됨으로써 행정청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 외에는 따로 잔여재산 귀속자 지정의 당부를 심사할 기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으로서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에서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은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반드시 법인에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 확정)

판례 6

무효인 학교법인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해산결의 및 인가의 효력

-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됨.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VII

질의회신 및 감사사례



질의회신 1

학교법인 설립자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지만, 출연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의 재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출연자가 곧 법인설립자라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청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임.

(법무810-215, 76.7.19. 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질의회신 2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 일부를 기존의 학교법인에서 분할하여 개별 신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설 학교법인은 출연금 없이 기존의 학교법인을 분할하여 설립 가능한지 여부

- 학교법인이 분할한다는 사항에 대한 명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분할한다’ 라는 의미는 당해 학교법인의 소유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바,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봄. 따라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학교를 설립코자 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의거 관할청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안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교 07000-352, 00.4.29. 대: 경남마산시 최○○)

질의회신 3

설치·경영학교가 폐지된 경우의 학교법인 해산 여부

질 의

- 학교법인 ○○학원은 중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므로 ○○중학교 폐지인가 시에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달성이 불가함을 이유로 학교법인 해산신청을 하도록 인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학교 폐지 시에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이 없음에도 관할청에서 학생 수 격감의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조항을 적용하여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규정 제3호에 의거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위 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학교법인이 정관 변경 절차 없이 동 학교를 폐지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학교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청에서는 정관 변경의 이행 촉구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 특례규정이므로 다른 사유에 의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을 해산 할 수는 없을 것임.

(지교 81400-98, 1999.10.5. 대: 대전광역시교육감)



질의회신 4

「사립학교법」 제10조(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0-0299, 2010.9.17.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

질 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이른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자금출연 등으로 학교법인 설립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공립’ 학교만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 설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학교를 설립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학교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고,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설립주체가 혼동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립학교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를 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설립의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학교법인 포함)이 세우는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법령체계 등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 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음.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 제10조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 등 관련)

[법제처 10-0465, 2011.1.2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

질 의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기존의 학교법인이 2개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회 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3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시 단순히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른 일정한 재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기존의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임. 따라서,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회신 6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교육부 16-0374, 2016.8.11.]

질 의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외의 행위를 통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 학교법인 설립의 필수적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그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학교법인은 그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제3장

학교법인의 정관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정관의 개념	65
II. 정관의 기재사항	66
1.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관 필수 기재 사항	66
2.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 개별규정등에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66
3.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67
4.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67
III. 정관 변경 업무처리요령	67
1. 정관변경	67
2. 정관변경시 유의사항	71
3.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안내	73
4. 정관 기재사항	75
IV. 관련서식	82
V. 판례	83
VI. 질의회신	85

학교법인의 정관

I

정관의 개념



I .. 정관의 개념

◆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정관은 자율성을 갖고 작성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법률행위의 준칙이 되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함.
-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해당 정관은 무효이며, 적법한 내용의 정관이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정관은 효력이 없음.
정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II

정관의 기재사항



1 >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법 제10조 제1항)

- 목적
- 명칭
-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기타 사립학교법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2 >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 개별규정등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 설립당초의 임원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2항)
-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제2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 및 구성(법 제14조제4항)
- 개방이사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법 제14조제6항)
- 이사장의 직무(법 제19조제1항)
- 임원의 선임 및 임기(법 제20조제1항, 제3항)
- 해산사유(법 제34조제1항제1호)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주체(합병 및 파산의 경우 제외)(법 제35조)
-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법 제53조제3항)
-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법 제53조의4제2항)
-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법 제59조제3항)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법 제60조의3제2항)
- 사무기구의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의2제1항)
-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법 제72조의5)
- 학교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5조 제1항)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추천·선임방법 및 기준(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8항)

3 >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임의적 규정사항)

- 설립 당시 일정한 재산 출연자의 정관 기재(법 제10조의2)
-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법 제16조제1항제8호)
-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법 제19조제2항)
-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상근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1항)
- 정관으로 청산인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79조 및 제81조~제95조)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경우(법 제54조의4제1항)
- 법 제59조제1항제1호 내지 13호의 휴직사유 외에 따로 휴직사유를 정하는 경우(법 제59조제4항)
-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시행령 제4조의2)
- 교원의 공개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시행령 제21조제5항)

4 >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3조)
-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한 임용권의 학교장 위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는 절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

III

정관변경 업무처리 요령**1 >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 3.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4. 사립학교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 4의2. 사립학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 6. 해산명령, 청문

가. 정관변경 절차

업무주체	업무내용	비고								
학교법인	정관변경 사유 발생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학교법인 자체 변경 사항 발생								
↓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 공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								
↓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학교법인	관할청 보고 (이사회 의결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교육부 고시 제2012-11호('12.6.28.) 참조 - 변경사유, 변경문, 신규조문 대조표, 변경 정관, 이사회회의록 사본, 관련 증빙서류(관할청 등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 시)								
↓										
관할청	시정 및 변경 명령 (30일 이내)	• 법령 위반 및 변경 사항이 있을 시 • 적합하게 변경된 경우 수리 통보								
↓										
학교법인	수리 통보된 변경 정관 공개	• 각급 유지경영교 홈페이지에 변경된 정관 게재 • 이사회 회의록은 유지경영교(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동안 공개								
↓										
학교법인	시정, 변경후 재보고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 (3주 이내)	사립학교법 제8조 및 제13조 • 등기사항 (민법 제49조, 제52조 준용) <table><tr><td>1. 목적</td><td>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td></tr><tr><td>2. 명칭</td><td>6. 자산 총액</td></tr><tr><td>3. 사무소</td><td>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td></tr><tr><td>4. 설립허가의 연월일</td><td>8. 이사의 성명·주소</td></tr></table>	1. 목적	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명칭	6. 자산 총액	3. 사무소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4. 설립허가의 연월일	8. 이사의 성명·주소
1. 목적	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명칭	6. 자산 총액									
3. 사무소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4. 설립허가의 연월일	8. 이사의 성명·주소									

※ 학교법인 제출서류

- 수익사업 신설/변경: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계획서
- 학교 신설: 학교설립계획승인서(관할청)
- 학교 폐지: 학교 폐지 인가서(관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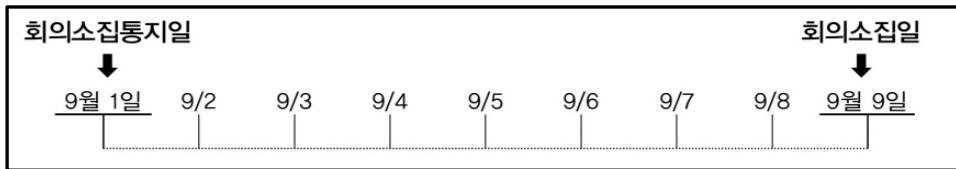
나. 정관 변경(안) 작성

- 변경사유
 -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
- 변경문
 - 법령 개정문을 참고하여 작성(<https://gwanbo.go.kr>)
- 신·구조문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조문 내용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변경 정관
 - 변경 후 정관(신), 변경 전 정관(구) 정관 한글파일을 첨부
- 이사회 도달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소집 통지를 각각 이사 또는 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도달 증빙 자료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 이사회 소집 통지

- 학교법인 운영하는 학교(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참고자료]



- 이사회 회의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회의소집통지일이란 회의소집통지가 각 이사에게 전부 도달한 날을 말하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회의소집 통지일과 회의소집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의소집 통지일과 회의소집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통지기간 7일 이상 확보)

라. 이사회 의결

- 정관 변경안은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참고자료] 이사 정수에 따른 의결정족수

이사정수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의결 정족수	이사정수 과반수	4이상	5이상	5이상	6이상	6이상	7이상	7이상	8이상	8이상
	이사 정수 2/3 이상	5이상	6이상	6이상	7이상	8이상	8이상	9이상	10이상	10이상

마. 정관변경보고

- 보고시기 : 이사회 의결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보고
- 제출서류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1호, 2012.6.28. 제정)

구 분	학교법인 제출서류
〈공동사항〉	1. 정관변경사유 및 신·구대비표 2.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관련 증빙서류 (관할청 등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 시)
〈수익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계획서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	1. 관할청의 학교설립계획승인서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1. 관할청의 학교폐지인가서

바. 법령 위반 사항 있을 시는 관할청의 변경 및 시정 명령

사. 변경 및 시정 후 재보고, 관할 법원에 변경사항 변경 등기

● 변경 등기

- 사립학교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를 요하는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아. 변경사항 정리

- 정관의 임의 정정·삭제 또는 가감 불가
- 정관 변경 전 관할청과 협의하여 법령 위반 및 보완 사항 사전 검토
- 부칙도 정관의 일부분으로서,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 부칙도 인가순으로 누적 관리하여야 함. 이전 부칙 삭제 금지)

예)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이 하나의 내용만 있는 경우 '제1조', '1', "①" 등을 붙이지 않고 작성함

- 정관 변경 후 법인에서는 정리된 새로운 정관 전문을 비치하여 업무처리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토록 해야 함.

※ 부칙 관리

학 교 법 인 ○○학 원 정 관

(1991. 04. 30 전문개정	0000과-000)
(1997. 06. 10 개 정	0000과-000)
(2000. 05. 31 개 정	0000과-000)
(2001. 07. 28 개 정	0000과-000)
(2005. 07. 11 개 정	0000과-000)
(2008. 09. 25 개 정	0000과-000)
(2012. 04. 01 개 정	0000과-000)
(2022. 01. 01 개 정	0000과-0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중학교
2. ○○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구 ○○로 ○○길에 둔다.

(개정 2022. 01. 01)

2 > 정관변경시 유의사항

- 정관 변경안 작성시 그 내용이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항상 검토하여야 함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결 후, 14일 이내 보고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됨

예) “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조(정원) 법인 및 유지경영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예)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 “제○○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명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예) “법인에 7명 내지 10명의 이사를 둔다.” (×)

→ “제○○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 및 감사 2명을 둔다.” (○)

- 정관의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조·항을 인용한 다른 조·항도 변경하여야 함
- 이사정수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과조치 및 시행일(부칙에 명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예) 법인의 이사정수 12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가 11명이고, 그 중 3명은 2022. 10. 31.자 임기만료인 경우)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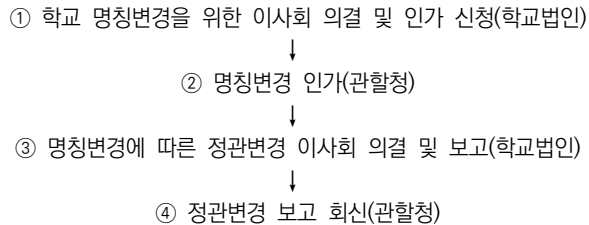
-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학교를 설치하거나 수익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법인설립 당초 정관으로부터 그 후의 변경 수리된 정관을 수리 연월일 순으로 누년 연속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관변경의 효력은 이사회 의결일 또는 의결일 이후 별도 지정일부터 발생
※ 정관변경 시행일은 소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예) 〈부 칙〉

이 정관은 관할청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립학교법」에서 ‘연임’은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하여, ‘중임’은 ‘임원 (이사·감사) 및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개정 시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함.

구 분	내 용
연 임 (連任)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중 임 (重任)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3 >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안내(2022년도 기준)

연번	구분	주요개정사항	근거법령
1	학교법인 이사회	☐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 추가(2021. 9. 24. 개정) •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시	제20조의2 제1항
2		☐ 임원 선임 제한 기간 확대(2021. 9. 24. 신설) • 임원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임	제22조의2
3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소송 개시·완결 시 관할청 신고 의무화 (2021. 8. 10. 신설)	제28조 제5항
4		☐ 임시이사 선임사유 일부 변경(2021. 8. 10. 개정)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5조 제1항
5		☐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 보조금 범위 확대(2021. 8. 10. 개정)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추가	제25조 제6항
6		☐ 이사회 소집 시 학교 홈페이지 등에 소집 관련 사전 공지 의무화 (2021. 9. 24. 신설)	제17조 제5항
7		☐ 임원, 교직원의 청렴의무 준수 및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화 (2021. 9. 24. 신설)	제72조의4 제72조의5
8		☐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 (2021. 9. 24. 신설)	제72조의3
9	과태료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소송 개시·완결 후 관할청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2021. 8. 10. 개정)	제74조 제2항
10		☐ 이사장의 회계 부정 시 벌칙 강화(2021. 8. 10. 개정) • 법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부정 사용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73조
11		☐ 사무직원 관련 징계·해임 의무 미이행, 사학기관 행동강령 시정명령 미이행,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인적사항 미공개 등에 과태료 부과 (2021. 9. 24. 개정)	제74조 제1항, 제2항
12	교원인사 위원회	☐ 초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의무화(2021. 8. 10. 개정) • 사립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필수 설치하도록 함	제53조의4 제1항
13	학교운영 위원회	☐ 학교 회계의 예·결산시 학교운영위원회“심의”필수화 (舊“자문”)(2021. 9. 24. 개정)	제29조 제31조
14	사립학교 교원 임용	☐ “임용”의 정의에 “강등” 추가(2021. 8. 10. 개정)	제2조
15		☐ 교원의 휴·복직 관련 사항을 정관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 가능 (2021. 8. 10. 개정)	제53조의2 제2항
16		☐ 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실시 의무화 (2021. 9. 24. 신설)	제53조의2 제11항

연번	구분	주요개정사항	근거법령
17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 교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 추가(2021. 8. 10. 신설) • 사립교원의 징계 종류를 국·공립교원의 징계 종류와 동일하게 함	제61조 제2항, 제3항
18		☐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성비위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의무화(2021. 8. 10. 신설) • 사립교원의 징계 결과 통보를 국·공립교원의 징계 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함	제66조 제5항
19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증원 및 구성 구체화(2021. 9. 24. 개정) • 위원 5~11명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 특정 성 10분의 6 초과 불가	제62조
20		☐ 교원 징계 재심의를 위해 관할청에 징계심의위원회 신설(2021. 9. 24. 신설)	제62조의3
21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송부 대상(관할청) 추가(2021. 9. 24. 개정)	제66조 제2항
22		☐ 교원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은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가능(2021. 9. 24. 개정)	제66조의2
23		☐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2021. 9. 24. 신설)	제70조의5
24		☐ 사무직원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은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가능(2021. 9. 24. 신설)	제70조의6
25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 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의무화 및 채용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공무원법상 조치 준용(2021. 8. 10. 신설)	제70조의3 제1항, 제2항
26		☐ 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제한사유 신설(2021. 9. 24.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자 임용 제한	제70조의3 제3항
27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조항 변경(2021. 9. 24.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준용	제70조의4
28		☐ 관할청의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및 징계의결이 가벼울 경우 재심의요구권 신설(2021. 9. 24. 신설)	제70조의5 제70조의6



4 > 정관 기재 사항(2022년도 기준)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목적	필수	법 제10조 제1항	·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보통교육 → 중등교육 · 초등보통교육 → 초등교육
명칭	필수	법 제10조 제1항	· 법인은 ~ 라 한다.	
설치 학교	필수	법 제10조 제1항	· 법인은 ~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주소	필수	법 제7조, 제10조 제1항	· 법인의 사무소는 ~ 에 둔다.	· 도로명주소 확인
자산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영 제4조 및 제5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기본재산	
회계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구분 -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0조, 제21조	· 이사 0명(이사장 1명, 개방이사 0명 포함) · 감사 0명(추천 감사 1명 포함)	· 이사 정수: 7명 이상 · 감사 정수: 2명 이상 (유치원만 운영 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임원의 선임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 교육부 고시 2022-6호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해야함
임원의 임기	필수	법 제20조 제3항	· 이사의 임기는 0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 · 감사의 임기는 0년으로 하고 1회만 중임 가능	· 이사 5년 초과금지 · 감사 3년 초과금지 · 감사의 1차례 중임 가능
개방이사의 자격	필수	법 제14조 제6항, 영 제7조의2 제5항	·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개방이사 자격제한: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개방이사 자격제한 해당 여부
개방이사의 선임	필수	법 제14조 제3항, 영 제7조의2	· 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 요청	· 2배수 추천
개방감사의 선임	필요	법 제21조 제5항	· 감사 중 1명은 개방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	필수	법 제14조 제4항, 영 제7조의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추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0명 ·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 추천위원회는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 위원 정수 5인 이상, 홀수 확인 ·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이사장의 직무	필수	법 제19조 제1항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의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직무대행	임의	법 제19조 제2항	· 이사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 회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규정 여부
임원 선임의 제한	필요	법 제21조	·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 ·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그 정수의 1/4 초과 금지 ·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 이사 정수의 1/4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선임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선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때는 재직이사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 임원 선임 시 확인
임원의 결격 사유	필요	법 제22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 선임 시 확인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임원의 당연 퇴임 사유	필요	법 제22조의2	- 임원이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임원의 겸직 금지	필요	법 제23조	-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 학교(유치원)의 장 -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학교장은 예외)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포함)	· 임원 선임 시 확인
이사회 기능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45조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심의·결정사항이 아닌 심의·의결사항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임의	법 제18조	-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사회 회의 개최시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한 것으로 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필요	법 제18조의2, 영 제8조의3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필수	법 제72조의3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수익 사업의 종류	필수	법 제6조, 제10조 제1항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	· 사업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수익 사업의 명칭과 주소	필수	법 제6조, 제10조 제1항	· 제00조에 의한 사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정관의 변경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45조, 영 제28조	·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청에 보고	
해산	필수	법 제10조 제1항, 제34조, 영 제28조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의 인가~	
청산인	임의	법 제10조 제1항, 제42조	· 「민법」 제82조 준용	
잔여 재산의 귀속	임의	법 제35조, 제71조	·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결될 때 ~ · 다른 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	
학교장의 임기	필수	법 제53조 제3항	· 학교장의 임기는 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 4년 초과 여부 확인 · 1회 초과 중임 여부 확인
교장 등 (교직원의 임무)	필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00학교에 교장 1명과 교감 0명을 둔다.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 한다.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교사는 법령에서 ~ 교육한다. · 행정직원 등 직원은 ~ 사무를 담당한다.	· 학급 수에 따른 교감 수 확인(매년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함)
임명의 제한	필요	법 제54조의3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가능	· 학교의 장 임명 제한 확인
기간제 교원	임의	법 제54조의4	·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법 제54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 ~	
교원의 임용	필요	법 제53조의2 제2항, 제10항, 제11항	·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 ·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 ~	· 사립학교법령 준용 확인 및 교원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 학교장 위임 여부 확인
전형 결과 공개	임의	법 제53조의2 제10항, 영 제21조 제5항	·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경우 공개~ · 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휴직의 사유	필요	법 제59조 제1항, 제3항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세부사항 나열)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른다.	•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 정관 규정여부 및 그밖의 휴직에 대한 신분 및 처우에 대하여 영 제24조의6 정관 준용 여부 확인
휴직의 기간	필수	법 제59조 제2항, 제4항	•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참조	• 휴직의 사유 각각의 조항과 휴직의 기간이 일치되는지 확인 필요
휴직 교원의 신분	필수	법 제59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참조	• 정관 조항 준용 시 조, 항, 호, 목의 뜻을 이해하고 정관 개정
휴직 교원의 처우	필수	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참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참조	
직위의 해제	필요	법 제58조의2	•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직의 사유	필요	법 제58조	•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교원의 정년	필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참조	
명예퇴직 수당	필수	법 제60조의3 제2항	• 교원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 사무직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교원인사 위원회 설치	필수	법 제53조의4	•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 학교,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
교원인사 위원회 기능	필수	법 제53조의4	•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교원인사 위원회 조직	필수	법 제53조의4	•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0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지침」 참조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필수	법 제53조의4	·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확인 필요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필요	법 제54조	· 관찰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징계의 시효	필요	법 제66조의4 제1항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징계시효 5년으로 강화
교원의 보수	필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법인 사무조직	필수	법 제70조의2	·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국장은 ○○로 보한다.	
정원	필수	법 제70조의2	·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학교 사무직원 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참조
사무직원 임용	필수	법 제70조의2, 제70조의3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무직원 보수	필수	법 제70조의2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사무직원 복무	필수	법 제70조의2	· 사무직원 복무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를 준용한다.	
사무직원 신분보장 및 정년	필수	법 제70조의2 법 제70조의4	· 사무직원의 정년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를 따른다 ·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필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특수학교



제목	필수 여부	근거법령 근거조항	내 용	검토사항
학교운영 위원회 기능	필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공모교장,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	
학교운영 위원회 선출	필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교원위원(당연직 제외)은 민주적 절차와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학교운영 위원 임기	필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 「경기도립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참조
학교운영 위원회 자격	필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학교운영 위원회 자격 상실	필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경기도립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참조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등	필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위원회 의무, 자격상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의 및 회의소집 등, 건의사항 처리, 의안의 제출, 발의 등	· 「경기도립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조
공고	필수	법 제6조, 제10조 제1항, 제74조, 영 제3조	·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 할 사항은 OO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일 이상 공고~	·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필요사항 확인 필요
설립 당초 임원	필수	법 제10조 제1항	·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	
설립 이후 재산 출연	임의	법 제10조의2	·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	
행동 강령	필수	법 제72조의5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IV

관련 서식



서식 1

정관변경 보고

학 교 법 인 ○ ○ 학 원

수신 경기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정관변경 보고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거 학교법인 ○○학원은 2023.00.00.일자 ○차 이사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변경 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이사회 회의 소집 관련 공문 및 등기자료 1부. 끝.

학 교 법 인 ○ ○ 학 원 이 사 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00(2023.00.00)

접수

우 12345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7 / @ / 공개

V

판례

V
판례**판례 1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관의 효력**

- 피고 학교법인들의 종전 정관에 각 규정된 정관 변경 절차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각 이사회 결의 외에 원고 노회 인준을 받게 한 정관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1조, 제4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종전 정관규정에 따른 원고 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한 본건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기한 정관 변경은 기본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함.

(대법원 1978.3.28 선고 75다1299 판결)

판례 2 정관규정과 달리 임원의 임기를 정한 취임승인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 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 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 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 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과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짐.

(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432 판결)

판례 3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의 교원의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 정관 규정이 근무성적이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27295 판결)

판례 4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에 반하는 정관의 효력

- 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법 시행일인 1990.4.7. 이후 계속되는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신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 정관 규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법령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함.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5854 판결)

판례 5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제54조의3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으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판례 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VI

질의회신

VI
...
질의회신

질의회신 1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법제처 07-0342, 2007.11.16, 교육인적자원부]

질 의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법률의 규정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는지?

회 신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 때, 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임.

질의회신 2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교육부, 15-0311, 2015.7.9.]

질 의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설립·경영하는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1회 중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 장에게 법령에 의해 중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거나 그 임기를 단임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에 사립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음.

따라서,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경영하는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질의회신 3

이사회 출석 관련 질의회신 [교육부 2018. 10. 4.]

질 의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석에 대하여 서면출석이 가능하도록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사회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 조항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에 이사회출석과 관련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영상회의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임원의 임무) 제3항에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바, 서면출석을 통한 출석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학교법인의 기관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학교법인의 임원	89
1. 임원의 구성	89
2. 이사장의 직무	90
3. 이사의 직무	91
4. 감사의 직무	92
5. 임원의 선임	93
6.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94
7.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95
8. 임원 선임의 제한	96
9.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	100
10. 임원의 겸직 금지	102
11.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	103
12. 임원의 보충	103
13. 임원의 보수제한	104
1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04
15. 임원의 취임 및 해임	105
16.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	107
II. 이사회 운영	109
1. 이사회	109
2. 이사회의 소집	109
3. 회의 개최	110
4.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111
5. 이사회 회의록	112
6. 회의록 공개	113
7. 회의록 비공개 대상	113
III. 관련서식	114
IV. 판례	129
V. 질의회신	139



학교법인의 기관

I

학교법인의 임원



1 > 임원의 구성

◆ 사립학교법

-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 7인 이상(이사장 및 개방이사 포함)
- 감사: 2인 이상(개방감사 포함)
 - ※ 임원의 정수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예) 이사는 9명으로 한다(O), 이사는 7명에서 9명으로 한다(X)
 - ※ 단,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음
- 개방이사: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2배수 추천) 중에서 선임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개방감사: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단수 추천)를 선임

2 > 이사장의 직무

가. 「사립학교법」상의 이사장의 직무

◇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이사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결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을 대표(이사장은 학교법인의 대표기관)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규정된 직무 수행
- 그 밖의 학교법인의 내부 사무 총괄
- 이사회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일자, 장소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의 이사장의 직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 명령자라 한다.
-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43조 (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 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의 수입기관 및 지출명령기관
- 법인의 계약담당자
- 법인의 재산 및 물품 관리자



다. 이사장의 지위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대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 적용
 - ※ ‘대리’란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라. 이사장 직무대행

◆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함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함
 - ※ ‘결위(闕位)’는 자격상실·사임 등의 사유로 공석일 때를 말하고, ‘사고(事故)’란 질병 등의 사유로 공석일 때를 말함

3 > 이사의 직무

가. 「사립학교법」상의 이사의 직무

◆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아니함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

나. 「민법」상의 이사의 책임과 의무

◆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 「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
- 「민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이사의 대리인 선임

◇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학교법인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할 수 있으나 학교 법인의 제반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음

4 ▶ 감사의 직무

가. 「사립학교법」상의 감사의 직무

◇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위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의 감사의 직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41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뀔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 임원의 선임

◇ 사립학교법

-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가.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함
 - 임원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교단 총회 등에서 선임할 수 없음
 - ※ 학교의 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학교의 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의 장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도 겸직허가서 제출)
-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여야 함
 - ※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하더라도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사로써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임원 취임 승인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공개내용: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여부
 -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공개시기(기간): 취임 승인 즉시 공개, 상시 공개
 - 공개방법: 해당학교(유지경영학교 모두 포함) 홈페이지



◆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정관에 정한 방식에 따라 선임함

나. 임원의 임기

-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
-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 가능
-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차례 중임 가능
 - ※ 임원이 임기 '4년 이내' 또는 '3년 내지 5년'(X)

6 ▶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시정요구 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내용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취소절차	•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 •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제37조

7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직무집행정지기간: 6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직무집행정지사유
 -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

8 > 임원 선임의 제한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중략>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가.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나.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일 초과할 수 없음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이사정수가 9인인 경우 1/4는 2.25인이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친족 이사는 2인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4호, 2014.8.19.)

▶ 이사정수가 11인인 경우: $11 \times 1/4 = 2.75 \Rightarrow 2$ 인까지 가능

이사 중 A와 B가 친족관계이고 C와 D가 친족 관계인 경우, 친족이사가 4명이 되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

다.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

- 교육경험 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에 교육경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함

※ (예시) 이사정수가 7명일 경우 1/3은 2.33인이므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 교육경험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 된 각급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라.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안됨

마.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함

-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감사는 추천위원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거부할 수 없음
- 추천위원회는 개방감사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여야 함

바. 임원 선임 시 재적이사 2/3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경우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참고 1] 이사 정수별 임원 선임 제한 비율 및 의결정족수 적용 기준

구 분		임원선임 제한 비율			의결정족수	
		개방이사 (이사정수 1/4 이상)	친족이사 (이사정수 1/4 미만)	교육경험이사 (이사정수 1/3 이상)	일반 기준 (이사정수 과반수)	정관변경, 합병, 해산 (이사정수 2/3 이상)
이 사 정 수	7명	2 이상	0 이하	3 이상	4 이상	5 이상
	8명	2 이상	2 이하	3 이상	5 이상	6 이상
	9명	3 이상	2 이하	3 이상	5 이상	6 이상
	10명	3 이상	2 이하	4 이상	6 이상	7 이상
	11명	3 이상	2 이하	4 이상	6 이상	8 이상
	12명	3 이상	3 이하	4 이상	7 이상	8 이상

[참고 2] 친족의 범위와 촌수의 계산

■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제767조)

- 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민법」제768조)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민법」제769조)

■ 친족의 범위(「민법」제777조)

구 분	범 위	발생사유	적 용
8촌 이내의 혈족	• 자연(自然)혈족 - 혼인 중의 출생 - 혼인 외의 출생	출생	혈족은 부계(父系)혈족과 모계(母系)혈족으로 나누고, 모계(母系)혈족은 모계의 부계(父系)혈족만을 의미함
	• 법정(法定)혈족 -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	입양	
4촌 이내의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혼인	인척은 남편 인척은 부·모계를 포함하지만 아내 인척은 아내의 부계(父系)혈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	혼인	

■ 친족의 촌수별 구분

임원 본인 기준	임원 본인의 형제·자매 기준
• 부모: 1촌의 혈족 • 조부모: 2촌의 혈족 • 증조부모 자녀: 3촌의 혈족 • 자녀의 배우자: 1촌의 인척	• 형제·자매: 2촌의 혈족 • 형제·자매의 배우자: 2촌의 인척 • 형제·자매의 자녀: 3촌의 혈족 •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3촌의 인척 • 형제·자매의 손: 4촌의 혈족 • 형제·자매의 손의 배우자: 4촌의 인척 • 형제·자매의 종손: 5촌의 혈족 • 형제·자매의 현손: 6촌의 혈족
임원 본인의 배우자 기준	임원 본인의 백숙부모 기준
• 배우자의 조부모: 2촌의 인척 • 배우자의 형제·자매: 2촌의 인척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2촌의 인척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촌의 인척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 및 손의 배우자: 4촌의 인척 • 배우자의 백숙부모: 3촌의 인척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 4촌의 인척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의 배우자: 4촌의 인척	• 백숙부모: 3촌의 혈족 • 백숙부모의 자녀: 4촌의 혈족 • 백숙부모의 자녀의 배우자: 4촌의 인척 • 백숙부모의 손자: 5촌의 혈족 • 백숙부모의 종손: 6촌의 혈족
	임원 본인의 종조부모 기준
	• 종조부모: 4촌의 혈족 • 종조부모의 자녀: 5촌의 혈족 • 종조부모의 손: 6촌의 혈족 • 종조부모의 종손: 7촌의 혈족



■ 혈족의 촌수표

1촌인 혈족	4촌인 혈족
- 아버지, 어머니 - 아들, 딸	- 증조부의 아버지(고조부) - 증조부의 어머니(고조부) - 증손의 아들(현손) - 증손의 딸(현손녀) - 조카의 아들 - 조카의 딸 - 백숙부의 아들(증형제) - 백숙부의 딸(증자매) - 할아버지의 형제(증조부) - 증조부의 처(증조모) - 할아버지의 자매 - 외숙부의 아들(외증형제) - 외숙부의 딸(외증자매) - 이모의 아들(이증형제) - 이모의 딸(이증자매) - 고모의 아들(내증형제) - 고모의 딸(내증자매)
2촌인 혈족	5촌인 혈족
- 아버지의 아버지(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할머니) - 아들의 아들(손), 아들의 딸(손녀) - 본인의 형제, 자매 - 딸의 아들(외손), 딸의 딸(외손녀) - 어머니의 아버지(외조부) - 어머니의 어머니(외조모)	- 조부의 아버지(증조부) - 조부의 어머니(증조모) - 손의 아들(증손) - 손의 딸(증손녀) - 형제의 아들, 딸 - 아버지의 형제(백숙부) - 백숙부의 처(백숙모) - 아버지의 자매(고모) - 본인의 자매의 아들, 딸 - 어머니의 형제(외숙부) - 외숙부의 처(외숙모) - 어머니의 자매(이모)
3촌인 혈족	6촌인 혈족
- 조부의 아들(증손) - 조부의 딸(증손녀) - 형제의 아들, 딸 - 아버지의 형제(백숙부) - 백숙부의 처(백숙모) - 아버지의 자매(고모) - 본인의 자매의 아들, 딸 - 어머니의 형제(외숙부) - 외숙부의 처(외숙모) - 어머니의 자매(이모)	- 조카의 손자(증증손) - 조카의 손녀(증증손녀) - 백숙부의 손자(증질) - 백숙부의 손녀(증질녀) - 조부의 형제자매의 아들(증백숙부) - 조부의 형제자매의 아들의 처(증백숙모) - 증조부의 형제 - 증조부의 형제의 처(증증조모) - 증조부의 자매
7촌인 혈족	1촌인 인척
- 증증조부(증조부의 형제)의 손자 - 증증조부(증조부의 형제)의 손녀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딸의 남편(사위)
8촌인 혈족	2촌인 인척
증증조부(증조부의 형제)의 증손자, 증손녀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조부모 - 손자의 배우자(손부) -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촌인 인척	3촌인 인척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딸의 남편(사위)	- 현손의 배우자 - 배우자의 고조부모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본인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내종, 이종사촌의 배우자 - 조카의 아들의 아내
2촌인 인척	4촌인 인척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조부모 - 손자의 배우자(손부) -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고조부모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본인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내종, 이종사촌의 배우자 - 조카의 아들의 아내
3촌인 인척	4촌인 인척
- 배우자의 백숙부모 - 배우자의 증조부모 - 증손자의 배우자(증손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 본인의 형제자매의 아들의 배우자 - 고모, 이모의 배우자(고모부, 이모부) - 조카의 배우자	- 배우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고조부모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 -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자녀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본인의 형제자매의 손자의 배우자 - 내종, 이종사촌의 배우자 - 조카의 아들의 아내

9 >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

가. 임원의 결격사유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3] 4급 이상 교육행정공무원의 범위

구분	범위
교육부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기술직 포함)
사도교육청 본청	• 각 사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기술직 포함)
사도교육청 산하기관	• 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지역교육청, 연수원 등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기술직 포함) • 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 평생학습관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기술직 포함)
국·공립대학 (산업대, 교대, 사도립대 등)	• 4급 이상 공무원(기술직 포함)

[참고 4] 4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범위

구 분		범 위
교육부	본 부	• 무보직 장학관 이상
	교육연수원	• 장학관(교육연수과장)
	국사편찬위원회	• 편사연구관(편사부6장) • 교육연구관(편사기획실장, 사료조사실장, 연구편찬실장, 자료정보실장)
	국립특수교육원	• 원장(장학관)
사도 교육청	본 청	• 장학관으로서 과장(담당관)보직자 이상
	연수원 교육원	• 총무부장 등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기관에서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서 부장급 보직자 이상 • 연수원장(장학관), 교수부장(장학관), 운영부장(장학관), 교육원장(장학관)등
	지역교육지원청	• 장학관으로서 국장급 이상(교육국장, 교육장)
	유·초·중·고등학교	• 교장, 원장
국·공립대학 (산업대, 교대, 사도립대 등)		• 장학관으로서 과장(담당관)보직자 이상 교수, 부교수

나.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사립학교법**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 임원의 겸직 금지

◆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임원별 겸직가능 직위(겸직가능: ○, 겸직불가: ×)

구 분	학교장	설치·경영 학교 교원	설치·경영 학교 직원	학교법인 직 원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장	×	×	×	○	/	○	×
이 사	○	×	×	○	○	/	×
감 사	×	×	×	×	×	×	/

- 교직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없음
※ 단, 학교의 장은 이사가 될 수는 있으나, 이사장은 될 수 없음
-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해당 대학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전일근무를 하고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교원
-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겸직금지 대상에 미포함(단, 겸임교원 중 원소속(본직)기관에서 휴직하여 대학에서 전일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없음)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의 겸직 금지

11 >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임명의 제한)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이사장과 친인척인 학교장은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질 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회 신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제처 08-0098, 2008.5.22. 교육과학기술부)

12 > 임원의 보충

◇ 사립학교법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함
- ※ 후임 임원의 선임은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해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함

13 > 임원의 보수제한

◆ 사립학교법

-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 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의 경우에만 보수 지급
 - 상근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재산 출연자 중 생계곤란자의 생계비 등 지원
 -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임원 중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음

14 >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 사립학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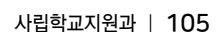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I. 화학공업의 현황

개방이사(감사) 추천위원회	학교법인	관할청	경찰청(서), 시, 구청, 읍, 면



라. 임원의 선임

-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임

마.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조회 포함)
 - 대상 : 학교법인 임원
 - 근거 : 「사립학교법」 제22조
 - 조회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내용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범죄경력조회 시 경우 관할 경찰서 공문 발송 가능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대상 : 학교법인 임직원
 -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관할 경찰서 공문 발송
 - ※ 이사장의 경우 관할청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임원취임 승인신청 시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선임	중임	비 고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임원 신·구 대표표	○	○	친족관계, 교육경력, 한국외 국적 반드시 명시
	임원 취임승낙서	○	○	
	인감증명서	○	○	
	각서(임원선임 제한, 결격사유, 겸직금지 관련)	○	○	
	이력서	○	○	
	결격사유(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포함)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회보서	○	○	
	교육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서(해당자) 각 1부	○	○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	소집통지서, 등기발송 영수증 첨부
	개방이사(감사) 추천 요청 공문 사본 (학교법인→개방이사추천위원회)	○	○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개방이사(감사) 추천 결과 공문 사본 (개방이사추천위원회→학교법인)	○	○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개방이사(감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	○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서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	○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개방이사 각서	○	○	개방이사 선임 시
사임	사임서,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사임일 경우 (사망에 의한 해임의 경우-사망확인서 등)		
이사장 변경	신·구 대표표, 이사회회의록	이사장 변경 보고의 경우		

※ 외국인인 경우: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사. 임원의 변경등기

- 등기사항 : 임원 변동 사항[이사(장)의 취임(신임,중임) 및 해임 사항]
- 등기기한 : 취임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 미등기시 제재 : 「사립학교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등기 시 확인사항 : 관할청의 승인사항(직,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기, 주소)과 등기사항 일치 여부

16 >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
-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가. 개방이사(감사)

-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로 선임하여야 함
※ 이사 정수가 7인인 경우 2인, 9인인 경우 3인임
- 개방 감사의 수는 감사 중 1명

나. 세부 업무 절차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회에 두어야 함)

- 위원구성 : 5인 이상 홀수
- 구성 및 운영
 -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2분의 1을 추천
 - 나머지 인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 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함
- ※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한 개의 학교를 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두고, 추천위원회 구성 시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예시〉

- ▶ 위원 정수:5인, 학운위 추천위원 3인

설치경영학교	초	중	고
3개교	1인	1인	1인
2개교	-	1인	2인

- ※ 추천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비상설기구로 하여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후보자 추천 후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개방이사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2) 추천 요청(학교법인→개방이사추천위원회)

-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전 3개월) 안에 추천위원회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개방감사는 단수 추천)
- 추천위원회는 추천요청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추천할 수 있음

3) 추천 통보(개방이사추천위원회→학교법인)

-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함(개방감사의 경우 단수 추천)
- 3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없을 시 관할청이 추천함

4) 선임(이사회)

- 학교법인은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결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함

II

이사회 운영



1 > 이사회

◆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됨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이사들의 동의 불필요)
 -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이사회는 법인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이며, 비상설 필수기관임
- 이사회는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2 > 이사회의 소집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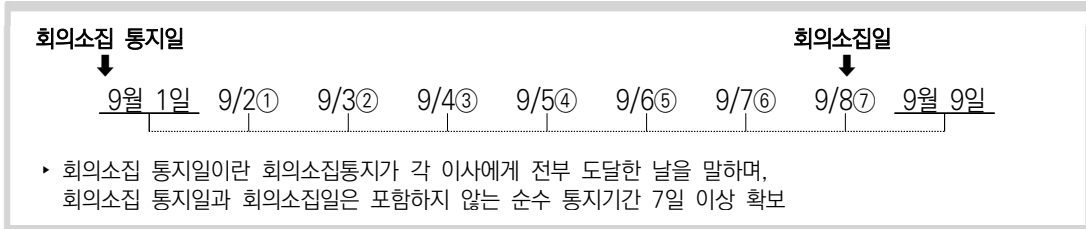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결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때
- 「사립학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이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

나.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소집통지는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회의목적(회의안건)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다. 소집통지의 예외

-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 가능. 단,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함

라. 이사회 소집 일자, 장소 등 홈페이지 공개 의무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함

3 ▶ 회의 개최

가. 개회 선언

- 의장이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후 개회 선언
- 의사정족수는 회의시작 및 회의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따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필요
- 과반수는 반수(半數)를 초과한 수로서 반수와는 구분되어야 함

나. 심의 의결

-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
-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안전에 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의하면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 필요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관련 사안 의결 시 회의 장소에서 퇴장
 - ※ 연임 결의시 2명 이상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1명씩 퇴장하는 방법으로 진행



다. 폐회 선언

- 의장이 안전 처리 종료 후 폐회 선언

4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도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 8명의 과반수는 4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을 의미함
- 재적이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취임된 자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 (이사회에서 선임은 되었으나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재적이사에 해당되지 않음)
 - ※ 이사정수 9인중 4인이 결원된 경우 현 재적이사는 5명임

〈이사정수, 재적이사, 출석이사의 개념〉

- 이사정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
- 재적이사: 현재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이사(임기 중에 있는 이사)
- 출석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예시〉

- ▶ 이사정수 9인 중 2인이 결원된 경우 현 재적이사는 7명이며, 재적이사 7인 중 6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3인이 퇴장하고 3인이 의결했을 경우 의결정족수(5인)에 미달하므로 심의·의결 내용은 효력이 없음 (이사정수: 9인, 재적이사: 7인, 출석이사: 6인, 의결정족수: 이사정수 과반수 찬성이므로 5인)

- 이사정수별 임원선임 제한 비율 및 의결정족수 적용 기준

구 분		임원선임 제한 비율			의결정족수	
		개방이사 (이사정수 1/4 이상)	친족이사 (이사정수 1/4 미만)	교육경험이사 (이사정수 1/3 이상)	일반 기준 (이사정수 과반수)	정관변경, 합병, 해산 (이사정수 2/3 이상)
이 사 정 수	7명	2 이상	0 이하	3 이상	4 이상	5 이상
	8명	2 이상	2 이하	3 이상	5 이상	6 이상
	9명	3 이상	2 이하	3 이상	5 이상	6 이상
	10명	3 이상	2 이하	4 이상	6 이상	7 이상
	11명	3 이상	2 이하	4 이상	6 이상	8 이상
	12명	3 이상	3 이하	4 이상	7 이상	8 이상

5 > 이사회 회의록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목적

-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이사 각자의 회의 발표와 합의 내용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로서의 효과 기대

나. 회의록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이사회 소집통지일
-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 이사정수, 재적이사수, 출석임원 명단, 불참인원 명단
- 각 이사에게 사전 통지된 안건 목록
- 개회선언, 안건의 상정 등 안건 심의과정
- 안건의 심의 결과: 가결·부결 등(개별 안건에 대한 찬성자의 수 명기)
- 폐회선언
- 회의록 작성일, 작성자
- 출석임원 전원 자필서명
 - ※ 자필서명은 타인이 참석임원의 서명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한자홀림체, 영문홀림체 등으로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회의록 간서명 또는 간인: 회의록이 2매 이상으로 적성된 경우에는 출석임원 전원 또는 출석임원 중 3명 호선(자필서명)

6 > 회의록 공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 회의록 공개기간

-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함

-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 대상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처리기한 :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 (부분공개 가능)

7 > 회의록 비공개 대상**◆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Ⅲ

관련서식



연번	관련서식
1	임원 사임 보고
2	사임서
3	이사장 취임보고
4	임원 취임 승인 신청
5	임원신구대조표
6	임원취임승낙서
7	각서
8	임원이력서
9	겸직허가서
10	이사회회의록
11	사용인감계
12	개방이사(감사) 추천의뢰
13	개방이사(감사) 대상자 추천



[서식 1]

학교법인○○학원

수신 경기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임원 해임 보고

우리 법인 임원(이사 ○○○)의 사임서 제출 따라, 이사회(0000.00.00.자 0차)의
에서 해임 의결되었기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임원 해임 사항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당초임기	사임일자	사임사유

- 붙임 1. 사임서 (※사망으로 인한 해임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 첨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이사회회의록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0000.00.00.)
○○○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00(0000.00.00.) 접수

우 1234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http://www.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abc@korea.kr /비공개(6)

[서식 2]

사 임 서

주 소 :

성 명 :

임 기 : 2011.00.00~2015.00.00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감사직을 면하고자 이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사임인 : ○ ○ ○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귀하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 이사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겸 이사장직을 면하고자”로 기재하고,
이사장직만 사임하는 경우 “이사장직을 면하고자”로 기재한다.



[서식 3]

학교법인○○학원

수신 경기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취임 보고

우리 법인 이사장 ○○○이 ○○한 사정으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바, 그 후임으로 ○○○이 이사회(0000.00.00.자 ○차)에서 선임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취임(변동) 사항을 보고합니다.

□ 이사장 취임(변경) 보고

신 임				전 임			
성명	생년월일	임 기	취임일자	성명	생년월일	임 기	해임일자

- 붙임 1.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이사회회의록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0000.00.00.)
 ○○○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00(0000.00.00.) 접수
 우 1234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http://www.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abc@korea.kr /비공개(6)

[서식 4]

학교법인○○학원

수신 경기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임원 취임 승인 신청

학교법인 ○○학원 개방이사가 0000.00.00.일자 제0차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임원

구 분	직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임 기	비 고
신임	이사	○○○	0000.00.00.	승인일로부터 4년	개방이사
중임	이사	○○○	0000.00.00.	0000.00.00.~0000.00.00.	

- 붙임 1. 임원 신·구 대조표(신임·중임 공통) 1부.
 2. 임원 취임승낙서(신임·중임 공통) 1부.
 3. 인감증명서(신임·중임 공통) 1부.
 4. 각서(신임·중임 공통) 각 1부.
 5. 이력서(신임·중임 공통) 각 1부.
 6. 임원결격사유 조회 회보서(범죄 포함, 신임·중임 공통) 각 1부.
 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신임·중임 공통) 1부.
 8. 교육경력증명서 및 겸직허가서(해당자) 1부.
 9. 겸직허가서(해당자) 1부.
 10.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소집통지서, 등기발송 영수증 포함, 신임·중임 공통) 1부.
 11. 개방임원 추가서류(해당자) 각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0000.00.00.)
○○○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00(0000.00.00.) 접수

우 1234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http://www.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abc@korea.kr /비공개(6)

[서식 5]

임원신구대조표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감사정수: ○명, 재적감사: ○명

신(변경)							구(현행)						
직위	성명	임 기	교육 경력	친족 관계	국적	비 고	직위	성명	임 기	교육 경력	친족 관계	국적	비 고
							이사장	홍00	2022.12.17. 2026.12.16.	무	000이사의 아버지	한국	
							이 사	이00	2021.12.13. 2025.12.12.	10년		한국	
이 사	홍00	2023.03.17. 2027.03.16.	23년	이사장의 아들	한국	중임	이 사	홍00	2019.03.17. 2023.03.16.	19년	이사장의 아들	한국	
개 방 이 사	엄00	승인일부터 2025.12.12.	무		한국	신임	개 방 이 사	박00	2021.12.13. 2025.12.12.	무		한국	사임 (23.1.9.)
이 사	조00	승인일부터 4년	15년		한국	신임	이 사					한국	이사수변경 (23.2.8.)
							개 방 이 사	최00	2021.12.13. 2025.12.12.	무		한국	
							이 사	정00	2021.09.01. 2024.08.31.	17년		한국	
							이 사	임00	2021.09.01. 2024.08.31.	무		한국	
개 방 감 사	권00	2023.03.17. 2026.03.16.	무		한국	신임	개 방 감 사	신00	2020.03.17. 2023.03.16.	무		한국	
							감 사	김00	2022.06.25. 2025.06.24.	무		한국	

※ 유의사항(임원 연혁관리를 위해 신·구 대비표는 명확히 작성 바람)

- 현행에는 재적 임원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은 임원의 현황도 작성 필요
- 사임한 임원이 있을 경우 사임서 첨부(사임일 명확하게 표기)
- 개방이사·개방감사는 직위란에 개방이사·개방감사로 구분하여 기재
- 교육경력/친족관계/국적 정확하게 기재

[서식 6]

임원취임승낙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금번 학교법인 **학원 이사(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임기 : 20**.**.**. ~ 20**.**.**.)

2020년 02월 12일

※ 날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일 또는 그 이후로 함

위 승낙인 :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귀하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 본인 확인란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서식 7]

각 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선임의 제한사유,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연번	내 용	검토 결과
1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선임의 제한* 해당 여부 *이사: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초과 감사: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음	해당없음 (OOO이사장의 아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해당없음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10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6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5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10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6	「사립학교법」 제23조의 임원의 겸직금지* 해당 여부 *이사: 당해 학교법인 설치학교의 교원/직원 겸직 여부(학교장은 제외) 감사: 당해 학교법인 설치학교의 교원/직원/이사(장)/법인직원 겸직 여부	해당없음
7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8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3년 경과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해당없음
9 (개방이사)	개방이사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자격 제한사항 *해당 여부 *학교법인 설립자, 설립자의 친족관계(민법 제777조)가 있는 자, 해당법인 임원이었던 사람(개방이사 제외), 해당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장이었던 사람	해당없음

※ 친인척 관계에 해당할 경우 작성(예 OOO이사장의 아들)

0000.00.00.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 확인자: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 OOO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8]

임원 이력서					
1. 성 명					사 진 (3cm×4cm)
2. 주민등록번호					
3. 현 주 소	(우 00000)				
4.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 전자우편: @				
5. 학 력					
구 분	학교명	졸업연도	전공	학위	비 고
중	○○중학교	0000			
고	○○고등학교	0000			
대	○○대학교	0000		학사	
대학원	○○대학원	0000		석사	
6. 주요 경력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경력 및 설치경영교 학교장 경력 기재 철저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확한 최종 퇴직기관명과 퇴직일자 기재 철저					
소 속		재직기간	직 책	비 고	
학교법인○○학원 ○○고		0000.00.00.~0000.00.00.	학교장	0000.00.00. 정년퇴직	
학교법인○○학원		0000.00.00.~0000.00.00.	이사	0000.00.00. 임기만료	
경기도교육청		0000.00.00.~0000.00.00.	서기관	0000.00.00. 정년퇴직	
○○대학교		0000.00.00.~현재	교수		
7. 자격.면허					
년 월 일	종 별	자격.면허 발급기관			비 고
8. 포상실적					
년 월 일	훈 격	내 용	시행청	비 고	
9. 처벌내용					
년 월 일	처벌내용	사 유	시행청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명 (인)					

[서식 9]

검 직 허 가 서

1. 겸직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2. 겸 직 사 항

겸 직 기 관 :
겸 직 기 간 : . . . ~ . . . 까지
겸직예정직명 : 이사(감사)

위와 같이 겸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동의인 : ○ ○ ○ (인)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명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 10]

학교법인 ○○학원

○○○○년도 제○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일 : 0000년 00월 00일

※ 회의일자 - 통보일자 $\geq$ 8일, (반드시 확인할 것)

2. 회 의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00:00~00:00

3. 회 의 장 소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실(구체적으로 기재)

4. 이 사 정 수 : 08명

5. 재 적 이 사 : 06명

6. 참석자(인) : 이사 000, 000, 000, 000, 000 (이상 5명)

감사 000, 000 (감사 2인 : 결산이사회에서는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감사 보고)

7. 결 석 이 사 : 이사 000

8. 회 의 안 건 :

- 1) 개방이사 선임(안) 심의
- 2) 이사 및 이사장 선임(안) 심의
- 3) 기타사항

9. 의 결 사 항 :

- 1) 개방이사 000, 000을 선임
- 2) 이사에 000를 중임하고, 이사장에 000를 선임
- 3) 기타사항 “없음”

10. 회의내용

- 1) 개회선언
- 2) 안건 상정 및 토의
- 3) 각 안건에 대한 동의 및 질의
- 4) 각 안건의 의결

11. 간서명 대표자 선임(필요할 경우)

※ 회의록이 2쪽 이상인 경우 참석임원 전원 간서명 또는 임원 중 3명을 선임하여 간서명 또는 간인

12. 기타사항 토의

13. 폐회선언

이사장이 학교법인 ○○학원 제 ○ 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록 서명(자필)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 회의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서명 및 간서명

- 회의록이 2쪽 이상인 경우 참석임원 전원 혹은 3명의 간서명 또는 간인이 필요하며, 출석임원의 자필 서명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석임원 전원이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회의록 마지막 장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성명이 들어가야 하며, 출석 임원만 자필로 서명함

2.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결정권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에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및 자필서명	
사용인감	자필서명
	정자체

- 법인명: 학교법인 ○○학원
- 직 위: 이사(장), 감사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임 기: 0000.00.00. ~ 0000.00.00.
- 주 소:

위 인형 및 서명은 우리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이므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법인 ○○학원 이사(감사) ○ ○ ○ (인)인감날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본인 확인란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서식 12]

학교법인○○학원

수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개방이사(감사) 추천 의뢰

Ⅲ
관련
서식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2. 학교법인 ○○학원 이사(감사) ○○○외 2명이 0000.00.00.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방이사(감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의뢰 내용

근거	결원 발생일	개방임원 선임대상수	개방임원 추천의뢰수	추천기한	비고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정관 제20조의2 내지 4	0000.00.00. 임기만료	이사 2명 감사 1명	이사 4명(2배수) 감사 1명(단수)	0000.00.00.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0000.00.00.)
○○○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00(0000.00.00.) 접수

우 1234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http://www.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abc@korea.kr /공개

[서식 13]

학교법인○○학원 개방이사(감사)추천위원회

수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개방이사(감사) 대상자 추천

1. 관련: 학교법인 ○○학원-000(0000.00.00.)호.
2. 학교법인 ○○학원에서 추천 의뢰한 개방임원(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 추천 결과 통보 내용

직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법인과의 영업거래 내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단서조항 해당 여부 1. 학교법인 설립자 2. 설립자의 친족관계(민법 제777조)가 있는 자 3. 해당법인 임원이었던 사람(개방이사 제외) 4. 해당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장이었던 사람

끝.

※ 후보자 동의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학교법인○○학원 개방이사(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0000.00.00.)
○○○

협조자

시행 개방이사(감사)추천위원회-00(0000.00.00.) 접수

우 1234 경기도 ○○시 ○○구 ○○로 ○○길(○○동) /http://www.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abc@korea.kr /공개



IV

판례

IV
판례

1 ▶ 임원의 취·해임

판례 1 이사직 사임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력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 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판결).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판례 2 임원취임 승인의 성격

- 이사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계속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판결).

판례 3 임원취임 승인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이 있었다 해도 무효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기본행위인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판결)

-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은 “임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과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판결).

판례 3 임원취임 승인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쟁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판결)

판례 4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

-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4. 1. 17. 선고 2013마1801 판결)

판례 5 임원의 결격사유

-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승인 취소 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대법원 1973.10.11. 선고 73마837 판결)

판례 6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 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됨.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판례 6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 되는지 여부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 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판례 7

개방이사제 도입 취지

-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재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89 판결)

2 > 임원의 직무

판례 1

임원(이사)의 의무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만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음(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 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담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8875판결).



판례 2 이사의 대리

-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2다카2407판결)
-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판결).

판례 3 이사의 대리

-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2다카2407판결)
-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판결).

판례 4 이사의 지위

-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 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대법원 1981. 7. 16. 선고 80마370판결)

판례 5 이사 직무의 위임

- 학교법인 이사들이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 경과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 없는 이상 사문서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판결)



판례 6 전임이사가 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판결).

판례 7 긴급처리권

-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2006두19297판결)

-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이 가능할 경우까지만 한정하여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법인의 경우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8명 이상이므로 이사 8명이 있으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등 원고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함. 따라서 이사 8명이 충족할 때까지 이 사건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에게만 긴급처리권이 인정됨. 다만 이들중 일부가 원고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8명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행정법원 2010. 9. 30. 선고2009구합56389판결)

-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2010두6069판결)

판례 8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에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판결)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에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함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판결).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판결)

판례 9 호선의 범위

-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비록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적법함.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3 > 이사회의 기능

판례 1 이사회소집승인의 법적성격

-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판결)

판례 2 「사립학교법」 17조 4항의 취지 및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의 성격

-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결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감독청에게도 그 소집승인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회의 목적 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이사회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감독청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이사회소집승인신청이 있으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소집승인행위는 신청자에게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감독청은 이사회 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일시·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감독청이 소집 승인을 하면서 일시·장소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판결)

판례 3 이사회 소집통지

-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든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판결)

-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그 통지된 소집장소에서 개최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그에 대체할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2527판결)

판례 3 이사회 소집통지

-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함),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 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판례 4 이사회 소집통지 및 감사의 권한

-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다만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는 유효함.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짐.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판례 5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결의에 임기종인 기존 총장의 해임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임총장의 선출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판결).

판례 6 부적법한 이사회 결의

-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판결).

판례 7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없는 경우

-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결정 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진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 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판례 8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행위

-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판례 9 회의 중 퇴장시 의결정족수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판례 10 이사회결의에 대한 쟁송시 원고적격

-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판례 11 이사회결의에 대한 쟁송시 피고적격

-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인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함.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83 판결)

**판례 12** 하자있는 이사회 소집으로 한 이사선임의 효력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이 이사 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판례 13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재학생 등이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법인, 법인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등이 재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재학생 등이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법인, 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학생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법인 등이 재학생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V

질의회신

**1** > 임원의 취·해임**질의회신 1**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의 성격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에 있어서는 교육관계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동 승인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취임승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임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승인 후 법령의 위배사항이 있을 때는 동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무810-377, '73.8.22. 대:전라북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2 임원 취임 승인 조건

- 임원의 임기만료 전 후임 임원을 선임했으나 감독청에 임원 취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결원이 되어 이사회 기능이 마비된 후 상당기간(5개월)이 경과한 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2월 이내에 보충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기만료 전에 후임 임원을 선임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취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 대표자인 이사장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임원의 선임에 하자가 없는 한 임원 취임은 승인해야 한다

(교행 1040, 32-829, '68.11.8. 대:전라북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3 임기만료전의 임원 해임결의

- 임기만료 전의 임원 해임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22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정관에 임원 해임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할 때 해임 결의를 할 수 있다

(교행 1040, 32-829, '68.11.8. 대:전라북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4 임원 해임시 이사 본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여부

- 「사립학교법」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게 되어 있고,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 없으나 동법 20조3항에 이사의 임기를 법인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동법 22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당해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해임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해임 결의를 할 수 있다. 해임 결의할 경우 당해 이사 본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의 적법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법무 810-174, '72.4.7. 대:경상남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의 의미

질 의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둔 취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두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의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임.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된다 할 것임

(법제처 11-0194, '11.6.30. 대: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6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회신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파면 처분된 자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 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 1993.5.31. 총무처)

질의회신 7 임시이사가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 여부

- 현직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그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정년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게 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22조는 임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음. 다만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그 선임권이 관할청에 있으므로, 동 요건이 발생한 경우 관할청에서 해임조치를 하여야 함.

질의회신 8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확정으로 이사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 법인의 이사 취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주문이 당해 이사의 선임 행위 자체의 유효 무효까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만으로써 당해 이사가 행한 법률행위(동 판결 확정 전후를 막론하고)의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 법인의 이사는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취임 변경을 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법인 이사 취임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이지 소위 공신력은 없는 것으로서, 그 대항력조차 등기 원인되는 사항이 유효히 존재함을 전제해서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사의 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 자를 이사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자가 법인 이사로서는 유효하게 취임될 수 없으며 또 그 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정당한 법인 이사의 행위로서는 대내외를 막론하고 효력을 발생치 못한다. 또 확정판결은 상해를 제외하고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판결이 미칠 따름이지 판결 이유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는 것이다. 『이사 취임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판결은 피고에게 이사 취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 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해 급부를 명하였을 뿐으로 설사 위 판결의 이유로서 이사 선임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실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확정 판결 만으로서는 이사 선임행위 자체의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후의 소송에서 얼마든지 당해 이사 선임행위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54.12.31. 대:교육부장관).

질의회신 9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

- 임기 만료된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임원 결원 등으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대학 25420-561, '91.6.3. 대:대전시 김○○)

2 > 임원의 직무

질의회신 1 이사의 연령 제한 여부

- 이사장 취임승인은 「사립학교법」 제22조(결격사유) 및 23조(겸직금지)의 규정에 의해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의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학식, 덕망 및 나이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감독청은 이를 인가해야 한다
(법무 25000-4, '85.3.11. 대:충청남도교육감).
- 「사립학교법」상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치 않고,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59조제2항,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도 학교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바, 한정치산자를 학교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이 불완전함에 있다면 미성년자도 같은 이유에서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법무 810-225, '76.7.19. 대:경상남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2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이사회의 회의 진행 중 이사장 해임안이 동의되자 이사장이 회장을 퇴장하고 잔류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이사장 해임 결의 등) 했을 경우, 동 법인 정관에 '이사장 사고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면, 회의 진행 중 이사장이 동 법인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회의를 퇴장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장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할 자를 지명하고 지명을 받은 자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잔류이사의 결의는 정관에 위배된다
(법무 810-239, '73.6.11. 대: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3 학교법인 이사의 의결권 위임

질 의

○○중학교의 우지재단인 ○○학원이 후임이사 선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사 6인중 4인이 참석하고 2인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후임이사를 선임한 사안이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3 학교법인 이사의 의결권 위임

회신

법인의 이사의 의결권은 이를 위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인격권이라 할 것임. 만일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표결권이 일인의 수중에 몰릴 위험이 있고, 포기할 수 있다면 이사회에 불성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대판 1957.3.22. 4290 행상 9).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사립학교법」 제15조)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참고로 대법원판결(1982.7.13. 80다 2441)은 “...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법무부)

질의회신 4 학교법인 이사의 대리인 선임

질의

「사립학교법」 제19조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한 바, 학교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립학교법」 제15조 및 제18조는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니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27조는 학교법인의 이사에 「민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는 다른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정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수임한 이사는 위임할 이사의 대리인이 되는것일 뿐 위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7조가 「민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도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사의 직무 중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만을 위임할 수 있음에 불과함을 규지할 수 있고,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가 타인 또는 다른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서의 투표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함. (법무부)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질의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장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회신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제처 08-0098, 2008. 5. 2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6

「지방자치법」 제88조(지방자치단체의장의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방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상근이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이 허용한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반됨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한편, 학교법인의 비상근의 개방이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이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후단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취지상으로 공무원의 겸직이 일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 그 겸직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법인의 비상근인 개방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성격·범위·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까지 배제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 06-0376, 2007 3. 9. 행정자치부)

3 ▶ 이사회의 기능

질의회신 1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 한다고 할 것임.



질의회신 2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도 동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운영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는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 사업이라고 본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참조), 또 필수적으로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결정함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한다

(법무810-332, '75.9.1. 대:학교법인 ○○대학원 이사장).

질의회신 3

- 1)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이사 5명중 1명은 회의 도중 퇴장하고 3명만이 날인하고 1명은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바, 동회의록이 유효한지 여부.
- 2) 이사회 의결 제척의 범위.
- 3)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퇴장을 해야 하는지 여부.
- 4) 이사회 의결이 유효하다면 임원 취임 승인 시기는 언제인지?

- 1) 질의 1에 대하여 : 이사회 회의록의 유효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임. 다만, 이사회 종료시까지 남아 있던 이사 4인 중 3인이 날인하였다면, 그 회의록은 사실대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질의 2에 대하여 : 이사회 의결 제척의 범위는 자신에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사장 선출권 및 이사 선출 권의 의결 제척사유 해당자의 수는 각각 따로 산출해야 할 것이며, 의사는 표결한 이사가 의사정족수(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경우 표결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3) 질의 3에 대하여 :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동 법인정관규정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4) 질의 4에 대하여 : 임원 취임 승인 시기는 감독청이 임원 취임을 승인한 때로 본다

(법무 25000-10, '85.1.19. 대:강원도교육감).

질의회신 4

이사회의 결정권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정관의 변경이나 임원의 선임 절차를 정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기관(이사회 등)이 아닌 제3기관의 인준 등을 거쳐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정관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법무810-429, '74.10.10. 대: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 제18조의2등 관련(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

질의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 제18조의2등 관련(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

회신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임.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임.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제처 12-0566, '12.10.31. 제주특별자치도).

질의회신 6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

질의

이사 정수 9명인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후임 이사장 선출의 결의를 행함에 있어 후보자로 경합된 이사는 퇴장한 후 결의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중의에 따라 이사장후보로 경합된 이사 2명이 별실로 각 퇴장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가 결의를 한 바, 동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 선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동 후임 이사장 선임결의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최초 출석하였던 9명의 과반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장한 이사 2명을 제하고 실제 의결에 참석한 7명의 과반수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정관에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규정하였을 경우에 그 “출석한 이사”라 함은 당해 이사가 의사의 의결 즉 표결에 실제로 참석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처음에는 출석하였다가 표결절차에 이르러 이사회에서 퇴장하였다면 퇴장한 동기의 여하를 가릴 것 없이 그 퇴장한 이사는 출석한 이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퇴장한 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과반수라고 해석함

(법무 810-32012, '76.10.22. 대:문교부장관).

질의회신 7

재적이사

- ‘재적이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취임 승인을 받아 취임된 자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학 1040-1887, '70.11.10. 대:학교법인동국학원)

- ‘재적이사’는 현재 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이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사정수를 9인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중에서 4인이 결원인 때에는 현재의 이사 5인이 재적이사가 된다

(법무법 810-12352, '64.9.7. 대:문교부장관).

**질의회신 8** 재적이사 과반수 미달로 무효로 되는 경우

- 재적이사 7인중 6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3인이 퇴장하고 3인이 의결했을 경우는 과반수 미달로 무효이다
(문기획 810-882, '64.11.10. 대:경기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9 「사립학교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질의**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 되는지?

회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주석: 대법원 2009.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함.

(교육부 18-0495, 2018. 12. 14.)

질의회신 10 이사회 소집 절차의 하자

-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법」 17조 3항에 의한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서면 결의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서면 결의도 이사 전원 찬성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다

(문기획 810-669, '69.6.28. 대: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질의회신 11 이사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나 전화로 한 경우

-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다’는 것은 회의의 목적을 당해 법인의 이사에게 명백하게 표시함은 물론 법인의 운영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그 행위의 존부를 명백히 하고 각 이사 및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구두나 전화의 방법에 의하였다면, 이는 회의소집 통지에 있어서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 810-162, '74.4.16. 대:전라남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12 이사회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는 적어도 7일 전에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일시 및 장소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의 변경도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의 7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해야 할 것이므로,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참석이사들이 이사 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아니다

(법무 25000-44, '85.3.11. 대:충청남도교육감).

질의회신 13 이사회 진행 중 상반된 의견으로 회의를 이석한 이사 일부에게 통보없이 회의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사회의결의 유효 여부

-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각 이사가 회의에 자유로이 참석하여 그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됨.
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의소집통지에 있어서 명시하여야 할 목적사항에는 적어도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을 정하여 통지를 한 후에 통지사항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예컨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있어 그 절차에 의하는 것과 같이 그 변경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통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의 취지에 맞도록 모든 이사에 통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회의를 계속하던 중 일부 이사만의 합의에 따라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이사만으로 회의를 속행하여 이사장을 선출한 경우는 변경된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의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회의에서의 결의도 또한 유효한 결의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법제처 1986. 2. 5. 문교부)

질의회신 14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 승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 소집권자

- 관할청이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는 것은,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한 재적 과반수의 이사가 된다

(법무 25001-111, '86.7.8. 대:대구직할시교육감).

질의회신 15 소집 승인된 이사회의 회의

-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에 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소집되었을 때, 고의로 회의를 기피했던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당해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이 참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

(법무 810-76.11.2. 대:경상북도교육위원회).

**질의회신 16** 소집 승인된 이사회 안건

- 「사립학교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장 결위시에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에 의거, 회의목적(특정 안건의 지정)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승인 신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할청이 안건을 지정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관할청이 지정 승인한 회의목적(지정한 특정 안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대학 25420-1508, '92.8.20. 대:학교법인 선인학원).

질의회신 17 소집된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 소집승인신청에 회의일시와 장소를 특별한 사유를 들어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감독청은 이사회적 적법한 소집과 운영을 위해 회의일시, 장소명시 요구 및 확인 등 감독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 25001-111, '86.7.8. 대:대구직할시교육감).

질의회신 18 통지된 이사회와 달리하여 이사회소집을 하기 위한 절차

- 감독청에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이사회 소집을 승인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사회 소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집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감독청이 승인한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는 소집승인을 받지 않고 개최된 이사회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무 25001-111, '86.7.8. 대:대구직할시교육감).

질의회신 19 이사 일부에 대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 재적이사 7인중 1인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 이사회는 무효이다

(문기획 810-882, '64.11.10. 대:경기도교육위원회).

제5장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153
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153
2. 임시이사 선임	157
II.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161
1. 정상화의 의미 및 기준	161
2. 정상화 절차	161
III. 관련 서식	164
IV. 판례	173
V. 질의회신	181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I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1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여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내용적 요건

- 사립학교법 등 위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임원 간 분쟁: 임원 간 분쟁을 이유로 장기간 이사회가 파행 운영되어 학교법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회계부정: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사회 결의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기타 학사행정 관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 학사행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교원 임용권(보직발령, 전보, 전직 등)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 또는 학생들의 입학이나 전과 등에 개입한 경우
- 관할청의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절차적 요건

- 관할청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원취임 당시의 하자로 인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내용적 요건(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 임원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된 경우
(대판 1988. 3. 22 선고 85누884, 대판 2000. 2. 11 선고 99두2949)
 -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대판 1987. 6. 23 선고 87누256)
 - 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서면결의를 하였을 경우(문기회810-609. 69. 6. 28 전복교육위원회)
-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절차적 요건
 - 취임승인취소 사유가 임원취임 과정에서의 위법에 있으므로 임원취임 이후의 취임승인취소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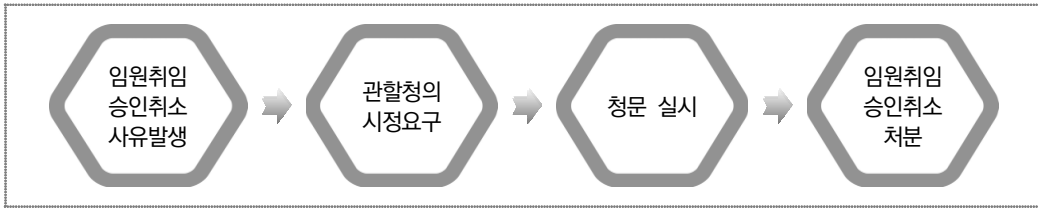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요건으로 '시정요구'의 의미 등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정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다만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으로서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소정의 제고기간을 주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같은 법이 시정요구에 제고기간을 둔 이유도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은 취소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2.5 선고2001두7138판결)



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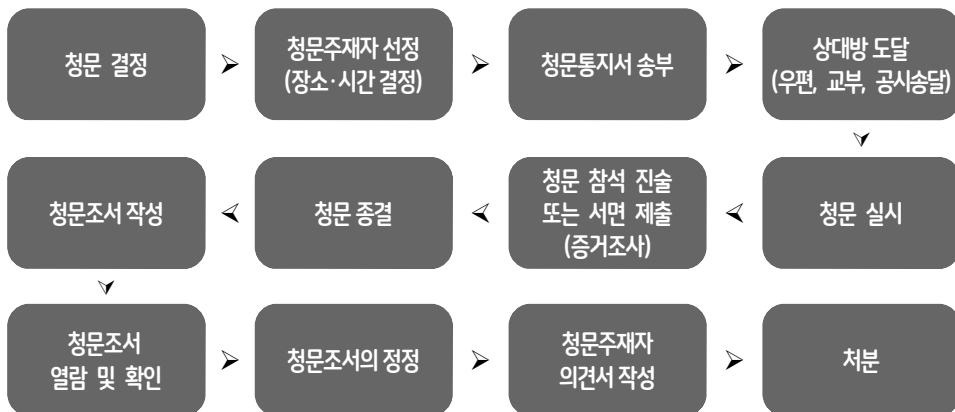


마. 세부 추진 절차

-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발생(「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 사실관계 조사(감사 실시, 수사기록 검토 등)
- 시정요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기간)
- 청문 실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문실시 결과 당사자 등의 진술에 이의 없을 때 처분함
 - ※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경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바. 청문 절차

1) 절차도



2) 청문 실시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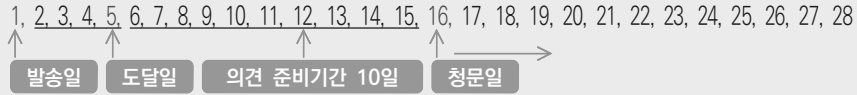
-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③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청문통지기간 설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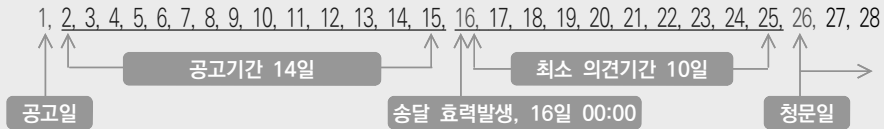
1.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소요기간이 4일이고 1일자로 발송한다면

- 도달일 5일, 청문일은 의견준비기간 10일(6~15일) 경과 후인 16일 이후가 됨



2. 공시송달의 경우 1일자로 공고한다면, 26일이 최단기간의 청문일이 됨

- 2~15일까지 14일 경과 후, 16일에 송달효력발생, 16~25일까지 의견준비기간 10일



※ 청문실시 통지 시 유의사항

-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도달주의)하고,
- 공시송달(공고에 의한 송달)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3) 청문의 진행

- (청문주재자)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 ※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행정절차법」 제28조)
- (당사자)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 상 또는 사실 상의 내용을 진술

4) 청문조서 작성(「행정절차법」 제34조, 별지 제18호 서식)

- ① 제목, ②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③ 당사자 등(대표자, 대리인) 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④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⑤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⑥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⑦ 청문의 공개 여부 및 사유, ⑧ 증거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청문주재자는 청문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행정청에 제출
 - ※ 청문조서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 및 정정요구가 가능함

5) 청문조서 열람·확인(「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
 -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별지 제18호의2 서식)



※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 시 유의사항

-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 사실 및 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해야 함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함
-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됨
- 정정요구 내용이 처분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 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6) 청문주재자 의견서(「행정절차법」 제34조의2)

- 청문주재자는 ① 청문의 제목, ②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③ 종합의견,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청문조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처분행정청에 제출
- ※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 등은 열람·복사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없음

7) 청문 결과의 반영(「행정절차법」 제35조의2)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함

※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이 한 행위의 효력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는 취소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취임승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인 만큼 그 실질은 철회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철회의 효력으로서 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되는 이사가 취소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 임시이사 선임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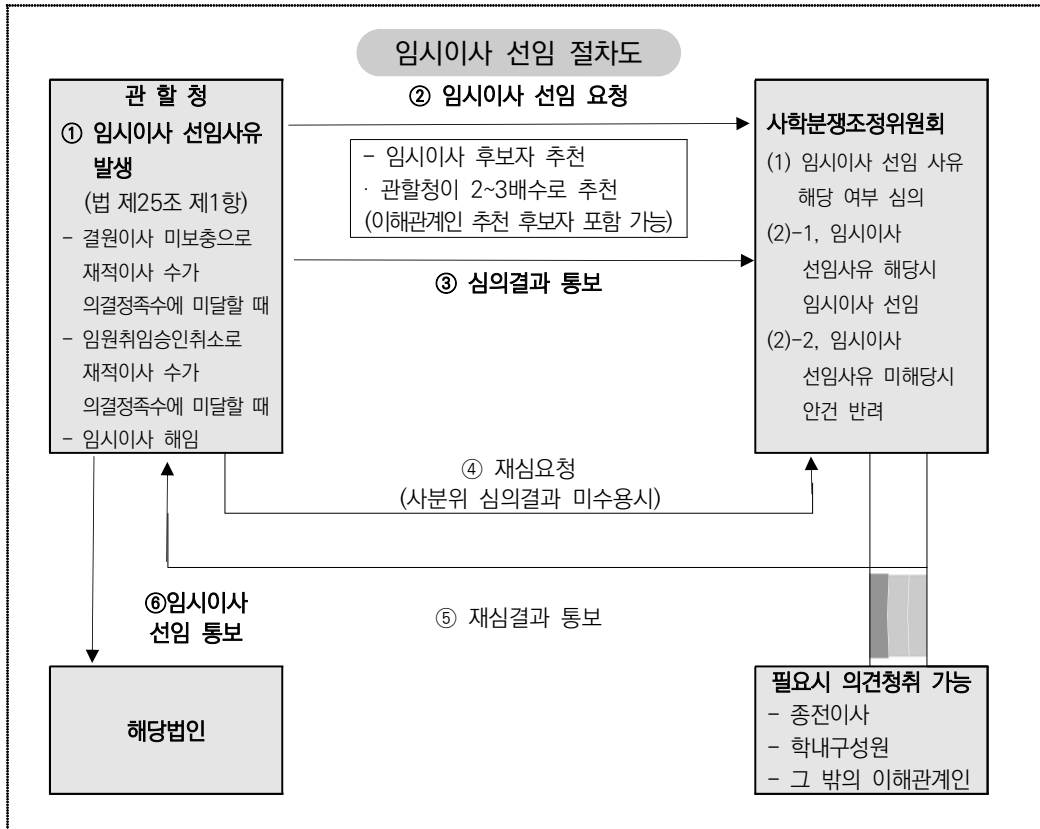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임시이사의 선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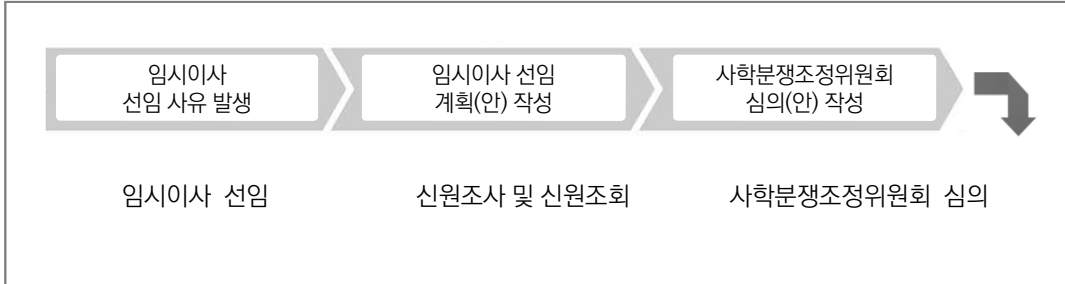
나.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발생

- 1)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 재적이사의 자격이 절차 위반 등의 흠결로 인해 당연 무효가 되어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되는 경우
 - 임원 간 분쟁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재적 이사의 수가 의결정족수 미달이 되어 이사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소송 등을 통해 재직 중인 이사의 자격이 무효로 되는 경우
 - 개방이사가 선임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사회 부존재상태가 되어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나, 장기간 동안 가부동수 등을 이유로 결원보충을 하지 못한 경우
- 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때’
 - ① 사립학교법 등 위반, ② 임원 간 분쟁, ③ 회계부정, ④ 기타 학사행정 관여
- 3)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 임시이사는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해소시키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②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 ③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임시이사 선임 관련 세부 추진 절차



1) 임시이사 선임 계획(안) 작성(포함할 내용)

- 임시이사 선임 배경
- 추진 경과(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경과 사항)
- 임시이사 선임방법 결정(후보자 수 결정, 후보자 추천 주체 결정, 추천 주체별 후보자 추천 인원 수 결정, 임시이사 후보자 선정기준 마련 등)
- ※ 예) 관할청 ○명, 학내 구성원 ○명, 교육계 ○명, 법조계 ○명, 언론계 ○명 등

※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원칙적으로 관할청이 판단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적합한 자를 2배수 이상 추천
- 관할청의 해당법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이나 학내구성원, (지방)변호사협회, (지방)회계사회, 교육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관할청이 직접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사를 임시이사 후보자로 추천
- 임시이사 추천 후보자의 1/30이상이 교육경험 3년이상 있는 자로 추천(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검토(사립학교법 제22조)
- 후보자 간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를 의미함)가 있는 경우 이를 표기(「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2) 주체별 후보자 추천 의뢰

- 임시이사 선임 계획 수립 시 결정한 기관별로 후보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학내구성원, (지방)변호사회, (지방)회계사회, 교육단체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 작성 및 제출(포함할 내용)

- 제안 배경(또는 추진 배경)
- 임시이사 선임 사유
- 주요 경과(임원변동현황 등)
- 현 상황(갈등 상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
-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안
- 향후 추진 계획
- 후보 추천자 프로필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후 선임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청이 추천한 임시이사 후보자 중에서 적절한 인사를 선임하여 관할청에 통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 후보자 보완(재추천)을 요청하기도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 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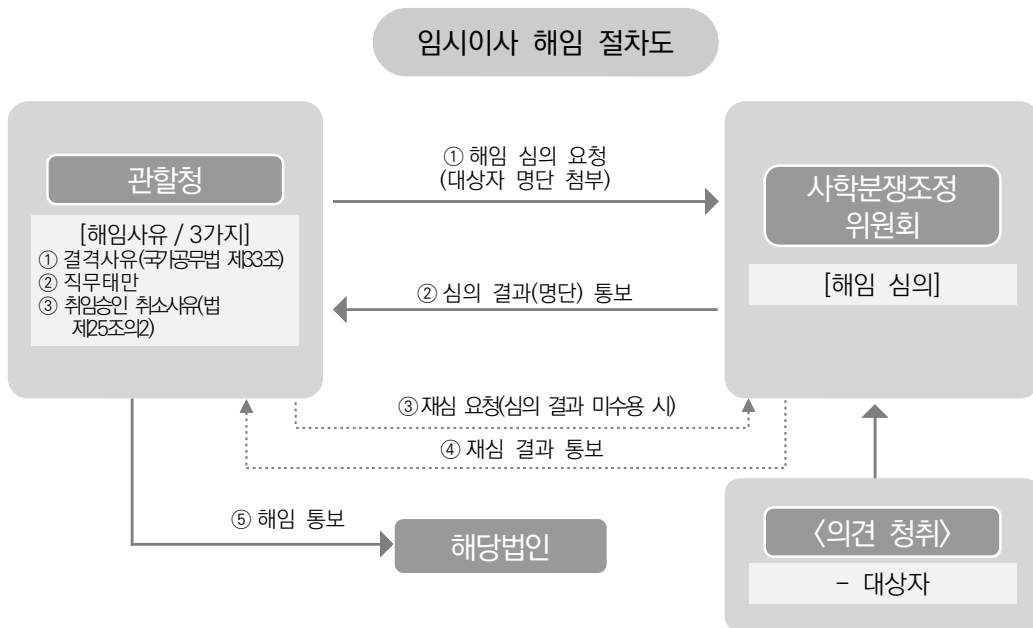
5) 임시이사 선임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해당법인에 통보함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신청이 있으면 다시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청은 재심결과를 수용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임시이사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임시이사의 선임권자: 관할청

7) 임시이사의 해임사유(사립학교법 제25조의2)

-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II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1 > 정상화의 의미 및 기준

◆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가. 정상화의 의미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라 함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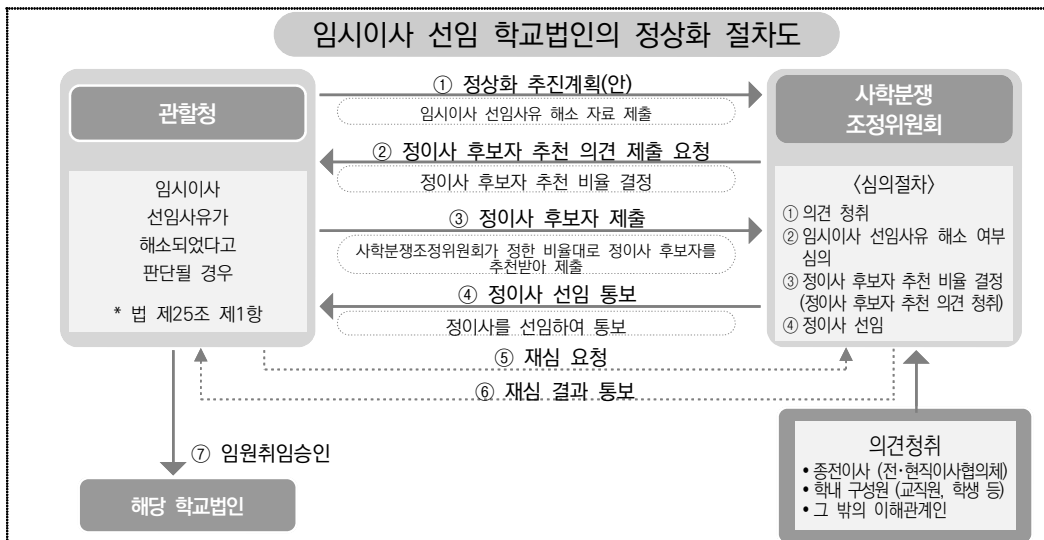
나. 정상화의 기준

-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

다. 정이사 선임권자 : 관할청

2 > 정상화 절차

가.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절차



나. 정상화 추진 실적 제출(관할청 및 해당 학교법인)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평가 계획에 따라 대상 학교법인에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통보
- 정상화 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에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할청은 검토의견을 덧붙여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 제출

다.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제출한 정상화 추진실적 점검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사무기구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

라. 정상화 심의(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여부
- 임원 간 분쟁 유무
- 학교법인 관련 소송 유무
-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 여부 심의
- 정상화 심의 대상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가능, 정상화 추진 불가”로 분류
- 심의·의결 결과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화 심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화 방향, 정이사 선임비용, 정이사 추천 주체 등을 정한 뒤 해당 관할청에 결과 통보

- 정상화 추진 가능: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
- 정상화 추진 불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으나 소송 진행 등 법률관계 미확정 등을 이유로 정상화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마. 정이사 선임 계획(안) 및 정이사 후보자 추천(관할청)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이사 선임 비용 등의 결정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정이사 추천권자로부터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 선임 계획” 및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
- 정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2020.9.25.개정)

【정상화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기준(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핸드북 발췌

- ①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라 함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는 것’을 의미함)
* 전·현직이사협의체¹⁾, 학내구성원 대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관할청, 설립종단, 그 밖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등
- ②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소위 ‘비리 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추천받는 정이사 후보자의 수가 전체 정이사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
- ③ 비리 유형: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관할청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아 해임된 경우,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파면된 경우,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바. 심의 결과 통보(사학분쟁조정위원회)

- 관할청에서 제출한 정이사 후보 추천 명단 중에서 정이사 확정 의결 후 관할청에 통보

사. 정이사 선임(관할청)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정이사 선임
 - ※ 다만,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있을 경우 다시 안전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재심 결과에 따라야 함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1.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그 관련자가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2.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원 회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또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에 학교법인 이 보조참가하는 경우
4. 기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서 교직원 인사, 노무관계 등 이사회 운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가 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 1) '전현직이사협의체'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제1호 해당 주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재직하고 있던 정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함.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재직하고 있던 정이사로 구성된 의사 합의체'를 '종전이사'로 지칭하였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재직하고 있던 정이사 중 정상화를 추진하는 현재까지도 정이사로 계속 재직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전이사'라는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현직이사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임시이사 선임 직전에 재직하고 있던 정이사가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하여 퇴임하거나 사임한 이사를 과반수 충족시까지 순차적으로 포섭하여 그 전·현직 이사들로 구성
 - 임기만료일이 동일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의 수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도 있음
 -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에 해당하는 이사들 중 일부 이사가 사망한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을 제외한 전직 이사들 중 최후 임기만료하여 퇴임하거나 사임한 이사를 이사정수 과반수 충족시까지 순차적으로 포섭하여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

Ⅲ

관련 서식



서식 1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문서번호 사립학교지원과-

시 행 일 ○○○○.○○.○○.

수 신 학교법인 ○○학원,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당사자는 본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2. 당사자	성명 (명칭)	학교법인 ○○학원, ○○○, ○○○				
	주 소	경기도 ○○시 ○○동 123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처분 사유서” 참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명(이사 ○명, 감사 ○명)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경기도 교육청	부서명	사립학교지원과	담 당 자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전화번호	249-0000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장 소	경기도교육청 ○층 회의실(○○○호)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주재자	성 명		○○○		

경기도교육감

인



(뒤쪽)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2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2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의견 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또는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조서

III
●●●
관련서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4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	
1. 청문의 제목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2.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처분 수준의 적정성, 경감 필요성 등)	
4.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

임시이사 선임(안) 작성예시

 III
 ...
 관련 서식

안 건 번 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0000. 00. 00. (제 차)	

학교법인 ○○학원 임시이사 선임안

제 출 자	경기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0000. 00. 00.

1. 제안 배경

○

○

2. 심의 개요

☐ 임시이사 선임 배경(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

☐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상세하게 작성)

○

-

☞ 필요시 주요경과만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별첨 가능

☐ 현 상황(정확하게 작성)

○

-

☞ 학내 상황,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및 이해관계인 의 전 등 포함

☐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 추천 기준 또는 원칙

-

○ 임기만료(또는 사임) 이사 및 추천자 명단

■ 임기만료(또는 사임) 이사 : 2명

계열구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재임 기간
교육	이사장	○○○	'○○.○○.○○	○○대	· 전 ○○대학교 총장 · ○○대학교 교수	'○○.○○.○○ ~ '○○.○○.○○ (○○.○○.○○ 사임)
법조	이 사	○○○	'○○.○○.○○	○○대	· 전 ○○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변호사	"



■ 추천자 : 6명(교육 3, 법조 3)

계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주요 경력	추천자
교육	김○○	'00.00.00	남	○○대	○○대학교 교수	교육청
“	박○○	'00.00.00	여	○○대	○○대학교 교수	“
“	이○○	'00.00.00	남	○○대	○○고등학교 교장	교내구성원 (교원)
법조	김○○	'00.00.00	여	○○대	법무법인○○○변호사	교내구성원 (직원)
“	박○○	'00.00.00	남	○○대	○○○법률사무소 변호사	교육청
“	이○○	'00.00.00	여	○○대	법무법인○○○변호사	학부모단체

※ 추천자 개별 프로파일 : 『별첨 서식』 또는 개별사정에 따라 『다른 서식』의 프로파일도 첨부 가능

추천자 개별 프로필

【교육계】

① 김○○

성명	김 ○○(金○○)
생년월일	○○○○. ○○. ○○ (만 ○○세)
학력	· '75. 2. ○○고등학교 졸업 · '80. 2.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82. 2.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 '88. 8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경력사항	· '89. 3 ~ '93.2. ○○대학교 겸임교수 · '93. 3 ~ 현재. ○○대학교 교수 · '93. 3 ~ '97. 2. ○○대학교 교무처장 · '97. 3 ~ '01. 2. ○○대학교 총장
기타활동 사항 등	· '90. 2 ~ '91. 1.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 '91. 2 ~ '93.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 '92. 2 ~ '94. 1. 노사조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위원 · '02. 5 ~ '04. 4. 한국언론학회 언론과사회 연구회 회원



IV

판례

IV
판례

판례 1 이사취임승인 취소사유

-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판례 2 이사취임승인 취소사유

-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임원취임승인 처분이 위와 같이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 왜냐하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적법유효하게 선임되어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에게 그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판결)

판례 3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에 대한 사후 임원취임승인 취소

- 「민법」 제691조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에 해당되는 원고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점,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임기만료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처분 당시 임원인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임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볼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누29576 판결)

판례 4 시정요구 및 취소 계고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그 취지가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해당 임원의 입장에서는 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므로 관할청에 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당연히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유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계획, 학교법인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될 것인즉, 그렇다면 위 조항에 의한 시정요구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전 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님.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판례 5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같은 법이 시정요구에 계고기간을 둔 이유도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은 취소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짐작될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138판결)

판례 6 재시정 요구기간을 무시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적부

-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있어 계고기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할청의 계고기간을 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나 관할청이 재차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라면, 관할청으로서 새로 설정된 기간 내에 행하여지는 시정조치를 기다려 그 시정조치가 법령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차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그 시정요구 이전의 사정만을 근거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9674 판결)

판례 7 시정요구 변경 통보의 법적 성격

-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한 바에 따라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하는 통보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한 당초의 사립학교법상의 시정요구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태에서 발하여진 관할청의 시정요구 변경통보는 관할청이 가지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에 기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로 임원진이 개편된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니는 새로운 조치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의 시정요구는 관할청의 시정요구 변경통보에 의하여 소급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를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시정요구 변경통보를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둔 시정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변경통보에 시정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시정기간을 두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

(2002.2.5. 선고 2001두7138 판결)



판례 8 임원취임승인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할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으로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서에 임원들의 위법·부당사실을 적시하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학교법인이 위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까지를 기재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처분서에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시정요구의 불응’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서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002.2.5. 선고 2001두7138 판결)

판례 9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만 시정요구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가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됨.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판례 11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의 학교 예산·결산 의결의 책임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음(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3. 1. 25. 선고 2012두18875 판결)

판례 12 시정 요구기한 15일이란?

-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3.1.25. 선고 2012두18875 판결)

판례 13 임기만료 임원의 후임이사 선임

-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판례 14 긴급처리권에 의한 후임 이사 선임

-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하게 됨.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판례 15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처분

-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종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절차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일자를 각 임원취임승인 일자로 소급한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을 소급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판례 16

-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다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위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판례 17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음.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임.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함.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판례 18 임시이사의 권한

-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판례 19 임시이사의 임기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05. 4. 16. 선고 2005마53 판결)

판례 20 정관에 기재된 재산출연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발언권을 지녔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제15조의4 제6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과 제정 또는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특히 「사립학교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출연자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의견청취 대상자로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위 각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그 문언 상 해당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해관계인에게 출석·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대한 출석권이나 발언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게다가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임의 확인을 받는다 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교육당국에 미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확인판결에 의하여 재산출연자에게 출석·발언권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출연자로서는 당해 위원회에 대해 이해관계인임을 이유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재산출연자인 원고 중중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6012 판결)



판례 21

- [1]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 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법률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 [2]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교법인이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음.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함.
-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乙법인이 甲법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판례 22

-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204287 판결)

판례 23 관할청에 의한 정이사 선임의 합헌성

- 정상화 단계에서 반드시 종전이사 등이 이사회로 복귀하거나 이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유지되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의연히 유지·계승되는 것임. 설립목적의 영속성은 말 그대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자의 의사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그 자체가 유지·계승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의 종전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설립자로부터 최초의 이사 그리고 후임 이사로 이어지는 인적 연속성에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렇게 순차 선임된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인적 연속선상에 있던 종전이사 등이 회계부정이나 비리 등 이사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미 그와 같은 전제요건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함.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는 것이지, 종전이사 등과의 인적·재산적 연관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판례 24

-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이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음.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은 학교법인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구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상 관할청으로서의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미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그 이전에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임시이사들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사들의 취임 이후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V

질의회신

V
질의회신**질의회신 1**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 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면 청문절차 없이 처분을 받을 수 있음(청문포기서에 대한 특정서식은 없음)
- 즉시 처분 여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신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실시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음

질의회신 2 청문 실시 통지서에는 청문주재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반드시 청문주재자의 인적사항을 통지해야 함. 이유는 당사자 등이 청문주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질의회신 3 청문을 공개로 실시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없는 공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신청 또는 공개로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청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를 제출(별지 제15호 서식)

질의회신 4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당사자 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청문조서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임
-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청문조서와 달리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권이 없고 비공개 정보 대상임

질의회신 5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행정절차법」 제35조), 당사자 등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참고인 또는 처분담당공무원 등에게 사실의 확인, 증거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문을 실시해야 함

질의회신 6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당사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회신 7

청문주재자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는데 청문주재자의 사정에 의하여 청문주재를 못할 경우 청문주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 제28조는 행정청은 청문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9조는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주재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청문의 통지를 새로이 하여 청문일정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청문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거나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 당사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청문주재자의 변경에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 등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다만, 향후 이로 인한 당사자 등과의 행정절차상 하자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6장

학교법인의 재산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학교법인의 재산	185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185
2. 교육용기본재산	186
3. 수익용기본재산	190
4. 기본재산 가액 산정	193
5.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195
II.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96
1. 재산관리의 기본원칙	196
2. 재산의 취득	197
3. 기본재산의 처분	199
4.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203
5. 학교법인의 차입	205
6.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등	206
7.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207
8. 재산의 교환 및 공유·분할	208
9. 재산의 공유 및 공유물 분할	209
10. 재산의 시효취득	210
11. 재산의 멸실	210
12. 기본재산의 소송 신고	211
III. 관련서식	212
IV. 판례	235
V. 질의회신 및 감사사례	252

학교법인의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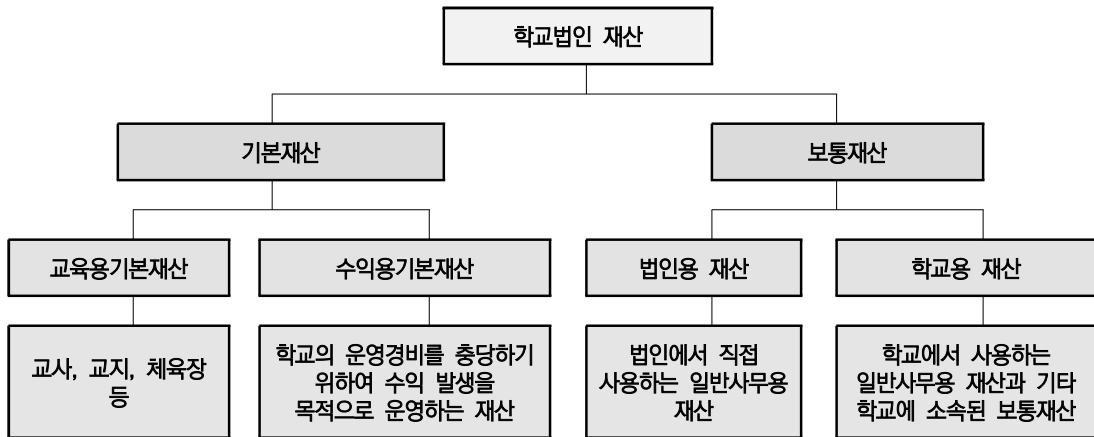
I

학교법인의 재산



1 >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가. 학교법인 재산 구조도



- **교육용기본재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 제5조, 제67조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학교법인이 그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취득한 기본재산
- **수익용기본재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

◆ 사립학교법/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 재산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 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나. 재산구분에 의한 관리자

종 류	구 분	기본 재산	보통재산		재 산 관리자	비고
			학교용	법인용		
부동산		○			이사장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			이사장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			이사장	
학교법인이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이사장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	이사장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		학교장	

- 재산관리의 주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3조)
 - 학교법인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 학교의 장
※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인재산의 관리 책임자이나, 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함
 - 학교법인 재산의 운용 책임자를 구분한 것은「사립학교법」제29조에서, ①협회의 학교법인과 ② 그 설치학교의 회계를 각각 구분한 것에서 비롯됨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집행권은 학교의 장에게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6조에 의해 사학의 계약담당자는 예산 집행 회계의 구분에 따라 각각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구분됨

2 ▶ 교육용기본재산

◆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가. 교육용기본재산이란

- 「사립학교법」등에서 교육용기본재산에 관하여 명문화된 설명은 없으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의 “각급학교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부지 내에 국유지 등이 편입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다른 사람의 소유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매수하거나 취득하여야 함

나. 교육용기본재산 확보기준

- 학교법인에서 설립하는 학교는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등을 확보하여야 함
(교지: 교사용대지 + 체육장)
-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확보해야 함(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교사의 기준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제3항 관련 [별표1]

학 교		학생수 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 이하	241명 이상 960명 이하	961명 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비고〉

1. N은 각급 학교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교사용 대지의 기준 면적

- 교사용 대지 =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 건폐율
 - 건폐율, 용적률: 해당 시·군 조례 기준 [건축물대장 표제부 참조]
 - ※ 학교 설립 시 교사 기준 면적이 아닌, 현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 건폐율: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교지 총면적
 - ※ 용적률: 교사연면적÷교지 총면적

마. 체육장의 기준 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5조제2항 관련[별표1]

학 교	학생수 별 기준 면적		
	40명 이하	41명 이상	
유치원	160	120+N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800	3,600+2N	5,400+N

〈비고〉

1. N은 각급 학교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바. 학교설립 시 교육용기본재산 확보기준 예시

● 적용기준

학생정원		건축면적	건물연면적	토지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중	800명	9,600㎡	24,000㎡	46,000㎡	23,000㎡	30%	120%
고	1200명						

- 운동장 6,900㎡ / 체육관(중) 1,200㎡, 체육관(고) 1,500㎡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고시('07.12. 6) 및 건축물대장 참고

● 시설 기준 산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단위: ㎡)

구 분	산 출 내 역			기준 면적	보유 면적	비 고
	급	정원	산 출 기 준			
교 사	중	800	$1,800 + (4 \times 800) = 5,000$	12,680	24,000	기준면적 초과, 적정
	고	1,200	$1,680 + (5 \times 1,200) = 7,680$			
	계		$5,000 + 7,680 = 12,680$			
체육장	중	800	$3,000 + (2 \times 800) = 4,600$	5,200	6,900	기준면적 초과, 적정
	고	1,200	$3,600 + (2 \times 1,200) = 6,000$			
	소계		$4,600 + 6,000 = 10,600$			
	운동장	중·고	6,900			
	실내 체육시설	중	$1,200 \times 2 = 2,400$			
		고	$1,500 \times 2 = 3,000$			
		소계	$2,400 + 3,000 = 5,400$			
	계		$10,600 + 5,400 = 16,000$			
교사용 대 지	건폐율	30%	$9,600 \div 30\% = 32,000$	32,000		
교 지	면적	중·고	$32,000 + 5,200 = 37,200$	37,200	46,000 (토지면적)	기준면적 초과, 적정
	건폐율	30%	$9,600(1층바닥면적) \div 37,200$ (교지총면적) = <u>25.8%</u>			건폐율 범위내로 적정 (25.8%[30%])
	용적률	120%	$12,680(교사면적) \div 37,200$ (교지총면적) = <u>34.0%</u>			용적률 범위내로 적정 (34.0%[120%])

3 > 수익용기본재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차적 확보기준

- ① 학교 설립 인가 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50% 이상
- ②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 ③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공채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begin{array}{c} \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text{직전연도 학교회계} \\ \text{운영수익총액} \end{array} + \left(\frac{\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times 0.5}{\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times \begin{array}{c} \text{증설되는 학급 수 또는} \\ \text{증원되는 학생 수} \end{array} \right)$$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 보조금수입액 전부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 가. 1년 : 100분의 80
 - 나. 2년 : 100분의 60
 - 다. 3년 : 100분의 40
 - 라. 4년 : 100분의 20



가. 수익용기본재산이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
-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제2항
 - 토지
 - 건물
 -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 법인의 주식)
 - 국채·공채

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
-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부칙 제3조, 1997.9.23 제정)

구분	1997.9.22 이전 설치 법인	1997.9.23 이후 신설 법인																				
법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폐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확보 기준	○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 ※ 최저기준액 : 학급당금액×인가학급수 (기준령 시행규칙 별표1) <table border="1"><thead><tr><th>지역별 학교별</th><th>특별·광역시</th><th>시</th><th>기타지역</th></tr></thead><tbody><tr><td>초등학교</td><td>1,200,000원</td><td>1,100,000원</td><td>1,000,000원</td></tr><tr><td>중학교</td><td>1,300,000원</td><td>1,200,000원</td><td>1,100,000원</td></tr><tr><td>인문계고교</td><td>1,400,000원</td><td>1,300,000원</td><td>1,100,000원</td></tr><tr><td>실업계고교</td><td>2,000,000원</td><td>1,800,000원</td><td>1,600,000원</td></tr></tbody></table> → 5년 이내에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에 상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기준령 시행규칙 제5조)	지역별 학교별	특별·광역시	시	기타지역	초등학교	1,200,000원	1,100,000원	1,000,000원	중학교	1,300,000원	1,200,000원	1,100,000원	인문계고교	1,400,000원	1,300,000원	1,100,000원	실업계고교	2,000,000원	1,800,000원	1,600,000원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1 이상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계상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3에 따른 학교 세입 합계액에서 이전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수입을 뺀 금액
지역별 학교별	특별·광역시	시	기타지역																			
초등학교	1,200,000원	1,100,000원	1,000,000원																			
중학교	1,300,000원	1,200,000원	1,100,000원																			
인문계고교	1,400,000원	1,300,000원	1,100,000원																			
실업계고교	2,000,000원	1,800,000원	1,600,000원																			
수익률	규정 없음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수익금의 사용 (공제)	① 법인비 부담액 ② 교육시설비부담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감가상각비 ④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① 제세공과금 ②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③ 법정부담경비																				

※ '97.9.22.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적용
 ☞ 학교지원과-12845(2016. 7. 22.)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적용 방안」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2022.10.25.개정)**

부칙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 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각급학교나 설립 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참고〉

〈교육부 유권해석, 학교선진화과-3665. 2012.04.24〉

- 〈질의〉 학교법인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산출의 근거인 학교운영수익 총액을 당해 연도 학교세입 예산액으로 해야 하는지, 직전연도 학교세입 결산액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신〉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증가요인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될 때에는 직전년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당해 연도 변경요인을 가산토록 하고 있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직전년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규정한 것은 운영수익총액이 확정되어 있는 결산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
 - 처분허가 시점에 상황변화에 따른 추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운영수익은 세입 조치되어 있으나 동 세입조치 운영수익을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상 편성된 운영수익을 반영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수익용기본재산 발생 수익금 사용 기준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제비용 순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공제한 금액(수익의 범위)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도교육감이</u>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1. 제세공과금 2. <u>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u> 3. 법정부담경비



-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에 대한 공제비용의 세부범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

구 분	세부 내용 및 범위
1. 제세공과금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 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1) 운영비용 :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익비용 :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3. 법정부담경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운영비용, 수익비용)는 상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표 및 관할청 세부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라.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은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부채로 관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원금 보장형 금융상품)로 예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함 (그 이자는 법인회계로 세입조치)

4 ▶ 기본재산 가액 산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②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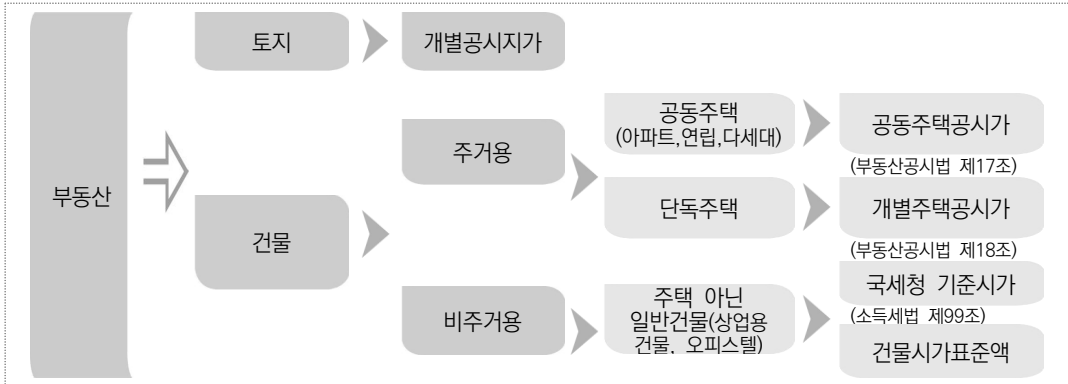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 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가.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 토지 및 건물: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③「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 학교법인이 정한 것
-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산정

- 부동산 평가액 산정 기준



- 토지평가액: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건물평가액
 - 교육용(학교건물): 건물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 수익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 구분
- 동산 평가액 산정 기준: 집합투자재산, 증권, 파생상품 등은 시가를 적용, 시가가 없을 경우 공정가액 적용 가능
 - ※ 시가와 공정가액의 의미(「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0조 제1항, 제2항)
 - 시가: 증권시장(해외 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 상품시장(해외 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 공정가액: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 거래가, 환율, 기준가, 채권 및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고려하여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

다. 기본재산 대장가격 산정방법

- 참고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0조
-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구입한 것: 구입가격
 - 교환한 것: 교환가격
 - 수용한 것: 보상금액
 - 그 밖의 것
 - ※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 ※ 입목죽: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 또는 액면금액



5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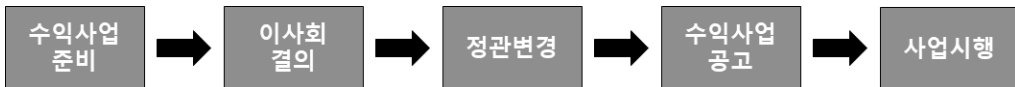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나. 수익사업 시행 절차



다. 수익사업 시행시 단계별 착안사항

구분	주요 검토사항
수익사업 준비	•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아닌지 등 검토
이사회 결의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
정관변경	•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이사정수의 2/3 찬성으로 정관변경 의결 및 관할청 인가
수익사업 공고	• 「사립학교법」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관리	• 「사립학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함
수익사업체 운영시 유의사항	• 수익금을 학교경영에 충당할 수 있는 합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경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은 반드시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함
수익사업 정지명령	• 「사립학교법」 제46조에 따라 학교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II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 > 재산관리의 기본원칙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① 매도 ② 증여 ③ 교환 또는 ④ 용도변경 하거나 ⑤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⑥ 의무의 부담이나 ⑦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⑧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
-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매도·증여·교환 등)하는 것을 방지하여 학교법인이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던 중 소송으로 인한 학교법인 재산의 손실에 대비하고자 소송 진행 상황을 관할청에서 파악하고자 함

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함
-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학교법인 책무성과 재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철설), 증축,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여야 함

다. 학교법인 재산 운영 관련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성·비수익성 토지매입 금지
- 법인 보유 재산 중 미등기 재산은 조속히 등기하여 재산관리에 철저



-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
- 교육용기본재산을 고유 목적대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부과 등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라. 허가·신고의 정의

- 허가: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특정한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형식적·절차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 등이 심사되어야만 하는 신고로서 수리가 통지되어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자기 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신고
-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신고'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학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며, 기본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환경 유지에 직접적인 사항으로 관할청의 행정 목적에 해당됨
 -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관할청의 실질적 요건(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기준 충족 여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검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법령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실체적(인적, 물적)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신고사항이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2 > 재산의 취득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채납·신축·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가. 부동산의 유상취득

-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이 용도에 적합한지, 취득 시 제한 사항(토지거래 허가지역, 농지)이 있는지 검토
 - ※ 매매계약 전에 관련 공부(公簿)들을 발급받아 소유권·면적·이용 제한 등 검토
- 「사립학교법」제16조에 따라 재산 취득 시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유권 외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등기

나. 취득 절차



다. 취득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구 분	검토사항	검토방법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재산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등기부 등본(갑구),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제한물권 설정 여부	당해 재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지적공부 등의 등재사실 여부	재산의 소재지, 면적, 수량 등은 정확한가?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선박, 중기, 입목 등의 등기사항
점유사실 여부	당해 재산을 권원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산의 점유실태 확인 등

※ 특히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 수여 범위 내에서 하는 대리행위인지 등 신중을 기하여 계약 체결

라. 기증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도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비영리법인은 기부재산으로 운용하되 설립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므로 아무런 검토 없이 기부받을 경우 기부 조건이 비영리법인 설립 정신과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임
-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건축·장학금·수익용건물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목적에 사용
 - ※ 기부자가 증여 시 학교법인에 의무부담을 전제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통해 기증하고자 할 경우, 당해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정재산이 현금·예금일 때는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



마. 주식의 취득

- 학교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 직접 운영하던 수익사업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행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여유 있는 운용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보유하는 경우
- 취득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인 주식과 보통재산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식의 관리 및 처분에는 이사회 의 승인 필요
- 공익법인 등이 국내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바.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4조)

- 재산을 취득하면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이 끝난 재산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등의 공부서류에 등재하여 비치
- 증자재산 목록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여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 ※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과세율이 다른 법인에 비하여 낮음

3 > 기본재산의 처분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재산의 처분절차



나.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재산으로써, 교육용기본 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잉여재산에 한하여 용도변경 및 처분(대체)가 가능함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강제경매 금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 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됨. **(대법원 제2부 72.4.14 결정 71마3.30)**

다.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

-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기준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저수익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분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각각의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함

라. 재산 처분 시 사전신고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5항)

-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의 사전신고에 따른 수리를 득하여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 손실보상금의 용도를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허가 필요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및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할 수 없음
-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마. 처분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 준수
 - ※ 재산처분은 이사장만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사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대법원 83.7.26. 83도819판결)
- 재산 처분 시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필수
- 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전에 재산 매매 공고 및 약정 행위 등 금지



바. 처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처분 가능 여부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인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으로 결정되어 있는지?
교지 등 기준면적 미달 여부	교육용기본재산 중 처분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의 교지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지?
확보기준 미달 여부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처분으로 확보기준에 미달하는지?

사. 업무 처리절차별 유의사항 및 제출자료

절 차	유의사항 및 제출자료
재산의 처분가능 여부 조사	- 기본재산 처분 시 검토사항(교육청과 사전 협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 여부 - 교지 등 기준 면적 미달 여부, 재산 확보기준 미달 여부
이사회 의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 필수 - 이사회 통지일과 회의일 사이 순수 통지기간 7일 이상 확보
처분(대체) 허가(신고)신청	- 제출서류(「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4항) - 처분재산명세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사항(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부 포함) - 처분사유서 -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사본(감정평가 산출내역 포함)
처분(대체) 허가(신고수리)	- 관할청 처분허가 - 처분허가 내역 및 허가 조건 이행 사항 확인
처분 (매매계약 등)	- 관할청 처분허가 기간 안에 처분 -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단, 처분·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 재산 취득 시 주의사항 -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 지적공부 등의 등재사실(소재지, 면적, 수량 등) 여부 - 제한물권 설정여부(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 권한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 대금 완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6조)
처분결과 보고	- 기본재산을 처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처분한 재산내역 및 용도별 사용내역, 대체재산 취득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즉시 보고 - 처분 또는 취득한 재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협약서 사본 제출) - 처분대금의 수입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대금의 지출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취득재산의 등기부등본 - 세금납부서 사본, 은행전표, 통장사본(해당하는 경우) ※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필수

※ [참고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 처분 신고 시 제출서류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4항)

- 처분재산명세서
- 처분사유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사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계획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

자. 처분 결과 보고

- 기본재산을 처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처분 허가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한 재산내역 및 용도별 사용내역, 대체재산 취득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수입·지출증빙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등)를 붙여 관할청에 즉시 보고
 - 매매계약서 사본



- 처분대금의 세입·세출내역
- 처분대금의 사용(은행보관) 내역: 은행통장사본 등
- 대체재산 취득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처분결과 보고 시점

- 처분기한(통상 1년) 내 처분 완료한 경우: 완료 즉시(처분기한 내)
-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한 종료 후 처분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
- 처분기한 내 처분은 하였으나 대체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처분결과와 향후 취득예정 시점만 우선 보고하고, 실제 대체재산 취득 후 그 사항을 즉시 보고
- 처분기한 내에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사항 이행 기간(잔금 지급일까지)이 장기간인 경우: 이미 수령한 계약금 사용내역과 계약체결 현황 등을 상세히 즉시 중간 보고
- 처분대금 집행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처분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집행 완료 후 최종 결과 보고 시행

차.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 교지
- 교사(강당 포함)
-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 실습 또는 연구시설
-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범위의 예외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의 경우
-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 이 경우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이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

4 >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가. 담보제공이란

-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물적 담보로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음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② 예외(담보가 가능한 경우)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산
 - 교육 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재산.
- 단,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의한 학교 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차입금 상환재원이 확실하며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학교운영 등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 학교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담보에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등록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음(다만, 질권 설정의 경우, 압류 없이 직접 집행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다. 담보제공 절차



라. 담보제공 허가신청

- 허가신청권자 : 학교법인 이사장
- 제출서류(「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제4항)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소재지 및 지번, 토지·건물 면적)
 - 피담보액
 - 담보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원본대조 확인필)



마. 담보제공 결과 제출

- 담보설정 계약서 사본
- 담보에 제공한 재산의 등기부 등본(예금인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담보를 제공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세입·세출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 학교법인의 차입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 ①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가. 학교법인이 차입을 할 수 있는 경우

-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있음

나. 차입의 구분

- 일시차입: 당해 연도 안에 상환하기 위하여 하는 차입
- 장기차입: 상환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

다. 차입을 할 수 있는 곳(차입처)

- 은행 등 금융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개인 등
- ※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이율이 금융기관 등과 비교하여 높지는 않는지 검토 후 차입

라. 차입절차



마. 차입허가신청

- 허가신청자: 학교법인 이사장
- 제출서류
 -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바. 차입 시 주의할 사항

- 차입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규칙 제8조제1항 본문에 “학교법인은 할 수 있다.”로 규정
- 차입금액의 상환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운영비 등으로 상환할 수 없으며 기부금 등 다른 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함
- 차입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교육용시설의 확보 등과 관련이 없는 운영비 충당 등 소모성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할 수 없음
-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액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44642 판결)

6 ▶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등

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 간의 용도변경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간의 용도변경 사유는 발생하지 않음
-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용도변경 및 처분할 수 없음

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교육부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관련 법령해석 변경**
 - 관련: 학교정책과-3219(2022.06.24.)「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허가 관련 법령해석 변경 사항 알림」
 -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법령을 근거로 2015년 종합감사 시 용도변경을 허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고, 이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및 용도변경을 허용해 오다가, 상반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에 활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해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함
- **교육부 법령해석 변경 진행 경과**
 - 2018. 4. 12.: 대법원 선고(2018두31368), 재산처분시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고려불요
 - 2019. 6. 10.: 교육용기본재산 처분대금 회계 처리 질의(학교지원과→교육부)
 - 2019. 7. 26.: 회계처리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교육부→학교지원과)
 - ☞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함”(감사처분과 동일)
 - 2020. 4. 3.: 법령해석의 요청(학교지원과→법제처)
 - 2020. 5. 21.: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처리 결과 “반려” 알림(법제처→학교지원과)
 - ☞ “어떤 회계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교육부감사처분 근거규정 부재)
 - 2021. 4. 15. : 대법원 선고(2021두30730), 교비회계편입의무는 비례 및 평등원칙위반
 - 2022. 6. 24. : “교육부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법령해석 변경사항 알림”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 요지

① **교육용재산→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 (판결 취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타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29조를 근거로 교육용 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

② 교육용→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해당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세입**하라는 조건(부관)은 위법

다.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교사 신축, 실습지 운영 등)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용도변경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는 지 검토 필요

라. 용도변경 절차



- 허가신청자: 학교법인 이사장
- 제출서류
 - 용도변경 사유서
 - 용도변경대상 재산명세서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교장 확인(의견서): 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7 >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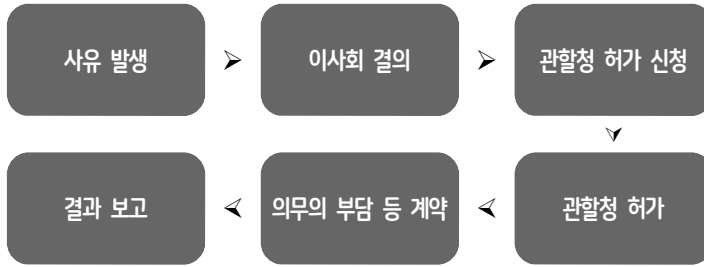
가. 의무의 부담이란

- 의무의 부담이란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행위, 기타 의무의 부담행위 등을 말함
 - 금전의 차용행위는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부담에 해당됨

나. 권리의 포기란

- 권리의 포기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 등이 해당됨
 - 권리포기 역시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절차



라. 신청서류

-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재산 내역
-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사유서
- 이사회 회의록 사본

8 > 재산의 교환 및 공유·분할

가. 재산의 교환이란

-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596조)
-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동일하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
- 교환재산의 차액으로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 제597조)

나. 교환 신청 서류

- 교환 허가신청자: 학교법인 이사장
- 신청 서류
 - 교환 쌍방 재산내역
 -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감정평가서 등)
 - 교환 사유서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 기본재산의 교환 관련 검토사항

- 교환에 따른 취득재산의 사용목적과 계획이 명확하여야 함
 - 취득재산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계획을 통해 교육목적 활용,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증대 등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무성 제고
- 기본재산의 교환은 유사한 동종의 유형 고정자산을 적절한 조건으로 교환
 - 토지 면적이나 감정평가액 등 조건이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
 - 교환대상자가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지 확인
 - 교환취득 자산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설정 해제 등 조치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승계 여부 확인
- 교환 취득재산 내 지장물 등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평가 포함) 여부 확인
- 정산해야 할 교환차액이 있을 경우 정산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
- 처분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설정 후 양도

9 > 재산의 공유 및 공유물 분할

-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 공유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매수하여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형태
- 공유물 분할은 학교법인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지분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가. 공유물 분할 방법

-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분할 청구
-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 그 대금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배상의 방법도 이용
- 재판에 따른 분할: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에 따라 분할

나. 공유물 분할의 성격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산의 처분에 해당
- 공유물 분할시 관할청 허가 사항 여부

-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될 경우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분할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인근의 지가수준 차이 등에 따라 분할되기 전과 분할된 후의 토지의 실제적 재산가치가 다를 수 있고,
- 이 경우, 공유하였던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학교법인이 분할 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다양한 권리를 학교법인이 일정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분할된 토지의 면적, 감정평가액이 분할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 ※ 공유물 분할은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대법원 등기과의 유권해석(등기3402-905, 2000.12.12.)에 따라 공유물 분할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임
 - ※ 공유물 분할 신청 시 해당 토지의 실질적 재산 가치를 판단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유물 분할 허가 신청

- 신청권자: 학교법인 이사장
- 신청 서류
 - 공유물 분할대상 재산목록
 - 공유물 분할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판에 따른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
 - 공유물 분할 사유서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라. 공유물 분할 결과 제출

- 공유물 분할 후 재산목록
- 토지(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 > 재산의 시효취득

가. 시효취득이란

-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며,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소유권의 취득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 「민법」에서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동산 취득시효와 부동산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시효는 등기 여부 및 점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

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즉 교사, 운동장, 실습지, 교육연구시설 등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재산목록상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1977.9.28 선고 77다106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은 시효취득 도래자에게 귀속되므로 관할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78.7.11. 선고 78다208 판결)

11 > 재산의 멸실

가. 재산의 멸실이란

- 멸실이란 물건이나 건물이 재난, 화재 등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 또는 소실된 상태를 말함
- 멸실은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책임이 수반되는 훼손과는 다르나, 멸실이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기본재산이 재산으로서 그 효용가치가 없어졌을 때에는 관할청에 기본재산 멸실 보고 후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판단하고, 처분 등 관할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재산대장 정리

나. 재산 멸실 보고 서류

- 멸실된 재산의 표시(목록)
- 멸실 사유



- 멸실 재산 가액
- 책임의 소재(해당 있을 경우 작성)
- 향후 조치 계획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 재산 멸실 사례

- 재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등의 파손 또는 소실
- 노후로 인하여 자연도괴 상태에 도달하였으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 독립된 별동의 노후 교실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개축하지 않고 본관 등에 증설할 경우
 - ※ 기존교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개축으로 인한 멸실인 경우, 그 사유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자료 첨부, 개축 부분 증자보고(증감현황을 명확히 기재)로 같음

12 > 기본재산의 소송 신고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⑥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가. 기본재산의 소송이란

-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적 다툼의 발생으로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

나. 소송의 개시

- 학교법인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원고’의 경우) 또는 법원에서 접수(‘피고’의 경우) 등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가 개시된 날 또는 절차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고, 피고, 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사건의 표시, 관할 법원 등 관할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 소송의 완결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 된 후 30일 내에 재판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Ⅲ

관련 서식



서식 1

학교법인 기본재산 증자 보고

<기본재산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자보고 생략>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증자 보고

우리 법인 기본재산을 매수(증여, 교환 등)로 인하여 취득하였기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증자보고 합니다.

- 불임 1. 기본재산 증자보고서 1부.
2.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 1부.
[부동산인 경우 관련공부(등본, 대장), 정기예금인 경우 예금통장 사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교육용, 수익용)기본재산 증자보고서

I. 일반 현황

(단위: 학급,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중				
				△△고				

II. 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구분		증자 전		증자 후		비교증감		비 고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토 지	대 지							
	임 야							
	전·답							
	기 타							
	소 계							
건 물								
현 금								
채권 등								
합 계								

III. 증자재산 목록

1. 토지 및 건물

(단위: m²,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지적/면적	소유 현황	재산가액	비고
토지							
건물							
계							

※ “소유 현황” 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재하되,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함께 기재

2. 현금

(단위: 원)

구분	예금기관	계좌번호	구좌명	증자액	비고

3. 주식, 채권 등

(단위: 원)

구분	발행기관	발행번호	보유수량	평가금액	증자액	비고

※ “구분”에는 주식, 채권(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기재

Ⅳ. 취득재원

기 관 명	부담금액(천원)	비 고(사업명)
□□□□시청	200,000	00사업
○○○○○○교육청	400,000	2020학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법인 00학원	100,000	법인부담금, 차입 등
합 계	700,000	

※ 교육용기본재산 증자보고 시 반드시 첨부

Ⅴ. 증자 사유

-
-

서식 2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처분 신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Ⅲ
●●
관
련
서
식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신고서) 1부.
 2. 처분사유서 및 처분대금 활용계획서 1부.
 3. 감정평가서 2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5. 관련 공부(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6. 기타 증빙서류 또는 보완서류(보완요구 시) 1부. 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사본 첨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신고서)

I. 일반 현황

1. 학교법인 및 유지·경영학교 현황

(단위: 학급,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 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중				학생정원
				△△고				

2.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및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기준액(A)	보유액		과부족 (C=B-A)	비고
	처분 전	처분 후(B)		
				※ 장기차입액 기재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구분	기본정보	평가액(원)	비고
토지	(지번, 지목, 면적 등)		(평가단가)
건물	(지번, 용도, 면적 등)		(연간 수익금)
정기예금	금융기관, 예치기간		(수익률)
주식, 채권	발행기관, 보유수량		(배당금)
수익사업체			
계			

※ 기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규정 제13조 제1항)

2. 교육용기본재산 기준면적 및 보유 현황

(단위: m²)

기준면적(A)	보유면적		과부족 (C=B-A)	비고
	처분 전	처분 후(B)		
				※ 교지=교사+체육장

※ 기준면적 : 「고등학교이하 설립·운영 규정」 상 교지 기준면적



II. 재산처분 신청 사항

1. 토지 및 건물

(단위: m²,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지적/면적	소유 현황	감정가액	비고
토지							
건물							
계							

※ “구분”은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하고, “소유 현황”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재하되,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기재함.

2. 현금

(단위: 원)

구분	예금기관	계좌번호	구좌명	예금액	처분액	잔액	비고

3. 주식, 채권 등

(단위: 원)

구분	발행기관	발행번호	보유수량	평가금액	처분액	잔액	비고

※ “구분”에는 주식, 채권(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기재

III. 처분사유 및 처분대금 활용계획

1. 처분사유(구체적으로)

- ○

2. 처분대금 활용계획(구체적으로)

- ○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및 처분허가 신청

1. 관련: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우리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활용하고자 불임과 같이 용도변경 및 처분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3. 기타 서류(관련공부, 용도변경 사유서 등)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서

I. 일반 현황

1. 법인현황 및 유지·경영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학생정원

2. 기본재산 보유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종류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비 고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현 금					
채권 등					
합 계					

II. 기본재산 확보기준 충족 여부

1. 교육용 기본재산

(단위: m², 천원)

기준면적(A)		보유면적		과부족 (C=B-A)	적정여부
		변경 전	변경 후(B)		
교사					
교지					

2. 수익용 기본재산

(단위: 천원)

기준액(A)	보유액		과부족 (C=B-A)	비고
	변경 전	변경 후(B)		

※ 기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규정 제13조 제1항)

Ⅲ. 용도변경 및 처분 신청 사항

1. 용도변경

(단위: 천원,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용도변경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 “구분”은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

2. 용도변경 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단위: 천원, m²)

구분	소재지 및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감정평가 평균액	처분 예정가액	비고
토지							
건물							

Ⅳ. 용도변경 사유 및 처분대금 활용계획

1.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 ☐
☐

2. 처분대금 활용계획(구체적으로)

- ☐
☐



[기본재산 교환]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교환 허가 신청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불입과 같이 교환 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입 1. 기본재산 교환 허가 신청서 1부.
 2. 동일 평가시점의 감정평가서 1부.
 3. 교환계약서 또는 동의서 사본 1부.
 4. 동의자(계약서) 인감증명, 학교장 의견서(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각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각 1부.
 6. 지적현황도 및 위치도(취득, 처분재산의 표시) 각 1부.
 7. 교환 사유서 1부.
 8.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기본재산 교환 허가 신청서

I. 일반 현황

(단위: 학급,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중				
				△△고				

II. 재산보유 현황(교환 전 · 후)

(단위: m², 천원)

구 분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교 사			교 지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	기준액	보유액	확보(%)
교환 전									
교환 후									

III. 기본재산 증감 현황(교환 전 · 후)

(단위: m², 천원)

재산구분		교환 전		교환 후		비교증감		비고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수량 또는 면적	재산가액	
토 지	대 지							
	임 야							
	전·답							
	기 타							
	소 계							
건 물								
현 금								
채권 등								
합 계								



Ⅳ. 교환재산의 표시

1. 교환처분재산

(단위: m²,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용도	면적(m ²)	재산가액	감정가액		교환 예정액
						A기관	B기관	
토지								
건물								
계								

2. 교환취득재산

(단위: m²,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용도	면적(m ²)	재산가액	감정가액		교환 예정액
						A기관	B기관	
토지								
건물								
계								

Ⅴ. 교환대상자의 주소, 성명

○

Ⅵ. 교환사유(구체적으로)

○

Ⅶ. 교환차액 처리 방법

○

서식 3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

1. 관련: □□□□과-○○(0000.00.00)
2.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토지, 건물 등) 1부.
 3. 처분 및 취득한 부동산 공부(등본, 대장) 1부.
 4. 처분대금의 세입·세출내역(통장 및 해당 증빙서류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

□ 학교법인 ○○학원

(금액단위: 원)

III
...
관련서식

허 가 내 용		처 분 결 과				
문서번호 (일자)	□□□□과-00000 (0000. 00. 00.)	실제 처분일자 (등기이전일)	2020. 00. 00.			
처분구분	매도, 용도변경, 교환 등	실제 처분재산	· 토지: 00필지 / 0,000㎡ · 건물: 0,000㎡ · 현금(예금): 원			
처분 허가재산	· 토지: 00필지 / 0,000㎡ · 건물: 0,000㎡ · 현금(예금): 원	처분하지 못한 재산	· 토지: 00필지 / 0,000㎡ · 건물: 0,000㎡ · 현금(예금): 원			
처분허가 (평가)금액	금100,000,000원	실제 처분금액	금000,0000,000원			
처분금용도	현금재산 운영, 건물취득 등	처분금 사용용도	· 현금예치: 000,000천원 · 건물취득: 0,000㎡			
허가기한	1년(0000.00.00.까지)	향후 처분계획 (처분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				
허가조건						
처분재산 목록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처분액	비고
토지						
건물						
현금						
.						
.						
합계						

□ 처분대금 예치 결과

예치은행	예금종류	예치금액(원)	예치기간		연이율 (%)	비고
			부터	까지		
합	계					

□ 처분대금 집행 내역

연번	금액(원)	세부 사용 내역	지급처	비고
합계				

서식 4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불입과 같이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서 1부.
2. 담보제공 재산목록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서

□ 학교법인 ○○학원

(금액단위: 원)

구 분	내 용	비 고
1. 차 입 액	금 원정(₩000,000,000)	
2. 차 입 처	○○은행	
3. 차입금의 용도	00학교 00증축공사 부족액 충당	
4. 차 입 기 간	0년 거치, 0년 상환(2000년 상환 완료)	
5. 차 입 조 건	연 대출금리(%) 정도	
6. 상 환 재 원	000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환재원 명시	붙임: 최근 3년간 임대료 수 입 세부 내역
7. 담보제공 내역		
가. 피담보액	금 원정(₩000,000,000)	
나. 담 보 처	○○은행	
다. 담보제공 재산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 평가액 00억원	붙임: 관련 공부, 감정평가 서 등
8. 담보제공 및 차입사유	00학교 00증축공사 부족액	붙임: 사업계획서, 건축허가 서, 공사계약서 등

2000. 00. 00.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담보제공 재산목록

(단위: m²,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설정권리	기간	설정금액	등기 권리자	비고
토지	00시 00구 000길	00-0	대지	0,000.00	근저당	차입일로부터 터 00년	000,000,000	000은행	
건물	〃	〃	상가	0,000.00					

※ 구분 :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

차입금 상환계획서

(단위: 원)

연도별 (상환 횟수)	상환금액			상환재원	비고
	원금	이자	계		

서식 5 • 담보제공 및 차입 결과(상환) 보고서

[차입 결과 보고]

Ⅲ
●●
관련
서식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 결과 보고

1. 관련: □□□□과-000(0000.00.00)
2.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에 대한 차입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차입기관	차입금액	차입기간 및 차입조건	차입목적	상환재원	차입일	비고
000은행	000,000,000원	2000.00.00.~2000.00.00.	○○학교 신축공사 대금	수익사업체 수익금액	2000.00.00.	

- 붙임 1. 담보제공 및 차입과 관련된 서류(근저당 설정, 차입 계약서 등) 1부.
 2. (차입금)수입결의서 사본 1부.
 3. (차입금 사용)지출결의서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차입금 상환]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금 상환 보고

1. 관련: □□□□과-0000(0000.00.00)

2.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에 대한 상환금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결과보고 1부.
2. 지출결의서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담보해지 증빙 서류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000 (0000.00.00.) 접수 @D-@N ()

우 123-456 ○○○○시 ○○구 / http://www.

전화 000)123-5678 /전송 000)123-5678 / @ / 공개



담보제공 및 차입금 상환 결과 보고서

□ 학교법인 ○○학원

허 가 사 항						
차입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문서번호(일자)	학교지원과-00000(0000. 00. 00.)					
허가금액	금00,000,000원					
차입금액	금00,000,000원					
차 입 처	000은행					
차입용도	000학교 신축공사 대금					
상환기간	0000. 00. 00.까지(5년 거치, 5년 상환)					
상환재원	수익사업체 수익금액					
담보내역	서울시 00구 00동 00건물 201					
기 타	허가금액과 차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 기재					
차 입 금 상 환 결 과						
(단위: 천원)						
연번	상환일자	원금	이자	계	상환재원	미상환액

학교법인 ○○학원

수신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소송 진행 상황 신고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불임과 같이 소송 진행 상황을 신고합니다.

- 불임 1. 기본재산 소송 개시(종결) 신고서 1부.
2. 소장(소송 개시인 경우) 또는 판결문(소송 종결인 경우)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기안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학원- (. .) 접수 ()

우 12345 경기도 ○○구 ○○길 ○○ /

전화 031-123-4567 전송 031-123-4568 / 1234@ / 비공개



기본재산 소송 개시 신고서

1.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2. 소송 현황

원고	피고	접수일자	원고소가	대리인 (성명 및 주소)	관할법원

3.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비고

기본재산 소송 종결 신고서

1.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2. 소송 현황

원고	피고	접수일자	원고소가	대리인 (성명 및 주소)	관할법원

3.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비고

4. 재판 결과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 결과	향후 추진 계획	비고



IV

판례

IV
판례

판례 1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합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 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거래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을 위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 1.18. 99헌바63 전원재판부)

판례 2

관사에서 집무를 보았다면 취득세 등 과세는 부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판례 3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매도에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

- 강제경매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학교법인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외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3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매도에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이해관계자의 사익추구행위나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경매 혹은 매수하려는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 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한정되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신고로 족한 예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강제경매의 경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등에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공고화에 대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고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법익 형량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 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2.23.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판례 4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정

-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애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례 5

후생복지시설의 위탁 및 임대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수원시 ○○구 ○○동 300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 중 학생 및 교수식당, 매점, 서점, 사진관, 안경점, 우체국, 은행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랜드 주식회사 등 20여 개 업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된 경위, 쟁점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판례 6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

-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 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례 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판결)

판례 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교육용재산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다626판결)

판례 9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준공 시부터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건물의 등기부의 건물 표시란에도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관할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강당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지층을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강당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교육에 매일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이를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판결)

판례 10 학교장 명의의 예금은 기본재산 아니다

-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판결)

판례 11 「사립학교법」제29조는 단속규정

- 「사립학교법」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판결)

판례 12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관할청의 사후 허가의 효력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판결)

판례 13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금원 차용행위

-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판례 14 위조된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하여 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효력

-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그 회의록을 위조하여 동 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감독관청의 허가 당시 이사회 의결이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1.30. 선고 77다1586판결)

판례 15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진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판결)



판례 16

임원 선임을 대가로 한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청탁'의 배임수재죄 해당 여부

-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판결)

판례 17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행위'의 의미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이 사건 수표보증책임에 관해 피고법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음 이 없었음을 알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제28조가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감독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사경제적 활동은 전반적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 학교법인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정한 교육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한 관리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기하려는 학교법인 제도의 존재의의를 부정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법인과 이해관계인의 거래행위 대부분을 법의 보호권 밖으로 추방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위 법규 소정의 의무는 마땅히 기본재산 자체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피고법인의 이 사건 수표 보증행위가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자체에 관한 의무 부담행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은 수표발행자인 피고 ○○○과 합동하여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제28조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의무부담행위를 기본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57판결)

판례 18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행위'의 의미(차입은 의무부담행위)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 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 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 편성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 학교법인의 정관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사립학교법」제28조의 적용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이 「사립학교법」제31조에 의하여 감독청에 제출되었으나 감독청이 그 예산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허가권과 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사립학교법」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산 내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거나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판결)

판례 19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판결)

판례 20

수익사업체 경영의 통상경비에 관련된 의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 피고법인이 이 사건 수표보증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피고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와 ○○○○ 맥주홀의 대표자인 피고 □□□이 위 피고법인의 맥주홀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경영자금을 차용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위 맥주홀의 옷보관소를 임차경영하면서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어 피고 □□□은 이 사건 수표 발행당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와 그 이자 합계 1,26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채무가 이 사건 수표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로서 피고 □□□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피고법인 명의로 이 사건 수표에 보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고, 한편 「사립학교법」제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 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감독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이 사건 수표보증과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이미 피고법인의 수익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 새삼스레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57판결)

판례 21

학교법인의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판결)

판례 22

관할청 허가 없이 토지 매도 후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 가능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 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 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판결)



판례 23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학교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히무효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히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효력유무는 현재 당해 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한다.
-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실습지 등 교육시설은 그 공익목적의 용도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고 도시계획상 다른 시설 결정의 목적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겠으나,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한층 중요한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나 당연히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법여부는 현재 그 학교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공익성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하고, 또 가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것이어서 언제나 당연히무효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판결)

판례 24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도 시효취득 가능, 관할청 허가 불요

-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해를 입을 것을 감득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할청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208판결)

판례 25

학교법인이 차입허가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도 가능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기간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기채하도록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면 허가기간 및 기채한도액 내에서는 직접 채무자가 되지 않고 타인의 채무에 대한 기존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채무인수를 하였다 하여도 허가범위에 들어간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45판결)

판례 26

교육용기본재산에 도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비교형량 위법 없다

-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인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를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 으로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한 경우 비록 학교법인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그 대상 토지를 장차 신축할 대학건물의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를 설치할 경우 교육용지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 그 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 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 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공공이 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4.27. 선고 89누4093 판결)

판례 27

배임행위의 성립 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때

-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당연히 효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과 대표이사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예상 전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함으로써 학교법인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행위의 성립 시기는 토지의 매각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유효하 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때라 할 것이고, 감독청의 허 가를 받기 이전에 학교법인의 이사를 전원이 매수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여 매수인이 그 요청을 수 락하였거나, 그 후 매수인과 토지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판결)

판례 28

이사회 결의나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아도 배임죄 성립

- 배임죄 구성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학 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 즉 시 그 매매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실하게 예측되는 전매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로서 본인인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의 저가매도에 관하여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감독청의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판결)



판례 29

「사립학교법」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과 제28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채무자인 재향고인이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라면 그 예금채권은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이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재향고인 주장의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0. 2000마7801결정)

판례 30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

-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판례 31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판결)

판례 32

사립학교 경영자가 출연한 개인 명의 부동산 담보제공 불가

-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바, 여기서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판결)

판례 33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가능, 추심명령 불가

-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30. 2002마2209 결정)

판례 34

유치원의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또는 담보제공약정 유효

-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제공약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50690 판결)

판례 35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기본재산 처분신청 불가

-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판례 36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집행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50690 판결)

판례 37

유치원 건물주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닐 경우 근저당권 설정 가능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에 등기부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교지, 교사 등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7호) 제5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 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상 강행법규를 등기사무 처리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공부상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소유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다5892 판결)

판례 38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 필요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3329 판결)



판례 39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등이 없었다면 학교법인은 지급의무 없다

- 학교법인이 수표나 어음의 발행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8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수표나 어음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학교법인은 그 소지인에게 수표금 및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건축업자들에게, 학교 이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전할 학교의 신축공사 내지 이전 후 학교 등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56억 650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학원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이 ○○학원 명의로 돈을 차용하고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학원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학교법인의 채무부담행위로서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학원은 그 수표금이나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판례 40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및 학교법인이 의무부담행위를 추진한 경우,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등

-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의무부담행위를 추진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판례 41

관할청의 허가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는 무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로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중 2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아 보관하던 것이어서 이를 반환한다 하여 피고의 재산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은, 결국 피고 법인의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로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5986 판결)



판례 42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 「사립학교법」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 ○○○은 원고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바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피고 법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어 그의 변제를 받는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참조), 원심 실시와 같이 이 사건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원고가 여전히 ○○○에 대하여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그의 변제를 받는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불법행위자인 피고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5986 판결)

판례 43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학교법인이 매도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 필요

-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피고가 ○○○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피고와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52400 판결)

판례 44

「사립학교법」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 취지

-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판례 4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에는 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매도가격 문제는 학교법인의 재량에 일임된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 중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은 기본재산의 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일단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매도가격 문제는 처분하는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일임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철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 측에서 이를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 되었는데 그 후 학교법인측은 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잔대금의 회수가 늦어진데다가 당시 은행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으로 피고인은 그 수습을 위하여 재단이사회를 열어 건물철거문제를 매수인인 공소 외 2에게 일임하고 그 비용에 상당한 액수인 금 100만 원을 매매잔대금 중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결의하여 동 결의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액케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학교가 부담한 건물철거의무를 공소 외 2에게 부담시키고 동 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으로 매매잔대금 중에서 철거비용조로 금 100만원을 공제한 행위는 사실상 의무의 면제는 될지언정 단순한 권리의 포기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조처에는 필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는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64. 3월 초순경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동 산6 소재 토지 11,509평을 공소 외 2에게 평당 금 1,700원씩 결가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당초 위 법인측 대표로 나선 공소 외 1이 동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철거비용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그 수수료로 위 법인으로 부터 금 489,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매수인인 공소 외 2가 철거비용을 학교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들고 나섬으로 만약 매매가 해제되면 공소 외 1이 동 학교측으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소개료 금 489,000원을 다시 학교에 돌려 줘야 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 외 1의 딱한 입장을 모면토록 하기 위하여 공소 외 2로부터 수령한 잔대금 중에서 금 100만원을 건물 철거 비용명목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 포기"로서 논할 수 없다.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420 판결)

판례 46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 사인명의 그대로 둔 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부

-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판례 47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건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판례 48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건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판례 49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들의 주된 취지는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 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함으로써 위 재산이 산 일(산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위 법 제28조 제2항,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판례 50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자·교사·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자·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72.4.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판례 51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자·교사·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자·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72.4.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판례 52 양수금 청구 패소 판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거부 처분

- 교사 복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학교법인에서 기 폐교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건
- 학교법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관할청인 피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교지, 교사로 사용한 정의여자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결의 및 주주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기본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기본재산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판례 53 양수금 청구 패소 판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거부 처분

- 교사 복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학교법인에서 기 폐교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건
- 학교법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관할청인 피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교지, 교사로 사용한 정의여자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결의 및 주주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기본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기본재산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판례 54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강제경매 금지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됨.

(대법원 제2부 1972.4.14. 결정 71마330)

판례 55 학교기본재산의 취득시효와 「사립학교법」 제28조

- 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 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060 판결)

판례 56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식당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부과 부담

-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학술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점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함
-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운영실태·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학생과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경우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님
-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에 고려해 실제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대법원 2006.1.13. 2004두9265 판결)

V

질의회신 및 감사사례



질의회신 1

교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학교법인에서 교직원용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이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은 동령 제4조제2항에 의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법인의 수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 법인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하는 바,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무상으로)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국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비추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무25000-88, 1985. 6. 10. 대:총청남도교육감)

질의회신 2

재단법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타인과 공유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1996.2.2. 등기3402-62)



질의회신 3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제1항에 근거한 신고 사항인 경우 처분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시기는 처분 전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 단서 조항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고되어야 함.

(재정 81423-719, 1998.12. 7. 대 : 학교법인경동대학교이사장)

질의회신 4

교육용 건물 내에 복지 목적의 영업용 시설의 유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육용기본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단, 임대 등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

(대재 81423-55, 1976. 1.24. 대 :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이사장)

질의회신 5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 시기 [11-0719, 2011.12.22, 경기도교육청]
질 의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인지?

회 신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6

「사립학교법」제5조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10-0052, 2010.4.9, 교육과학기술부]
질 의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사립학교법」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회신 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산출 시 적용 법령) [13-0262, 2013.7.23, 교육부]

질 의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설립운영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경영재산기준령”이라 함) 제3조 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 제1항인지?

회 신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 기준령 제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8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학교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없음 [09-0167, 2009.7.3, 교육과학기술부]

질 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에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9

「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 대상 인지 여부) [12-0453, 2012.09.10, 교육과학기술부]

질 의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회 신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10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시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는 첨부을 요하지 아니한다.

(1985. 1.13 등기 제92호 부산지방법원장 대법원행정처장 회신)

질의회신 11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질의회신 [법무부]
질 의

- 가. 학교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나. 동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폐교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및 기타 교육에 직접사용 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처분함으로써 학교 교육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여 정상적인 교육의 실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비록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그 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하겠으나 학교법인이 파산을 하고 나아가 학교자체가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를 교육용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질의회신 12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등 관련)

[교육부, 13-0444, 2013.11.4.]

질 의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먼저 확보해야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위치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학교 이전을 어렵게 한다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또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이전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종립과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학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학교의 교지 등 재산의 명도일은 위치변경인가일 후로 한다는 점, 학교 재산의 매도허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위치변경계획의 구체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1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등 관련) [교육부, 16-0328, 2016.10.6.]

질 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 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해당 규정의 문언 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도는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인 반면, 담보제공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보증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처분재산명세서(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제2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제1호), 피담보액(제2호), 담보처(제3호) 및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은 그 허가에 관하여 관할청이 심사하는 사항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14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12-0364, 2012.9.10.]

질 의

1997. 10. 11. 제정·시행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10조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고(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부칙 제4조 제2항), 이후 2001. 11. 20.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하는지?

회 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비용 공제의 기준으로서 모든 학교법인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으므로,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 후에도 종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학교의 설립시기에 따라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7. 10. 11.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학교설립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15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371, 2016.10.12.]

질의

「사립학교법」제2조 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회신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유치원이 증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유지되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증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16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2019.2.27.]

질의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회신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주석: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53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질의회신 17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신탁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8-0534, 2019.2.27.]

질 의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신탁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사립학교법」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시 신탁계약의 내용이 「사립학교법」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질의의 경우는 수탁자로 하여금 토지의 합병·분할·교환·기부채납 및 건물 부속토지의 지분을 자유로이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재 81423-49, 1996.8.20. 대:서울시 ○○구 이○○)

질의회신 18

교육시설용 부동산이 학교 경영주(또는 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동 부동산의 담보제공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질 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이 학교 경영주(또는 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동 부동산의 담보제공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의 취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교육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가 금지되고(대법원 1972.4.27., 자, 72마328, 결정), 학교법인에 신탁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98 판결)라고 한 판례의 취지를 참작하건대, 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으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무 61010-742, 1996.11.1. 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감사사례 1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기본 목적 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사립학교법」제6조(사업)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익금을 학교경영에 총당할 수 있는 합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경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은 반드시 학교경영에 총당하여야 함. 또한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보증 상황에 총당해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법인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인 서울시 ○○구 ○○동 ○○○-○에 대해 2017. 11. 1.부터 ○○○ 외 21개 업체와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유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이 감소되는데도, 관할청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학원 설치·경영학교인 ○○고 외 2개교 법정부담금으로 총 800,000천원을 임의 사용함



감사사례 2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기본 목적 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 하여야 하며, 수익금을 학교경영에 충당할 수 있는 합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경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은 반드시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함. 또한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보증 상황에 충당해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법인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인 인천시 중구 ○동 ○○-○○ 외 6필지 잡종지 22,994.9㎡, 위 토지상의 건물(가설창고 2동 2,392.7㎡)에 대해 2014. 1. 1부터 (주)◆◆◆◆ 외 1개 업체와 토지 및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유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나,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이 감소되는데도, 관할청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법인세 301,098천원 및 법정부담금 200,078천원 등 총 501,176천원을 임의 사용함

감사사례 3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임대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액 72,000천원을 2011. ○○. 완납한 이후, 2011~2013년도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고, 7개월 13일부터 최장 21개월 23일까지 지연 납부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징수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감사사례 4 법인소유 수익용기본재산 무단 사용 방치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따라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그 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의 규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경기도에 날짜 미상의 날에 성명 불상자가 무허가 '돼지 축사'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음

감사사례 6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관리인에 관한 사항

- 업무기준: 학교법인에서 회계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학기관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의거하여,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6년 ○월 ○○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과 시설관리 인원 1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2016년 ○월부터 2018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위 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여 지급하였음
- 또한,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보수를 받는 관리인(관리책임자 및 관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사업에 대한 각종 임대계약, 시설관리(점검 및 수리), 예산 및 집행 등 주요 업무를 '법인사무국 겸직직원인 ○○여자상업고등학교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게 하였음

감사사례 5 법인소유 기본재산 수익금 회계 처리 태만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임대료와 일부 건물 수입(아파트 임대보증금, 경기도)을 법인회계 통장에 직접 세입 징수하고 매년 예산과 결산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지 아니하고, 2010년부터 계속 토지 임대료는 부외계좌에, 건물 임대료 중 '경기도'와 '서울 ○○○구 지층, 4층', '서울 ○○○구 401호, 403호 건물'의 임대료는 2012년부터 2014년 2월말까지 또 다른 부외계좌에 입금 하고서는 2010년부터 계속하여 총 130회에 걸쳐 길게는 최고 370일이나 지연시켜 세입 조치하였음

감사사례 7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등 교비회계 납부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
- 그런데도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0,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함

감사사례 8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 허가사항 외 부당 집행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항에 따르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법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 총 580억원 중 58억원을 2회에 걸쳐 매수인 (주)○○○○로부터 수령하여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한 후, 2014. ○.부터 2016. ○. 감사일 현재까지 당초 법인운영비 사용 허가금액 보다 약 3억여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대금 중 총 400,220,097원을 교육청의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부당 사용하였음



감사사례 9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부실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10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법정부담금은 부담금 소요액 100% 전출 법인에 한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의 40%까지 법인운영비로 인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전액 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는 수익사업체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2015. ○○. ○○.자로 이사 ○○○을 ○타워 관리자로 의결한 것 외에는 중요한 사항(보수, 복무 등)을 심의(의결)한 내용이 없음. 그로 인해 ○○○와 ○○○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총 293,551천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특히 ○○○의 경우 2015년에는 월 450만원, 2016년 9월부터 600만원, 2017년 4월부터는 800만원으로 임의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
- 이와 같이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하지 못한 사이 수익사업체는 그 운영을 방만하게 하였고, 그 결과 2017년에 △28,832천원, 2018년에는 △53,268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상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함
- 또한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고가의 차량을 수익사업회계 예산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2015년부터 리스료로 총 155,992천원, 주유비 등으로 총 13,410천원을 사용하는 등 169,402천원을 집행하였는데, 특히 학교장이 출퇴근 및 사용하거나 설립자용 명목으로 방치하면서 리스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128,325,371원이며, 그 목적을 살펴봐도 학교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음

감사사례 10 개인 차입금(가수금) 미허가 및 상환처리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에서 그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장기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의 규정에 따라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상환방법,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청의 허가 없이 2012. ○월부터 2017. ○월까지 수익사업체회계에서 총 41회에 걸쳐 개인 차입금(가수금)을 부적정하게 회계처리(사용)하였음

감사사례 11 학교기본재산 사용 협약체결 업무처리 소홀

- 업무기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재산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기본재산(학교용 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여야 함.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따르면, 법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나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장이 되며, 학교법인에 의무부담을 전제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당해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기부채반) 제2항을 준용하여 기부재산의 가격을 명확하게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를 기부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 건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학교에 비치·보관하여야 함

감사사례 11 학교기본재산 사용 협약체결 업무처리 소홀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관, 식당 증축, ○○주년 기념관 공사비 명목으로 3,156,899,300원을 기부 받았고, ○○고등학교장은 협약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해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함.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 운용 책임자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학교용 재산을 장기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기본 재산 운용 원칙상 적절한 행위는 아니나,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인 학교건물을 장기간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금 또는 공사 시행을 받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해 주어야 하며, ② 장기간의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협약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③ 기부금 납부 시기, 공사 착공일, 준공일 등을 미리 계획하여 세부 내역을 작성한 후 기타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함.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위 교회가 제공하는 기부금과 공사비 총액에 상응하는 학교기본재산 무상사용 기간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교회에서 시공한 공사내역서 및 도면도 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학교기본재산 무상사용허가 협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함

감사사례 12 교육용기본재산 수입 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 건물과 수익용기본재산인 아파트 3개동을 임대(2014.○.○. 시설사용 협약서 체결)하고 연간 1억5천만원 상당의 건물 등 사용료(교비회계 해당 분 1억2천만원 포함)를 수령하면서 이 중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구분하여 교비회계 수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액 법인회계 상 기부금(기타사업) 수입으로 처리하였음

감사사례 13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빌딩 보증금 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총체이며, 수익사업이란 수익용기본재산을 포함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기본 목적 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며, 수익금을 학교경영에 충당할 수 있는 합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경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은 반드시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보증 상황에 충당해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사업체인 ○○빌딩을 학교법인 △△학원과 공유(6:4)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수익발생이 없는 골프회원권 3구좌를 779,000천원(2007.○.○.○.)에 구입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학원 ○○○이 관리 보관하던 회원권(350,000천원)은 2016.○.○.○. 82,000천원에 매각하여 268,000천원의 손실을 보았음. 또한 감사일 현재 98,332,260원의 임대보증금을 미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골프회원권의 시세를 반영하면 골프회원권을 구입·보유하여 법인 재산에 총 558,000천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감사사례 14 수익사업회계 운영·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에 의거 설립된 수익사업체는 설립 목적이 그 운영수익으로 경영학교의 유지 및 발전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 또한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제1항에 의거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빌딩의 임대·관리를 하면서 수익사업체 수익금을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보다는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 관계자 인건비, 차량비, 판공비 등을 우선 집행하였음. ○○학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을 통해 충분한 수익이 있었음에도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30%, 2016년 28%, 2017년 27%밖에 부담하지 않은 반면 빌딩임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청소·경비·주차관리(총 6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용역비로 별도 집행하고, 빌딩관리를 위한 관리직은 담당, 부장(결재), 사무국장(결재), 이사장(결재)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법인 관계자 인건비를 빌딩임대 수익회계에서 우선 집행한 후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감사사례 15 법인 수익사업회계 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6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및 「학교법인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체는 설립 목적이 '그 운영수익으로 경영학교의 유지 및 발전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재무 운영 측면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수련원 및 연수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사업수입에서 법인일반경비 성격의 지출액 198,200천원(2014~2017)을 학교법인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였고, 연수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수련원으로 직접 전출하여 사용하였음

제7장

학교법인의 세무관리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개별세법상 학교법인의 개념	267
1. 개별세법상 학교법인의 개념	267
2. 학교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268
II. 학교법인의 세무	272
1. 학교법인과 세무관계	272
2. 회계와 세무관계	272
3. 학교법인 과세대상 소득 범위	273
4.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273
5. 자산양도소득 과세 특례	274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275
III. 학교법인의 국세 실무	276
1. 소득세	276
2. 법인세	277
3. 상속세 및 증여세	278
4. 부가가치세	281
IV. 학교법인의 지방세 실무	282
1. 지방세	282
2. 취득세	283
3. 등록면허세	284
4. 주민세	284
5. 재산세	284
6. 지역자원시설세	285
7. 지방교육세	286
V. 판례	287

학교법인의 세무관리

I

개별세법상 학교법인의 개념



1 > 개별세법상 학교법인의 개념

- ♣ 「법인세법」상 →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공익법인,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상 → 비영리사업자

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과 함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의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됨
- 즉,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학교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 ① 일정한 사업소득
- ② 이자소득
- ③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 인수권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⑥ 자산양도소득
- ⑦ 채권 등의 매매익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여러 가지 과세특례 조항을 규정함

다. 「부가가치세법」 상 비영리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제하는 교육 영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영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학교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 등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함

라. 「지방세법」 상 비영리사업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학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은 면제함

2 ▶ 학교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결산에 관한 서류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 홈택스 : www.hometax.go.kr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의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 10년간 보존	$(\text{수입금액} + \text{출연재산}) \times 0.0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 대상 : 해당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text{MAX}(\text{①}, \text{②})$ ① $(\text{수입금액} + \text{출연재산}) \times 0.07\%$ ② 100만원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사용 ◦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사용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text{MAX}(\text{①}, \text{②})$ ① $\text{공익수입금액} \times (A+B) \times 0.5\%$ A: 전용계좌 개설·신고안한기간 B: 해당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times 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서식, 그 이하인 경우는 간편서식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홈택스 : www.hometax.go.kr)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의 0.5%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작성·보관·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미작성, 미보관 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기법 제85조의5)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미작성 및 미보관 금액의 0.2%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0.5%

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②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 ③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④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⑥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
- ⑧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⑨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인정 필요 (2013.2.15. 이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장부의 작성방법

-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종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이종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봄
-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 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함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 :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

**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MAX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출연재산가액2) × 0.07%, 100만원}

라.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전용계좌 개설하고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전부 사용해야 함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마. 결산서류 공시의무

-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 ① 재무제표
-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⑤ 감사보고서(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
- ⑥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2013.2.1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제출 의무(「법인세법」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4)
 - 기부금액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00분의 5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
 -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

사.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 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무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75조의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II

학교법인의 세무



1 > 학교법인과 세무관계



2 > 회계와 세무관계

		비과세	과세
법인회계	법인고유업무	○	금융소득 과세
	수익사업	×	○
학교회계	목적사업	○	금융소득 과세
	부대사업	×	사업소득 과세



3 > 학교법인 과세대상 소득 범위

가. 과세대상 소득 범위(「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주식·신주인수권 및 출자지분 양도 수입
 - 유형·무형자산의 처분(교비자산 제외)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양도 수입
 -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나.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법」 제55조2)

- 부동산 가액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함
- 학교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 시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물은 과세됨

4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됨
 - ※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62조)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 ※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 환급분은 교비회계로 즉시 전출

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다.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14%)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10)이 됨

5 > 자산양도소득 과세 특례

가. 개요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아니함
 -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
 -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출연 고정자산 = 출연당시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다.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 수익용 또는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고유목적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때에는 이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함께 수익사업소득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 처분이익의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처분손익
 - 취득가 산정
 - 가) 매입(건조) 고정자산 = 매입(건조)가액 + 취득세 + 이전비용 + 자본적 지출
 - 나) 출연당시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
 - 다) 1990.12.31. 이전 취득재산 = 1991.1.1. 공시지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 다음과 같은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관리 필요

자본적 지출 포함	자본적 지출 미포함
◦ 증축·개축 ◦ 엘리베이터 설치 ◦ 주차장 설치 및 대수 증가 ◦ 외벽 전면 교체	◦ 수선 유지 비용 ◦ 엘리베이터 교체 ◦ 주차장 유지 비용 ◦ 외벽 페인트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기한 내 사용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기간	의무사용비율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누계기준)	미달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누계기준)	미달사용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라. 고정자산 교환

- 학교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제3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 사업용 고정자산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 교환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 취득자산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시가로 계산
 - 양도자산 : 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은 취득가액(장부금액)으로 계산
 - ※ 따라서, 교환 당시 시가로 동일한 자산을 교환하더라도 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법인의 경우 교환차익이 발생하기 마련임
-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환차익의 회계처리
 - 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일시상각충당금 :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 교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명목상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이연함
- 제외 대상사업
 -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오락유흥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매매업)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가. 개요

- 학교법인의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의 수입과 수익사업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적립하는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 하며, 이는 설정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예시) 이자소득 2억원(원천세 2천만원)

임대소득 5억원(법인세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억원 적립

→ 원천세 2천만원 환급 및 임대소득 5억원에 대한 법인세 1억원 면제

나.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용 처리 가능

「법인세법」 상 설정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설정한도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 제외) ◦ 배당소득액 ◦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 ◦ 기타 수익사업 발생 소득	100% 100% 100% 50%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022.12.31.까지) → 계속 연장 중	10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전출(사용)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 교비회계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 교비회계 기금이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
 - 교육시설 신축 등을 위한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액

- 수익사업회계에서 준비금을 법인일반회계에 전출한 금액
- 사용과 환입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사용순서	5년 후 미지출 환입 절차
◦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 간주 ◦ 계상 후 5년 경과 시 익금 산입	◦ 5년 기간 동안 일 0.025%(연9.125%) 이자 가산 ◦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 손금산입 방법
 - 결산조정 :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조정으로 재무제표에 반영
 - 신고조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Ⅲ

학교법인의 국세 실무



1 ▶ 소득세

※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 소득세의 의의

- 직접세로서, 광의적으로 개인 소득세 외에 법인 소득세도 포함함
-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소득세를 의미(지방세-주민세 제외)
-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

나. 납세지

- 거주자는 주소지에,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에 납세(「소득세법」 제6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납세

다. 신고·납부

- 소득과세표준을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에 대한 규정

- 근로청소년을 위한 학교운영비에 대한 감면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에 해당되므로 감면(「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기부금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감면(「소득세법」 제34조)

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급여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2 > 법인세

가. 법인세의 의의

- 직접세·보통세로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짐

나. 납부대상(「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법인세법」 제3조)

다. 과세대상(「법인세법」 제4조)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부과(「법인세법」 제4조)
 - ※ 사업연도 : 법령,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함. 1년 초과 불가(「법인세법」 제6조)

라. 납세지(「법인세법」 제9조)

- 내국법인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마.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8)

- 기한 내 미신고,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미이행, 과세표준 미달 신고, 세액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등

바. 「법인세법」 상의 학교법인

- 특별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2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법인세 미부과,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 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

사.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일정한 사업소득 :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영리 목적 및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자산의 양도 수입
-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아. 근로청소년을 위한 학교운영비의 손비 산입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자. 기부금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예외 : 손금 불산입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서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10/100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3 > 상속세 및 증여세

가. 상속세

- 상속·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보통세, 직접세
-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 방식
-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거주자의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 상속재산의 범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름.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미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나. 증여세

- 타인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 보통세, 직접세
- 대상 : 증여 받은 자

-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
 - 수증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부과(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 미부과)
- 증여재산의 범위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부터 제45조의5까지)
- 과세가액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미산입
- 과세표준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과 재해손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 미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1963.6.26)에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으로 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라. 학교법인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출연의 의의
 - 「민법」: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 출연재산 :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
 - ※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는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출연기한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으로 보아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액에 미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

□ 예외 : 과세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방법 등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출연 이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다음 요건 구비
 -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할 것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는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바. 연금급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연금부기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사. 학교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예외 : 과세가액에 산입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
-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①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②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③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위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4 >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 징수
-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
-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

나.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 용역 : 학교법인이 교육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숙박 용역 : 학교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위탁급식 등 음식 용역 : 학교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식사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기타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등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진열 하는 표본, 교육용 필름이나 슬라이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등 일부(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예외 : 과세

-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
-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IV

학교법인의 지방세 실무



1 ▶ 지방세

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됨(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

나. 용어의 정의(「지방세기본법」제2조)

-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
- 지방세 관계법 :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함
-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함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함
-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함
-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 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다. 지방세 세목(「지방세기본법」제7조)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지방세기본법」제8조)

○ 시·도의 세목

구 분	세 목		비 고
	보 통 세	목 적 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 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도의 세목

구 분	구 세	시·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세 목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 취득세

가. 취득세의 의의(「지방세법」제6조)

-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나. 납세의무자 등(「지방세법」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다. 학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예외 : 과세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한 후 일정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추징)

3 > 등록면허세

가. 등록면허세의 의의(「지방세법」제23조)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납세의무자(「지방세법」제24조)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은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다. 학교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학교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 등기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

4 > 주민세

가. 주민세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민세 비과세
 - 학교법인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 학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5 > 재산세

가. 재산세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5조)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납세기 : 토지·건축물·주택·선박의 선적항·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지방세법」제107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 과세 물건

-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艇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학교 등의 재산세 면제

-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예외 : 과세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6 ▶ 지역자원시설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지방세법」 제141조)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43조)
 - 발전용수(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입·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소유자)
- 납세지(「지방세법」 제144조)
 - 특정자원분 소재지, 특정시설분 소재지, 소방분 소재지

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포함)
-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제4항

□ 예외 :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7 > 지방교육세

가.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의 목적(「지방세법」 제149조)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재원 확보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재산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납세의무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 제외

나. 지방교육세 비과세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V

판례

V
판례

판례 1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 2016두59249, 2017. 3. 9.)

판례 2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① 이 사건 쟁점 조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지출'은 그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그 평가이익을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쟁점 조항은 구분경리를 위한 규정일 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6두31173, 2016. 8. 18.)

판례 3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 및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두45680, 2015. 5. 14.)

판례 4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 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두932, 2013. 6. 28.)



판례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종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종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종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종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2두28940, 2013. 5. 9.)

판례 6

-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 甲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교회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법인의 丁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丙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그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 상당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 [2] 甲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교회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법인의 丁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교회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27288, 2013. 9. 13.)



판례 7

-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비영리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두10590, 2006. 12. 8.)



판례 8

-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을 신축한 목적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그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및 노래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되고 있고 그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두9265, 2006. 1. 13.)

판례 9

-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 9

-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58901, 2005. 12. 23.)

판례 10

-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 학교법인이 이미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03구합2984, 2004. 7. 22.)

판례 11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

-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필요불가결한 그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구고법, 85구57, 1985. 5. 24.)



판례 12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하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
-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342, 2000. 2. 11.)

판례 13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의 산정 방법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임.

(대법원, 97누13320, 1999. 5. 14.)

판례 14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후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위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부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단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에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도 위 출연재산은 여전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 97누11263, 1999. 8. 20.)

판례 15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함.

(대법원, 96누4947, 1996. 11. 15.)

판례 16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소극)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님.

(대법원, 96누2644, 1997. 2. 11.)

판례 17 정관상 토지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동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학교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 임대사업이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나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

(대법원, 83누138, 1983. 12. 13.)

판례 18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 [1]항 규정 소정의 직접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
[3] 학교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18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 [1]항 규정 소정의 직접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

[3] 학교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 [3]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시설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 인도받아 그 부동산에 이미 있던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를 학교의 특별활동교실, 야간경비를 위한 관리인의 숙소와 책걸상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한 이상 이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동안 그에 대한 이전 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위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위 학교법인이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히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13104, 1996. 1. 26.)

판례 19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94누224, 1994. 10. 28.)

판례 20

[1]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

-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 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을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3누9705, 1994. 7. 29.)

판례 21

- [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계정을 구분경리하는 세무회계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 내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계정을 구분경리하는 세무회계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였어도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법, 92구23591, 1993. 3. 23.)

판례 22

- [1]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취지
- [2]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도하고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차액을 출연자 중 1인인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관할 관청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면, 위 차액금은 그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과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 [2]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출연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기로 하여 처분허가를 받아 매도하면서 매도 시마다 매매계약서 및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차액을 위 토지들을 출연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 그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관할 관청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한 후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가 있자 비로소 장부에 기재하였다면, 위 차액금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9046, 1992. 2. 14.)



판례 23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음을 알고 토지를 기증 받아서 위 사용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위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91누4515, 1991. 12. 27.)

판례 24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됨.

(서울고법, 80구44, 1980. 6. 18.)

판례 25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7(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법인세법 위반 여부(소극)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확보하고 학교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같은 조항은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양도차익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89누7665, 1990. 4. 27.)

판례 26

[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다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존속여부(적극)
[2]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의 가부(적극)

- [1] 학교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해오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주식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그 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 [2]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됨.

(대법원, 88누9268, 1989. 11. 28.)

판례 27

- [1]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 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정기부금으로서의 손금산입 여부(적극)

-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결손금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임.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에 관하여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 확인서만 수취하고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는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 [3]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하여 비영리사업의 회계에 전입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 실행하기 위한 계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의 계정으로 위 무상주를 전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전출한 무상주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당시의 시가 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88누7248, 1991. 8. 27.)

판례 28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에 토지평가액을 등재해 놓은 경우에 있어서 동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83누426, 1984. 3. 27.)

판례 29

취득세 부과대상인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 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87누641, 1987. 10. 13.)

판례 30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위 취득재산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교환 취득한 것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금액을 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양도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양도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그 양도금액을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84누400, 1986. 6. 10.)

판례 31

[1]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는 규정의 의미
[2]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함.
- [2]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취득 시부터 처분 시까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토지가 취득 시부터 처분 시까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 84누224, 1984. 7. 24.)

판례 32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학교법인이 대학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일부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만 가지고는 대학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행정상의 제반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면,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와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법, 84구94, 1985. 3. 5.)

제8장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

I. 학교법인회계의 일반원칙	303
1. 학교법인회계 총칙	303
2. 회계연도	305
II. 학교법인 예산	306
1. 예산	306
2. 예산의 일반원칙	306
3. 예산의 편성절차	306
4. 법인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308
5. 법인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311
6. 수익사업회계	316
7. 법인회계 예산 집행	317
III. 학교법인 결산	318
1. 결산의 기능	318
2. 결산 절차(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319
3.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지적사례	320
IV. 법인회계 관련 제출 서류	323
1. 법인회계 예산서에 첨부할 서류	323
2. 법인회계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	324
V. 판례	343
VI. 질의회신	350
VII. 감사사례	351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I

학교법인회계의 일반원칙



1 > 학교법인회계 총칙

가. 회계의 의의

- “회계”란 국가·기업·학교 등 사회조직체에서 활동상황이나 현상 등 경제적 여러 상황을 일정 방식에 따라 화폐단위로 기록·분류·계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및 정보제공을 하는 과정 및 제도를 말함
- 회계행위는 그 성격상 전형적이고 요식적인 것이 많으며, 회계행위의 시기·서식·내용 등은 모두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업무 담당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보통임
- 따라서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나. 회계 관련 법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기본회계 법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준용
-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회계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라. 회계의 구분 및 방법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위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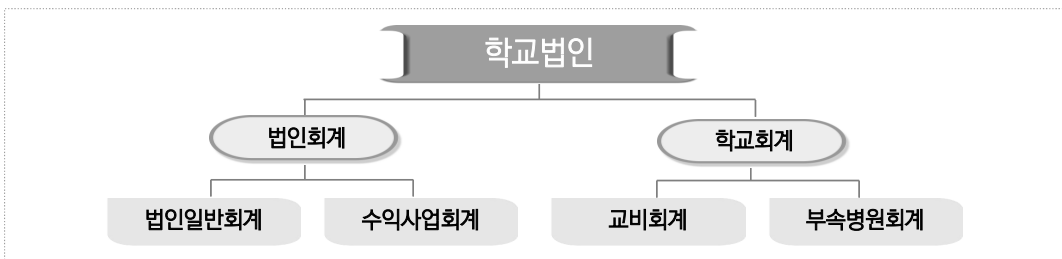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 회계의 구분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 학교에 속하는 회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 회계의 방법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복식부기
- 학교에 속하는 회계: 복식부기



마. 자금의 관리 및 차입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2 ▶ 회계연도

가. 회계연도의 의의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회계연도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정한 기간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출납폐쇄 기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II

학교법인 예산



1 > 예산

- 예산이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회계연도 기간의 활동을 위하여 집행하는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
- 세입·세출이란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며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지출하는 과정(수입·지출)을 회계라고 함

2 > 예산의 일반원칙

가. 관계규정의 준수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예산 관계 규정 준수하며, 교육감이 시달하는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예산의 정확한 계상

- 가공의 수입 및 지출을 계상하지 않도록 함
- 수입 및 지출의 누락이나 축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 예산의 편성절차

가. 예산편성 관계법령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예산편성 요령)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편성 절차)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예산편성 절차

추진과정	주 체	추진기한	추진사항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시달	교육청	회계연도 개시 3월 이전	·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기본지침 수립 및 시달



예산편성요령결정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 교육청 기본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자율적 결정 사항에 대 하여 예산편성요령을 정함



예산안 편성	이사장	20○○. 2월초	· 법인회계 예산안 편성



이사회 의결	학교 법인	20○○.2.18.	·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



예산보고 및 공시	이사장	20○○.2.23.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법인회계 예산서 제출 및 유지경영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4 > 법인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가.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기본재산 매각대, 차입금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나.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개시 후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결산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수익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제고하고,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수입, 법인세환급금 등 발생 수입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함
- 법인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법인회계에 즉시 세입 조치

라. 예산편성 요령

-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수익사업회계가 없는 법인은 법인일반회계 예산만 편성토록 함

마. 세입예산 주요 과목

1) 재산 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수입(임대보증금은 고정부채입금<관>, 임대보증금<목>에 편성)임대료는 그 인근지의 임대 시세에 맞춰서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
- 수익용 기본재산관련 임대보증금 이자 수입
- 수익용 기본재산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
- 법인세 환급금 (학교법인분)

2) 사업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체별로 사업수익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확실성 있는 세입을 계상

3) 투자수입

-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법인이 일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을 계상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은 반드시 기본재산수입에 계상)

4) 전년도 수입

- 전년도 미수된 수입을 계상하되 산출기초에 명세를 명확히 작성



5) 이월금

- 전년도잉여금 : 전년도 불용액 (산출기초에 사유를 기재)
 - ※ 학교법인의 비목적 이월금은 반드시 회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 이월사업비: 전년도 중 종료하지 못한 사업비를 기재 (이월사업비 조서를 첨부)
- 임대보증금 미환급금 : 임대보증금 미환급액에 의한 잉여금
- 적립금 : 교육청에 적립목적, 기금규모, 운용계획 등 사전 적립 보고된 적립금 기재

6) 기부원조금

- 특정인의 기부금, 국외원조금, 국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으로 보조기관의 보조 결정액에 한하여 계상 (결산보고 시 기부증서 제출, 확실한 금액 계상)
- 외국기관이나 외국의 재단 또는 단체의 원조금 등은 원조가 확정된 금액을 계상
- 기부채납이 확정된 금액은 반드시 당해 연도 내에 세입 조치되어야 한다.
 - ※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하므로, 법인 기부금을 정확히 관리·신고하여야 함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7) 차입금

- 차입금 : 관할청의 차입허가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계상 (예산총칙에 한도액 명시)
- 임대보증금 : 토지·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각종 보증금 수입
 - ※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

8) 잡수입

- 불용물품매각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비품, 집기,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
- 예금이자: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기타잡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변상금, 위약금 등의 수입액
- 교비에서 발생한 법인세환급금 (반드시 설치·경영하는 학교로 재 전출)

바. 세입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

과 목			과목해소
관	항	목	
1.재산수입	1. 기본 재산 수입	1.대지료	◦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수확물 매각대금
		2.대가료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3.임야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4.예금이자 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현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5.배 당 금 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입
		6.법 인 세 환 금 금 (법 인 분)	◦ 법인세 환급금(수익용기본재산 발생분) ※ 학교분 및 법인 일반운영비 자금에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은 잡수입에 계상토록 함
		7.기타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채권, 광산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
	2.재 산 매각대	1.토지매각대	◦ 관할청 처분허가(신고)를 받은 토지(수익용) 매각대
		2.건물매각대	◦ 관할청 처분허가(신고)를 받은 건물(수익용) 매각대
		3.임야매각대	◦ 관할청 처분허가(신고)를 받은 임야(수익용) 매각대
		4.현금처분대	◦ 관할청 처분허가(신고)를 받은 예금(수익용) 매각대
		5.기타재산 매 각 대	◦ 관할청 처분허가(신고)를 받은 주식, 채권 등(수익용) 매각대
2.사업수입	1.사업수입	1.사업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일반 회계로 전출한 금액 계상 - 법인의 수익사업체별로 사업수익 전망을 철저히 분석 하여 계상
3.투자사업	1.투자수입	1.배당금	◦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을 계상 ※ 유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은 반드시 기본재산수입의 배당금 수입(주식) 및 기타 수입(채권)에 계상토록 함
		2.국채상환금	
		3.국채이자 수입	
		4.기 타 증권수입	
4.전년도 수입	1.전년도 수입	1.전년도 수입	◦ 전년도에 미수된 수입 계상하되 산출기초에 명세를 명확히 작성토록 함
5.이월금	1.전년도 이월금	1.전년도 잉여금	◦ 전년도 불용액 기재(순세계 잉여금)
		2.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이월한 사업비를 기재하고 이월사업비 조서를 첨부토록 함 ※ 이사화비, 사무비 등 법인운영비는 이월사업 대상이 아님
		3.임대보증금 미환급보유액	◦ 임대보증금 미환급액에 따른 보유 잉여금
		4.적립금	◦ 교육청에 적립목적, 기금규모, 운용계획 등 사전 적립 보고된 적립금의 이월액 기재



과 목			과목해소
관	항	목	
6.기 부 원조금	1.기 부 원조금	1.기부금	-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기부금 ※ 기부각서(사용목적, 금액 명기) 필수 제출 ※ 세출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기부금 사용분은 반드시 '기부금 사용' 표시
		2.보조금	- 교육청에서 특정사업을 위해 보조한 금액 ※ 교부 예정서 등 교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예) 임시이사선임보조금 등
		3.기타지원금	- 교육청 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 교부 예정서 등 교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7.차입금	1.차입금	1.은행차입	교육청의 차입허가(신고)받은 금액을 계상하되 예산총칙 제2조에 그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함
		2.개인차입	
		3.임대보증금 수입	-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각종 보증금 수입 ※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여 보증 상황에 충당
8.잡수입	1.물 품 매각수입	1.불용물품 매각수입	법인 보통재산 등(비품, 기계기구, 집기 등)의 불용품 매각 대금
	2.예금이자	1.예금이자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법인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3.잡수입	1.잡수입	-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변상금, 수수료, 위약금 등의 수입예상액 - 법인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금 기재
		2.법 인 세 환 급 금 (학교분)	학교분 법인세 환급금을 계상토록 하며, 반드시 학교별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 (설치·경영하는 학교로 전출)

※ 비교

1. 목은 실제로 따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된 관·항·목에 따른다.
-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보상금 등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성

5 ▶ 법인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가. 회계질서 확립

- 부당한 수의계약, 입찰질서 문란, 현금 유용, 수입액 누락 및 수익의 부당사용 등이 없도록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세출예산 절감

- 에너지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 및 경직성경비 증가 억제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다.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매각) 관리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매각) 대금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할청의 허가내용에 따른다.

라. 세출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1) 관계 법령 준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을 숙지하고 과목해소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함

※ 교육용기본재산 수익금, 보상금 등은 법인회계로 편성 금지(교비회계로 편성)

예시) 학교매점 임대료 수입, 교육용 토지 보상금 ⇒ 교비회계

※ 법인 설립자, 이사회 임원 묘소관리비, 제향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 집행 불가

2) 예산의 축소 계상 금지

가공의 수입 및 지출이 계상(목별로 1,000원씩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입 및 지출의 누락, 축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소모성·경직성·선심성 경비 억제

소모성, 선심성 경비를 억제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함

4) 부채 증가 억제

차입금은 억제하며,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계획 및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5) 임대보증금 관리 철저

-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예치하여야 함(임대보증금 부당 인출 및 법인운영비 등 사용 금지)

- 임대보증금은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부채로 관리

6) 비목적 이월금 억제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법인은 비목적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여야 함

마. 세출예산 주요 과목

1) 이사회비

- 이사회 임원수당, 회의비, 판공비, 여비 등 경비 계상

2) 사무비

- 법인 직원의 인건비(봉급, 수당, 잡급, 여비, 퇴직금) 계상
 -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계상하지 못함. (학교법인 정관 사본 첨부) 임원의 보수는 법인에서의 업무량, 책임정도 및 법인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급액 결정(법인예산과 별도 이사회 심의)
 - ※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하지 못한 경우 법인 직원인건비(상근이사 포함)를 학교 법인 운영비 세출로 계상할 수 없다.



- 법인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계상(법인회비 및 단체교섭경비는 잡지출로 계상)
- 차량구입 및 차량운영(리스)비의 적정 도모
 - 차량 신규구입 시는 기존 차량이용대장 사본과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 업무용 차량운영비를 세출에 계상할 경우 차량이용대장을 작성·비치할 것이며 또한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제출
 - 차량구입 및 차량운영비 사용의 경우 법인운영비 집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가능(초과 집행시 매각처분 및 운영 불가 조치)
 - ※ 수익자경비로 운영하는 통학용차량 및 관용차량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업무용 명목으로 운영하여 차량유지비를 교비회계로 집행 시 해당 금액만큼 법인회계에서 보존 조치하고 미이행 시 차기년도 재정결합보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

3) 재산조성비

- 토지, 건물 및 재산에 해당하는 매입비, 공매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등 계상
- 기본재산의 신·증·개축비용
- 교육청에서 인정한 적립금 집행(당해년도 적립금은 결산시 세계잉여금으로처리)
- 학교법인 기본재산(교육용·수익용)의 매입 및 시설물 증·개축 등 완료 후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증자 보고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매각)대금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할청의 허가 내용에 따름

4) 전출금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전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세공과금: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유지에 필요한 비용
 3. 법정부담경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 ※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학교법인은 비목적 이월금이 발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5) 투자비

- 학교법인 수입재원 중 주식, 국채, 기타 투자비 등 계상

6) 전년도 지출

- 전년도 예산 해당과목의 사용잔액 범위 내의 채무 확정분을 구체적인 산출 기초에 의거 계상 (전년도 사용 잔액을 초과한 전년도 지출은 불인정)

7) 상환금

- 관할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부채상환금(원금상환금, 이자지출금) 및 임대보증금 환급 계상
 - 임대보증금은 소모성 경비(이사회비, 사무비 등)로 계상할 수 없다

8) 수혜금

- 법인에서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 계상

9) 잡지출

- 각종 보상금, 사례금, 소송비, 기타제지출(법인회비 및 단체교섭경비 등)

10)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계상

바.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의 집행 범위

- (2022회계연도까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 단,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의 30%이상 부담 시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 단, 법정부담금 소요액 100% 전출 법인에 한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의 40%까지 법인운영비 인정
- (2023회계연도부터) 전출금액의 30%범위 내에서 법인운영비 사용
- 경영학교에 수익금전출의무를 다한 경우, 집행잔액은 법인운영비로 사용가능함
- 수익비용 중 최소한의 건물유지비, 재산관련 소송경비 인정
 - (단, 경비과다집행으로 판단될 시 관련 자료 검토 후 인정여부 결정)
 - ※ 수익용기본재산 수입=기본재산수입+사업수입+과년도수입+전년도이월금(세입과목 1목)
 - ※ 교육청 보조금(임시이사회 운영지원 경비, 교원위탁채용 전형지원비), 기부금(법인운영비 사용 목적) 등 목적이 정해진 경비와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은 비용은 운영비에서 제외

사. 세출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

과 목			과목해소
관	항	목	
1.이사회비	1.이사회비	1.임원수당	◦ 법인 임원의 수고비(사례비), 일당 등 실비 변상
		2.회 의 비	◦ 이사회 회의 운영 경비
		3.업무추진비	◦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 법인 설립자, 이사회 임원 묘소관리비, 제향비 등 지출 불가
		4.여 비	◦ 임원의 법인사무 관련 여비
2.사무비	1.인건비	1.봉 급	◦ 법인 직원 급여(상근이사 포함)
		2.수 당	◦ 법인 직원(상근이사 포함) 및 기타사무에 필요한 수당
		3.잡 급	◦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및 기타 제경비
		4.여 비	◦ 법인 직원(상근이사 포함)의 국내·외 여비
		5.퇴 직 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상, 퇴직적립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
		6.부 담 금	◦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2.수용비	1.공공요금	◦ 우편·전신·전화·전기·수도요금 등
		2.차 량 비	◦ 법인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세금·수수료·유류비 등
		3.비 품 기계류비	◦ 법인용 비품·기계기구·집기 등 구입비
		4.수수료 수선비	◦ 각종 수수료, 비품기계류 등 수선비, ※ 유의사항: 법인회비 및 단체교섭경비 등은 잡지출로 계상
		5.수용재료비	◦ 각종 재료비 및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6.인쇄비	◦ 인쇄비



과 목			과목해소
관	항	목	
3.재 산 조성비	1.시설비	1.재 산 매 입 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매입비
		2.시 설 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신·증·개축비용
		3.적 립 금	◦ 교육청에 보고된 적립금의 당해 연도 적립액 기재
	2.재 산 관 리 비	1.재 산 유 지 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수선·유지 비용
		2.공 과 보 험 료	◦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인정여부: 관할청 확인사항)
		3.재 산 사 용 료	◦ 국유지, 공유지 등 타 기관(타인) 소유의 부지에 대한 사용 료, 법인사무실 임대 사용료 등 기재
4.전출금	1.전출금	1.법정부담금	◦ 법정부담금 전출액 학교별로 기재
		2.학교운영 경 비	◦ 학교운영경비(경상운영비) 학교별로 전출액 기재 ※ 전출학교명 표기, 인건비 지원금 제외
		3.법 인 세 환 금 금 (학 교 분)	◦ 학교별 법인세 환급금 전출액 기재
		4.교 육 청 대 응 투 자 비	◦ 교육청 대응투자비(교육부 특교) 법인분 전출내역 학교별 기재
		5.시 설 비	◦ 법인에서 학교 시설지원 내역 기재
		6.교육청 외 기관지원금	◦ 경기도, 시청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내역 기재
		7.기 타 전 출 금	◦ 1~6번 목 이외의 기타 전출 내역 기재
5.투자비	1.투자비	1.주식, 채권 매입비 (수익용)	◦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주식, 채권 등 매입비 또는 수익 용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투자비 (세부내역별로 구체적 기입)
		2.현금, 기타 투자비 (수익용)	◦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기타 투자비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투자비 (세부내역별로 구체적 기입)
		3.기타투자비 (법인일반 운영비)	◦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기타투자비 (주식, 채권 등 세부내역별로 구체적 기입)

과 목			과목해소
관	항	목	
6.전년도 지출	1.전년도 지출	1.전년도지출	◦ 전년도에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로서 지출하지 못한 전년도 미지급금 지출
7.상환금	1.부 채 상환금	1.원금상환금	◦ 차입금 원금 상환금
		2.이자상환금	◦ 차입금 이자 지급금
		3.임대보증금 환급금	◦ 임대보증금 환급금
8.수혜금	1.장학금	1.장학금	◦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9.잡지출	1.제지출	1.보상금	◦ 법령이나 판결 등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상금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
		2.사례금	◦ 소속 임직원 및 외부인사 격려 등 위로 비용
		3.소송비	◦ 소송관련 비용(수수료, 변호사비용 등)
		4.기타제지출	◦ 기타 법인운영 시 필요한 제비용 - 법인회비, 소모성 경비 등
10.예비비	1.예비비	1.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 계상

※ 비고

1. 목은 실제에 따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된 관·항·목에 따른다.

6 ▶ 수익사업회계

가. 수익사업체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행한 사업체를 말한다.

나.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1) 학교법인에서 수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사업체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 2) 수익사업체에서 생긴 수익금은 일반업무회계(사업수입)에 전출하여야 한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수입액에 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사업체 운영경비(인건비,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손실을 없앨 것
 - 수익사업체 수익금은 반드시 당해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또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예금, 증권 구입 등의 투자비는 수익사업체로 보지 아니한다.
 -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의해 대체한 건물은 수익사업체가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임



다. 수익사업회계 운영 시 유의사항

- 법인일반회계와 인건비 중복 지급 여부 및 인건비 지급 대상의 적정성 확인
- 접대비 등 판매비 및 일반관리의 적정 운영비 사용 및 집행절차 준수
- 각종 비용의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수익 누수 및 고의적인 수익 누락 금지
- 특히, 「사립학교법」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에 따라 수익은 사립학교의 경영의 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하는 바 수익감소를 가져오는 경상비 과다계상, 인력과다 채용, 홍보비 과다사용, 접대비, 외부 기부, 외부투자유치는 지양
- 학교법인 이사 중 공인회계사가 있는 법인은 수익사업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권고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8조에 따라 수익사업체 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학교법인에 보고징수 등의 조치 요구

라. 수익사업체 예산 편성 및 첨부 서류

실정에 따라 관, 항, 목별로 과목을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 ②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③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 ⑤ 기구 및 정·현원표
- ⑥ 차입금 명세서
- ⑦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7 > 법인회계 예산 집행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법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

가. 예산집행 기본원칙

1) 예비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19조(예비비)** ① 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2)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4)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III

학교법인 결산



1 ▶ 결산의 기능

가. 결산의 의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당해 회계연도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나. 예산집행의 타당성 검토

결산은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지출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단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집행의 타당성, 합리성을 평가하는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능을 담당

다. 재정계획수립의 합리화 도모

결산 심의결과는 장래의 예산편성 및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2 > 결산 절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과 정	주 체	추진기한	추진사항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이사장 (감사)	20〇〇.4.9.	·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감사 전원 서명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			
결산 심의·확정	학교 법인	20〇〇.4.24.	· 이사회 의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			
결산 보고	이사장	20〇〇.5.31.	· 교육청에 법인회계 결산서 제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결산 공시	이사장	20〇〇.5.31.~ 20〇〇.5.30.	· 확정된 결산서를 소속학교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연도 2월말 / 출납폐쇄 정리기한: 다음연도 3. 20.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 조서·미수액 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2. 1. 6.>
-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3 >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지적사례

가. 유의사항

- 1) 법인비와 학교비의 세입·세출 결산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 2) 결산액은 세입·세출내역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음
- 3) 세입세출 결산서 부기란에는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상세하게 기입하고 결산액과 일치
- 4) 결산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르며, 수익사업회계결산서는 법인회계결산서 제출 시 첨부
- 5) 법인의 세입, 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인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의결(수익사업회계 포함)
- 6) 결산잔액과 잔액증명서 상의 금액이 다를 때에는 불부합조서를 첨부
(불부합조서는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7)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수입 등 회계연도에 수입되어야 할 각종 수입금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 이전에 징수
- 8) 이월사업 및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 9) 경영학교로 진출한 금액(법정부담금, 운영비, 시설비 등)은 진출 목적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10) 예·결산서 제출 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
- 11)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한 법인이 이월금이 있을 경우 이월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별도의 목적 없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주요 지적사례

- 1) 감사보고서 제출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거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감사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감사보고서 첨부
- 2) 결산 이사회 의결 기일 및 교육청 보고 기한 미준수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함에도 법정 기한 미준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교육청에 보고 미준수
- 3) 세입·세출과목 부적정
 - 학교법인의 결산서의 세부항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과목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함
- 4) 임대료 미수입액 발생
 - ⇒ 임대료 미징수액에 대해 채권 확보 조치 실시
- 5) 산출기초 미표기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산출기초: 원×명×월×일×회×식)



구 분	예산서	결산서
금액단위	천원 *세입: 천원 미만 절사 / 세출: 천원 미만 절상	원
산출기초 금액단위	원	원
계량단위	미터법	미터법
과목해소	예산명세서에 해당 과목이 없는 경우 유사과목으로 편성	

6) 법인운영비 과다 집행

- (2022회계연도까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 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운영비를 10%범위 내에서 사용,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의 30%이상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15% 범위내에서 법인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법인운영비 집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함.
- (2023회계연도부터) 전출금의 30% 범위 내에서 법인운영비 사용
⇒ 재정결합지원교는 최종 조정 시 재정결합보조금 삭감
- 단, 법정부담금 소요액 100% 전출 법인에 한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의 40%까지 법인운영비 인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영학교에 수익금전출의무를 다한 경우, 집행잔액은 법인운영비로 사용 가능

7)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100분의 80 미전출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수익의 100분의 80이상 유지경영교로 전출하여야 하므로 법정부담금을 100%부담하는 법인의 경우 집행 후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은 유지경영교로 전출하여야 함.
⇒ 해당 금액을 다음년도 법인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전출

8) 기부금 내역 미표기

- 기부금은 사용용도가 명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증서를 첨부
(세입, 세출 명확히 표기 할 것) ⇒ 기부금 내역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주의

9) 인건비 집행 철저

- 법인 정규직원 및 상근임원의 인건비 과대 계상 및 지원대상자의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인건비 지급
- 임원의 보수는 법인에서의 업무량, 책임정도 및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
- 세출 인건비 결산내역에 인건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재

10)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미보전금 발생

- 학교법인 재정관련 사안 발생에 따른 기본재산 손실, 교비회계 예산 부당 집행으로 법인 회계 및 교비회계 손실금 미 보전
- ⇒ 보전조치 이행 결과 및 향후 보전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11) 이월금 과다 발생

- 당해연도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다음 연도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 특별한 사유 없이 이월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전출금(법정부담금 집행)으로 예산편성

12) 법인세환급금 관리 부적정

-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및 학교회계의 예금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결산 확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여 반드시 환급받아야 하며, 법인분과 학교분을 구분하여 법인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환급받은 법인세 중 학교비 예금이자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법인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해당학교 회계로 전출)
 - 법인분 법인세환급금 (기본재산수입 법인세 환급금[법인분])
 - 학교분 법인세환급금 (잡수입 법인세환급금[학교분], 세출시 전출금 법인세환급금)
- ⇒ 미환급금 환급 조치

13) 결산내역과 증빙자료 금액 불일치

- 교비 및 법인비 법인세환급금, 배당금, 재산매각대 등 결산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불일치 함.
- ⇒ 불일치 사유서 제출하고 교비회계 미 전출액 및 법인회계 누락금액 있을 시 시정 후 결과 보고

14)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교비회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부적정
- ⇒ 관련 판례 : 선고 2010헌바432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해석될 수 있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는 각급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V

법인회계 관련 제출 서류



1 > 법인회계 예산서에 첨부할 서류

구분	서 류 명	서 식
필수 제출 서류	1. 예산총칙	
	2. 기구, 정·현원 일람표	[서식1]
	3. 법인회계 예산 총괄표	[서식3]
	4. 법인회계 예·결산 성질별조서	[서식4]
	5. 법인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	[서식5]
	6. 법인회계 세출 예산 명세서	[서식6]
	7.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예정(실적)조서	[서식7]
	8.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서식2]
해당 경우 제출 서류	9. 교직원보수일람표	[서식8]
	10. 계속비사업 예산조서	[서식9]
	11. 명시이월사업 예산조서	[서식10]
	12. 전년도 부채명세서	[서식11]
	13. 수익용기본재산중 정기예금별 조서	[서식12]
	14. 수익사업신고서	
	15. 수익사업계획조서	

2 > 법인회계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

구분	서 류 명	서 식
필수 제출 서류	1. 기구 , 정·현원 일람표	[서식1]
	2. 법인회계 결산총괄표	[서식13]
	3. 법인회계 예·결산 성질별조서	[서식4]
	4. 법인회계 결산조서	[서식14]
	5. 법인회계 세입 결산 명세서	[서식15]
	6. 법인회계 세출 결산 명세서	[서식16]
	7. 집행잔액조서	[서식17]
	8.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예정(실적)조서	[서식7]
	9. 감사보고서	[서식18]
	10.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서식2]
해당 경우 제출 서류	11. 예금잔액 불부합조서	[서식19]
	12. 예비비사용액조서	[서식20]
	13. 세출예산 이용 , 전용 명세서	[서식21]
	14. 계속비조서	[서식22]
	15. 계속비내역	[서식23]
	16. 결손처분액조서	[서식24]
	17. 미수입액조서	[서식25]
	18. 명시이월비내역	[서식26]
	19. 차입금명세서	[서식27]
	20. 채무확정액조서	[서식28]
	21. 인건비지급명세서	
	22. 수익용기본재산중 정기예금별 조서	[서식12]
	23. 임대보증금 사용조서	[서식29]



【서식 1】

기구, 정·현원 일람표

[작성기준 : 예산 - 3.1. 결산 - 2.28.]

1. 일반현황

법인설립 인 가 년 월 일	설립자 (한 자)	이사장 인적사항				전화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법 인 사무실	이사장 자택
	()	()					

※ 작성요령 : 관외법인도 작성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인별 제출 할 것.

2. 법인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 무 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정 원								
현 원								
증 감								

※ 작성요령 : 관내법인만 작성.

3. 학교 교직원 정·현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일 반 직						합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소계	결원 보충	기타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정원															
현원															
증감															

※ 정원은 관할청에서 인정한 인원을 기재하고 현원은 현재 근무중인자 (휴직자 포함,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는 제외)를 작성한다.

4. 교육공무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공무직원												계
	행정실 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 무사	급식 배식원	통학차 량보조	청소원	시설관 리보조	사감	체육 코치	기타		
정원													
현원													
증감													

※ 직종에 따라 변경 작성

【서식 2】

학교법인 ○ ○ 학원 이사회 회의록 (예시)

1. 회 의 통지일 :

2. 회 의 일 시 :

3. 회 의 장 소 :

4. 이 사 정 수 :

5. 재 적 이 사 :

6. 참 석 이 사(명) :

7. 불 참 이 사(명) :

8. 회 의 안 건

가.

나.

9. 회 의 내 용

이사장(○○○) : 개회선언, 제안설명 등

이 사(○○○) : 질문

토의(이사장 , 이사)

이 사(○○○) : 동의

이 사(○○○) : 재청

이사장(○○○) : 표결

이 사(○○○) : 이사 전원의 가결내용

이사장(○○○) : 선포, 폐회선언

회의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이며 예결산의 총액을 표기 하여야 한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사장 ○ ○ ○ 인 (사인)

이 사 ○ ○ ○ 인 (사인)

이 사 ○ ○ ○ 인 (사인)

이 사 ○ ○ ○ 인 (사인)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날인



【서식 3】

법인회계 예산 총괄표

1. 세 입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1. 재 산 수 입					
2. 사 업 수 입					
· · ·					
8. 잡 수 입					
세 입 합 계		100			

2. 세 출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1. 이 사 회 비					
2. 사 무 비					
· · ·					
10. 예 비 비					
세 출 합 계		100			

※ 작성요령 : 추경편성시는 예산액은 추경예산액으로, 전년도예산액은 기정예산액으로하여 사용한다.

【서식 4】

법인회계 예·결산 성질별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결)산 성질별 내역		
관 명	과 목 명	예(결) 산 액 (A)	관 내 구 성 비 (A/Y,%)	전 체 구 성 비 (A/X,%)
인건비	교원봉급		교원봉급/Y1	교원봉급/X
	사무직원봉급			
	교원수당		교원수당/Y1	
	사무직원수당			
	퇴 직 금		퇴직금/Y1	퇴직금/X
	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기타수당/X
	임시직급여			
	일용잡급			
	소 계(Y1)		100%	Y1/X
관리운영비	.			
	학교교육비		학교교육비/Y2	학교교육비/X
	소 계(Y2)		100%	Y2/X
연구장학비	장 학 금		100%	장학금/X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100%	입시경비/X
학교운영지원비	교원연구비			
	학생복지비			
	.			
	총 계(X)			100%

※ 관내구성비, 전체구성비, 집행비율은 모두 비율(%)로 나타내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예시 : 15.1% 등)

※ 예·결산서 제출시 작성하고, 추경시는 생략. 예산은 천원단위, 결산은 원단위



【서식 5】

법인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illegible]

【서식 6】

법인회계 세출 예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비 고	
관	항	목	세목						

【서식 7】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예정(실적)조서

가. 토지(대지, 임야, 전, 답), 건물

재산의 종류	면 적(㎡)	평가액	총수입액	필요경비	순수익액	운영방법

※ 작성요령

1. 재산의 종류 : 소재지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운영방법 : 농지의 경우 자경 또는 임대료, 대지, 건물은 임대 등으로 기재한다.
3. 총수입액과 순수익액을 일치시킨다. 만약 토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경비가 있을시 예산에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나. 현금, 유가증권

재산의 종류	금 액	이율 또는 배 당 금	총수입액	필요경비	순수익액

※ 작성요령

1. 총수입액 : 세전 수입
2. 필요경비 : 세금 기재
3. 순수익액 : 세후 수입

다. 수익액 예정(집행)내역

재산의 종 류	순 수익액	집 행 내 역							
		법 정 부담금	법 인 운영비	교 육 시설비 부담액	제 세 공과금	감 가 상각비	학 교 운영비	재투자비	계

※ 작성요령

1. 재산의 종류 : 토지(대지, 임야, 전, 답), 건물, 정기예금등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2. 순수익액 : 위 “가”, “나”항의 순수익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4. 집행내역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반드시 일치시킨다.

【서식 8】

교직원보수일람표 (교육공무직원 포함)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성 명	호봉	봉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계
①	정규교원	소계								
②	사무직원	소계								
③	기간제교원	소계								
④	사무직원	대체인력	소계							
⑤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소계							
⑥	교육공무직원	소계								
총 계										

※ 작성요령

1.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수당란, 복리후생비란, 직급보조비란 등을 증설하여 작성한다.
3. 교원, 사무직원, 기간제교원, 사무직원대체인력, 교육공무직원대체인력, 교육공무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소계를 산출한 후 합계를 낸다.
4.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의 인건비 산정내역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서식 9】

계속비 사업 예산조서

· 세부사업 : · 사업기간 : ~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2020 (Y-1)	2021 (당해년도)	2022 (Y+1)	2023 (Y+2)	2024 (Y+3)
당초						
변경						
증감						

【서식 10】

명시·사고이월 사업 예산조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당초						
변경						
증감						

【서식 11】

전년도 부채명세서

(단위 : 원)

종 류	전전년도 이 월 액 (2016년) <A>	전년도 발생액 (2017년) 	전년도 상환액 (2018년) <C>	부 채 잔 액 (2018.2.28.) <A+B-C>	부채발생사유	상환계획

※ 전년도 부채발생시 관할청의 허가 문서번호, 일시를 ()안에 기재

【서식 12】

수익용기본재산중 정기예금별 조서

일련 번호	정기예금액	예 치 은행명	계좌번호	예치일	예치 기간	이율	세전	세금	세후	비 고
계										

※ 첨부서류

- 잔액증명서
- 잔액증명서상에 질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제한하는 “지급정지”를 명시하여 제출
- 예금통장 (사본)
위 예금통장 사본은 계좌번호, 예금주명의로 있는 면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같이 제출

【서식 13】

법인회계 결산 총괄표

1. 세 입

(단위 : 원)

관 별	결산액	구성비 (%)	최종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1. 재 산 수 입					
2. 사 업 수 입					
· · ..					
8. 잡 수 입					
세 입 합 계		100			

2. 세 출

(단위 : 원)

관 별	결산액	구성비 (%)	최종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1. 이 사 회 비					
2. 사 무 비					
· · ·					
10. 예 비 비					
세 출 합 계		100			



【서식 14】

00년도 법인회계 결산조서

· 세입결산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이월등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D-E-F)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1. 입학금										
2. 수업료										
·										
회비수입										
·										
잡수입										
세입합계										

※ 작성요령 : 과목은 관, 항, 목까지 작성한다.

· 세출결산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 (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용	전용	예비비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 인건비															
2. 관리운영비															
·															
세출합계															
잔액															

※ 작성요령

1. 과목은 관, 항, 목까지 작성한다.
2. 예산외의 비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때에는 예산에 준한 과목에 이를 정리하고 해당 “과목”의 결산액에 합산한다.

【서식 15】

법인회계 세입 결산 명세서

(단위 : 원)

[illegible]

【서식 16】

법인회계 세출 결산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결산액 (A)	예산액 (B)	예산 현액 (C)	증감 (D =C-A)	산 출 기 초 (단위 : 원)	비 고
관	항	목	세목						



【서식 17】

집행잔액조서

1. 세입총액 : 일금 ○○○원정

2. 세출총액 : 일금 ○○○원정

3. 차인잔액 : 일금 ○○○원정

· 잉여금 현황

(단위:원)

세계잉여금 (A)	이 월 액(B)				적립금 (법인비) (C)	순세계잉여금 (D=A-B-C)	비고
	소계(E)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이월액 내역

(단위:원)

항 목	상세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목적사업비보조금 이월				
시보조금 이월				
수익자부담금 이월				
집행잔액 이월				
합계(F)				

※ 이월액 소계(E)와 합계(F)의 금액은 일치 시킬 것

※ 항목이나 상세내역은 학교에서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18】

감 사 보 고 서

본인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의 20 . . . 부터 20 . . . 로 종결되는 20 학년도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1. 결산내역 기재

2.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로 상세히 기재

20

학교법인 ○○○○

감 사 ○○○ (인)

감 사 ○○○ (인)

피감사자(임회인)의 직, 성명 기재 후 날인

학교법인 ○○○○ 이사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날인할 것.



【서식 19】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산잔액 (A)	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 (B)	차 액 (A-B)	비 고

2. 불부합 사유

구분	일자	건명	금액	비고
세입				
세출				

세입합계(A)		세출합계(B)		차액(A-B)	

위와 같이 불부합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학교장 ○○○ (사인)

직 인

【서식 20】

예비비 사용액 조서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액	지출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서식 21】

세출예산 이용, 전용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서식 22】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사 항	총 액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집 행 계획액	집행액	집 행 잔 액	집 행 계획액	집행액	집 행 잔 액	집 행 계획액	집 행 계획액	집 행 계획액

※ 작성요령 : 당해년도 이전분은 계획액, 집행액, 잔액을 기입하고 당해년도 이후 분은 계획액만을 기재한다.

【서식 23】

계속비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서식 24】

결손처분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입액	결 손 처분액	결손처분 내 역
관	항	목					

【서식 25】

미수입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입액	미수입액	미수내역, 사유
관	항	목					

【서식 26】

다음연도 이월비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월 증감액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사유)
정책	단 위	세 부								

【서식 27】

차입금 명세서

(단위 : 원)

차입년도	차입목적	이자율	차입금액	상환원금	미상환원금	상환완료년도	차입처

【서식 28】

채무확정액조서

(단위 : 원)

회계, 소관	사 항	금 액

※ 임대보증금 별도

【서식 29】

임대보증금 사용조서

(단위 : 천원)

임대보증금액	사용금액	사용내역



V

판례

V
판례

판례 1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이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갑 사립학교 경영자 을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학교는 사인(私人)인 을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을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을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 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 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판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이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 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됨.

(대법원 2001. 3. 20. 자 2000마7801 결정)



판례 3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판례 4

감독청의 허가 없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의 채무 상환에 전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고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160 판결)

판례 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능,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 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 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확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향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6.12.24.자, 96마1302,1303 결정)



판례 6

학교법인 회계관리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전용한 것이 곧바로 횡령행위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소 다르게 인정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사이에 범행일시와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있는 부분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이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동기 및 피해자가 동일하고,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수 또한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였다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 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학금 등을 송금받은 것은 학교 법인의 용도에 전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4.9.9.선고, 94도998 판결)

판례 7

사립학교법 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 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3.5.30.선고2020도23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20.5.10.선고 2001도1779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8.28.선고 2014도6286 판결)

판례 8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 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 4085 판결)

판례 9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의 적부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 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1991.5.20.자, 91마229 결정)

판례 10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임의전출 하였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전출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사례

-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 9651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로 전출한 것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결손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도, 3742 판결)



판례 11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의 유용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판례 1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고),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판례 1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 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학교의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교비 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비 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리책임자가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함.
-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대구고법 2007.7.20. 선고 2007노 133 판결)



판례 14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차금 및 당좌수표발행이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서울고법 1980.9.22. 선고 80나1877)

판례 15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 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함.
-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님.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070 판결)

판례 16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 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입법 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2항) 회계도 대학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 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판례 17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제67조, 제73조 의2의 문언·체계와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립 외국인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3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30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음(제60조의2 제1항). 그러나 이는 구 초·중등교육법과 관계 법규상 사립만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제30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사립학교인 甲외국인학교 경영자인 피고인이 甲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乙외국인학교에 대여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학교와 乙학교는 각각 설립인가를 받은 별개의 학교이므로 甲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乙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되며,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관할 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거나 甲학교 설립·운영협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관할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甲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乙학교에 대한 자금 대여 안전을 보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판례 18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VI

질의회신



질의회신 1 학교법인이 물품구매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 및 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재무와 회계 운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써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은 지급어음을 발행할 수 없음.

(대재 81423-554, 1993. 8.17, 대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질의회신 2 학교법인이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과 학교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적금·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있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 따라서, 은행에 당좌수표 또는 약속 어음 발행을 전제한 당좌예금(계정)은 개설할 수 없음.
- 학교법인이 물품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행하는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통장에 의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동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당좌수표나 어음(상품어음 또는 진성어음)을 발행할 수 없음. 다만, 금전 차입의 한 과정으로써 어음(용통어음)을 발행한다거나 일시차입 행위인 당좌차월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기채(차입) 허가를 받아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재정 07000-262, 1998. 6.11, 대 : 역삼평화은행장)

질의회신 3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공동 예치된 자금의 성격

- 학교법인의 회계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 차원에서 ○○○과 광주광역시교육감 공동명의로 예치한 사업자금은 예치 당시 예치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부와 학교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수입으로 조치 여부 및 학교법인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 또한, 예치금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예치할 목적, 사유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교 07000-467, 2000. 5. 3, 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질의회신 4 학교법인 소유의 버스 운행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예산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따라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같은 비용을 예산에 편성 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2018년도 교육행정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

질의회신 5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관련)
[교육부, 15-0539, 2015.10.23.]**질 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회 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 등의 타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 것은,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할 것임.

VII

감사사례

**감사사례 1**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채권관리 소홀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건물)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 소재 어린이집, □□시 소재 아파트, ◎◎시 소재 빌라에 대한 20××.3월~ 20\$\$.2월(5년간)의 임대료 미 징수액이 69,400,000원 발생하였음에도, 채권확보 노력을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미징수액의 채권확보 노력을 소홀히 함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 수입에서 법인운영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유지 경영교의 법정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감사사례 2

학교법인 감사 업무 부적정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과장은 20××.8월 교장 의원면직, 20\$ \$.6월 행정실장퇴직하였음에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법인 감사로 하여금 학교장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사장은 위와 같이 법인의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뀔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감사사례 3

회계의 구분 부적정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차량을 교내에서 관리용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함

-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감사사례 4

공익법인 관리 부적정

○○교육지원청 등은 공익법인이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처분 하지 않음

○○교육지원청 등은 공익법인이 임원 변경 등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지체하여 등기 하였음에도, 공익법인의 부당 운영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등기보고서를 지체하여 보고하였음에도 공익법인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 공익법인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 회계연도 개시 1월(매년 11월말) 전까지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등을 한때에는 설립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에 설립 등기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감사사례 5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

○○중학교에서는 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20××.2.17.일에, 20\$ \$ 학년도 학교회계예산 심의 자료는 20\$ \$.2.15.일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편성하면서 회계연도가 경과한 3월 이후에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음

사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확정된 예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음

- 학교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가정통신문·학부모총회·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해 예산서 공개
 - ※ (사립학교)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 확정,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당해 학교 홈페이지 게재(1년간 공개)
- 추가경정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전(2월 중)에 정리추경을 실시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한다.
 -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 교육 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 (공립학교) 예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편성·확정 여부 추가경정예산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감사사례 6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학교(교비)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음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해당 학년도 학교(교비)회계 및 유치원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안을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아닌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정리 추경을 이유로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

- 간주처리 예산 편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 편성요건은 ①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말이 되기 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심의되어야 하고 ②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하며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고, ④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 위원회(이사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감사사례 7 예산 이·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고등학교에서는 예산을 이용하였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에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에서는 20××학년도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이용하여 처리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쳤으나, 예산 이·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중학교에서는 예산 전용을 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정책사업·단위사업 내에서 전용을 하였고, 20××년의 경우 추경예산 직전(20××.4.3.)에 예산 전용(20××.3.8.)을 함

-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고, 세출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 의결)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책사업 사이에 예산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 예산 이·전용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학교(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시 예산 이·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감사사례 8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로 처리함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과목, 금액,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감사사례 9 학교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20조(성립 전 예산의 집행 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그리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르되, 목은 실제에 따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법인회계 집행 시 추가경정 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다만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 2016~2018 회계연도에 법인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이사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과목인 (관)사무비 (항)수용비 (목)수용비 및 수수료(세목:복리후생비)에서 판공비 성격을 업무 추진비용 경비로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그리고 동 법인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전 품의 및 지급내역에 사용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지 않아 법인 업무 수행 및 행사·투자·사업추진 등을 위한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하였음.
- 또한 법인에서 지원된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 용도가 아닌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여 금275,760원의 주유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총1,073,760원을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함.

감사사례 10 학교버스 매각대금 법인회계 세입조치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 하지 못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학교회계 예산으로 2002. ○○. ~ 2007.○○. 기간 중 통학버스 6대를 348,655,950원에 구입하였고, 이를 2012. ○○.~2016.○○. 기간 중 매각하는 과정에서 버스 매각대금 총 35,4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당초 재원인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음.

감사사례 11 법인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와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회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①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두어야 하고, ②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③ 기관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5~2018학년도까지 이사장 판공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에 대한 품의 없이 이사장이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제출한 영수증 사용 금액대로 이사장 개인 계좌에 지급함.

감사사례 12 법인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법인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4~2017학년도 기간 중 임의의 자가 사전품의 없이 식사비 등을 개인현금으로 지급(결제)한 후, 법인 지출담당자는 해당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협의회비로 지출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요건인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영수증 상 결제일자만 지출증빙서에 기재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건전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총 11,556,600원(총 48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또한 “협의회비 지출”에 대한 대가를 임의의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를 하지 않으면서 현금 수령증을 보관 하지 않는 등 자금 이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감사사례 13 법인회계 세출예산 부당 집행

- 업무기준: 사립학교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세출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한식 및 추석 무렵 매년 1~2회 학교법인 △△△고(故) □□□ 선생의 묘역에 유·초·중·고 소속 교직원의 성묘행사를 실시하면서, “춘계·추계 야유회” 경비 등의 명목으로 식사비(출장 뷔페), 천막 사용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류 구입비 등으로 총 5,981,2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감사사례 14 법인회계 세출예산 부당 집행

- 업무기준: 학교법인에서 임원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3(생계비등의 범위)에 따라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생계비 지급대상을 후손까지 확대해석 하여 설립자의 자부에게 수익사업체 ■■■■■의 고문으로 위촉(1993년도) 하고 설립자 후예를 예우한다는 이유로 2009. 3. 1.부터 2013.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적게는 월 2,50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0원까지, 계 157,500,000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감사사례 15 법인카드 관리 소홀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57조(회계 관계직원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학교회계는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학교의 수입·지출을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교육 재정과)」에 따라 사전에 품의를 하고,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후 해당 기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및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 및 소속 학교에서는 ○○학원 소유카드 4장 중 ○○카드를 ○○유치원, ○○초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에서 사용 후 결제금액을 ○○학원 법인카드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28,055,960원을 사용함.



감사사례 16 학교법인 예산서 작성 및 예산 집행 소홀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4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함.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5학년도 학교법인 ○○학원 예산편성(안) 의결을 2015. 2. 23. (단, 2015. 2. 18.까지 의결하여야 하나 2. 18.~ 2. 22. 규정 연휴기간임)까지 하지 아니하고 1일 지연된 2015. 2. 24. 법인 이사회 의결을 하였고, 또한 2016학년도 학교법인 ○○학원 예산편성(안)을 2016. 2. 19.(2016. 2. 29. 10일 전)까지 의결하지 아니하고 4일이 지연된 2016. 2. 23. 법인 이사회 의결함. 또한 ○○학원에서는 2015학년도~2018학년도 회계의 예산서를 ○○여자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법인'란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015학년도 회계의 예산서 보고를 2일이 지연된 2015. 2. 25. 보고, 2016학년도 회계의 예산서 보고를 5일이 지연된 2016. 2. 29. 보고하였으며, 2018학년도 회계의 예산서 보고를 4일이 지연된 2018. 2. 27. 보고함.

감사사례 17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인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3조(지출의 방법), 「사립학교법인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모성·선심성 경비를 억제하여 지출을 최소화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전출 비율이 30%미만인 법인의 운영비는 전출액의 30% 범위 내 3천만원 한도로 집행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의무부담금액 대비 2015년 0%, 2016년 1.2%, 2017년 0%로 사실상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운영비 집행기준(법정부담금 기준 30%)을 초과하였음. ○○학원은 ○○구청 소유의 토지를 ○○중·고등학교용지로 사용하면서 매년 대부료로 납부하고 있는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회계에서 일부 대부료를 납부 하였음. ○○학원에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하여 세입 및 세출의 귀속을 분명히 하여 해당 환급액 중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금12,179,970원을 ○○중·고등학교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데, 전출하지 않음

감사사례 19 학교법인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회계 결산의 경우에는 결산서(부속 명세서(재무상태표 등)와 감사보고서를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7. 6. 23.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용역을 ○○에 의뢰하고 2016년 법인세무 조정수수료로 금1,100,000원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에서 법인회계에 대하여 외부 용역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았으나, 세무확인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가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94,525천원 상당 토지 금액이 미반영되었고, 예·적금 등 금융자산의 가액이 불일치함. 또한, 법인에서 소유한 주식을 과대하게 평가 반영하고, 존재하지 않은 비품과 전신전화가입권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등 세무확인서 내용과 법인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와 같이 용역 의뢰하여 작성한 세무확인서와 법인의 실제 소유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불일치 자료를 정정토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학교법인 재무·회계를 소홀하게 관리하였음

감사사례 20 법인회계 기부금 접수·관리 부적정

- 업무기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및 [별표1] 법인세입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하며, 「학교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기부금은 ① 기부각서 등을 제출받아 확실한 금액을 예산서에 계상하고, ② 세출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기부금 사용분은 반드시 “기부금 사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3~2014학년도 기부금을 현금 등의 방법으로 총 48,500천원을 기부각서 없이 접수하면서, 2013·2014학년도 학교 법인 ○○학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서에서 “기타잡수입”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용도(목적) 등을 알 수 없도록 부적정 하게 관리하였음.

감사사례21 차입금 상환 부적정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학교법인에서 그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장기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상환방법,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미리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런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청의 허가 없이 금○○원을 개인자금으로 ○○수익사업체 회계에 차입하여 주고, 20◇◇.◇◇~20◇◇.◇.◇. 까지 수익사업체회계에서 총○회에 걸쳐 개인 차입금을 인출하였음.

감사사례22 사립학교법 위반 목적 외 사용

- 업무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서는 그 사용자에게 따라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은 “법인용 재산”으로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은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로 법인용 자산을 구입할 수 없음.
- 그러나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그 유지·경영학교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통상적인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중장비 차량 등을 교비회계의 운영비에서 구매함.

감사사례23 법인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야 하며,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과목의 경정은 예산지출 후 예산과목 착오 지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세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인건비 및 시설비는 예산의 전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목 경정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방법은 부적절함.
- 그러나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임기 만료된 교장을 같은 날 해당법인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면서 법인 세출 예산에 해당 인건비가 편성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세출예산과목 관(전출금 항) 전출금) 목)시설비를 관(사무비 항)인건비) 목)봉급으로 경정하여 법인 회계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21,930,2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감사사례24

법인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 업무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15조의 2(예산과목의 구분), 제20조(성립 전 예산의 집행 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그리고 법인회계 집행시 추가경정 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이사장 및 사무국장이 개인 용도의 물건 구입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승용차를 사용하고, 주유비를 지출함
- 또한 △△학교법인에서는 학교법인 회계에서 이사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법인 사무국장의 개인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으며, 지급근거 없이 전별금, 격려금, 명절선물 등에 지출하고, 지출 품의서에 사용목적, 사용자 등을 표기하지 않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법인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만든 사람들

기획 / 총괄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
신혜선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담당사무관)

집필 / 편집

김고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담당주무관)
이은아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담당주무관)
신다혜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담당주무관)
이수빈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담당주무관)
김종우 (경기도교육청 조직현안대응담당주무관)
노현석 (영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재현 (매향중학교 행정실장)
류영현 (군포고등학교 주무관)
정정민 (수원중학교 주무관)
윤정환 (근명중학교 주무관)
한희정 (영신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이경하 (청덕고등학교 주무관)
한용만 (수원교육지원청 성과지원팀장)
정현숙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장)
박미선 (수원교육지원청 성과지원팀주무관)
박지은 (안성교육지원청 성과예산팀주무관)
오진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팀주무관)

2023년 12월

-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사립학교지원과 -